

세법연구 12-03

# 주세법상 주류행정에 대한 연구

2012. 8

세 법 연 구 센 터

 한국조세연구원

## 연구진

### 연구책임자

이 은 경 부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이 정 미 전문연구원

마 정 화 전문연구원

# 목 차

I. 서론	9
II. 우리나라의 주류행정제도	11
1. 개관	11
2. 주세법상 주류행정제도	13
가. 주류의 규격에 대한 규제	13
나.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에 대한 면허제도	20
III. 주요국의 주류행정제도	29
1. 미국	29
가. 개관	29
나. 주류의 규격에 대한 규제	31
다. 제조시설기준 및 제조·판매 면허제도	38
2. 일본	49
가. 개관	49
나. 주류의 규격에 대한 규제	50
다. 제조시설 기준 및 제조·판매 면허제도	53
3. 영국	61
가. 개관	61
나. 주류의 규격에 대한 규제	64
다. 제조시설기준 및 제조·판매 면허제도	74
4. 호주	84
가. 개관	84

나. 주류의 규격에 대한 규제	89
다. 제조시설기준 및 제조·판매 면허제도	98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106
1. 국제비교	106
2. 시사점	112
가. 주세 관련 법령상 주류행정 범위와 담당기관	112
나. 주류 규격에 대한 규제	113
다. 주류 면허 제도	113
참고문헌	116

## 표 목 차

〈표 II-1〉 주류 검정·검사 업무의 구분 .....	12
〈표 II-2〉 주세법상 주류의 종류별 세부내용 .....	14
〈표 II-3〉 주류별 첨가재료 .....	18
〈표 II-4〉 주세법 시행령상 주류원료의 사용량 및 알콜분 함유량 .....	19
〈표 II-5〉 주류제조장에 대한 일반적 시설기준 .....	22
〈표 II-6〉 주류제조장에 대한 특수목적 시설기준 .....	24
〈표 II-7〉 밀술의 제조장 시설기준 .....	25
〈표 II-8〉 주류판매업 면허요건 .....	26
〈표 III-1〉 미국의 주류 관련 법체계 및 주류행정 분담 .....	30
〈표 III-2〉 TTB 담당 주류행정 .....	30
〈표 III-3〉 미국의 연방법상 증류주 제조방법 .....	33
〈표 III-4〉 미국의 연방법상 생포도주 제조방법 .....	34
〈표 III-5〉 증류주 공장 내 탱크에 대한 일반적 요건 .....	39
〈표 III-6〉 와인 부지 내 탱크에 대한 요건 .....	40
〈표 III-7〉 미국의 증류주 제조장 등록을 위한 필수정보 .....	42
〈표 III-8〉 미국의 증류주 제조장 operating permit 신청을 위한 필수정보 .....	44
〈표 III-9〉 미국의 와인 부지 설정 및 운영 신청 시 필수정보 .....	45
〈표 III-10〉 미국의 맥주 제조장 통지서 제출 시 필수정보 .....	46
〈표 III-11〉 일본의 주류 관련 법체계 및 주류행정 분담 .....	50
〈표 III-12〉 일본 주세법상 주류의 품목구분 .....	51
〈표 III-13〉 일본 주세법상 주류의 원료 .....	52
〈표 III-14〉 일본의 주류판매업등 면허의 구분 .....	54

〈표 Ⅲ-15〉 일본 주류 제조면허 및 판매면허에 대한 경영기초요건 판단요소(2).....	57
〈표 Ⅲ-16〉 영국의 주류 관련 법체계 및 주류행정 분담.....	63
〈표 Ⅲ-17〉 영국주류의 종류와 관련 법령 .....	63
〈표 Ⅲ-18〉 영국의 안전관리 및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MOU 체결 현황.....	64
〈표 Ⅲ-19〉 맥주의 분류 형태 .....	68
〈표 Ⅲ-20〉 과실주의 제조과정 기록 필요조건.....	69
〈표 Ⅲ-21〉 과실주에 허용되는 원료 및 최대농도 .....	70
〈표 Ⅲ-22〉 첨가물에 따른 맥주의 종류.....	73
〈표 Ⅲ-23〉 설비의 보안관련 규제 .....	74
〈표 Ⅲ-24〉 와인의 면허필요 여부와 내용 .....	80
〈표 Ⅲ-25〉 맥주의 등록 여부와 관련 내용 .....	82
〈표 Ⅲ-26〉 호주의 주류 관련 법체계 및 주류행정 분담.....	84
〈표 Ⅲ-27〉 주류 제조에 따른 관리기관 .....	85
〈표 Ⅲ-28〉 호주의 주류제품에 대한 과세 .....	86
〈표 Ⅲ-29〉 주류산업 과정에서 과세관청의 지시에 불응 시 벌칙내용 .....	88
〈표 Ⅲ-30〉 변성 증류주를 결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 .....	92
〈표 Ⅲ-31〉 와인의 정의 및 종류 .....	93
〈표 Ⅲ-32〉 맥주의 알코올도수 측정관련 측정방법 및 과세내용.....	96
〈표 Ⅲ-33〉 브랜디, 위스키, 럼에 부가되는 특별한 요구조건 .....	97
〈표 Ⅲ-34〉 제조시설의 정의와 요구조건 및 생성물질.....	100
〈표 Ⅲ-35〉 면허의 종류별 허용활동 및 요구사항 .....	102
〈표 Ⅲ-36〉 주류의 활동과 면허의 종류.....	104
〈표 Ⅲ-37〉 와인의 종류별 과세구분 .....	105
〈표 Ⅳ-1〉 주요국의 주류 관련 법체계 및 주류행정 분담.....	107
〈표 Ⅳ-2〉 주요국의 주류별 정의 및 분류.....	109
〈표 Ⅳ-3〉 주요국의 주류 제조·판매면허 .....	111

## 그림 목차

[그림 Ⅲ-1] 영국의 주류관련 행정체계 .....	61
------------------------------	----



# I. 서론

- 주류행정은 주류의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집행되고 있음
  - 대표적으로 주세 징수, 주류 면허제도, 제조관리, 주류 표시제도를 예로 들 수 있음
  - 또한 주류의 안전관리, 주류의 공정거래, 유통 규제, 수출지원 및 수입관리, 광고 규제, 음주운전 규제, 환경법령 준수 등도 주류행정영역에 포함됨
  
- 우리나라의 경우 1909년 이래 주류행정을 독점적으로 담당해 왔던 국세청이 2010년 주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류 안전관리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주류산업 진흥업무는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하였음
  - 국세청은 세원관리, 제조 및 판매 면허관리에 주력하기로 함
    - 주류 제조방법, 알코올도수·원료의 사용량, 여과방법, 표시사항 등 주세법에 서 정한 세원과 면허관리, 그에 따른 분석업무만을 담당함
  - 2010년 6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물질 혼입, 첨가물로 위반, 부적합 양조용수 등 식품위생법이나 위생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주류의 위생 및 주류 함유물질의 유해성 여부 등 주류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
    - 주류 수출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주류 안전성 검증에 대한 수요도 증가
    - 고령화 등으로 인해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증가
  - 2010년 2월부터 농림수산식품부는 전통주 육성 등 주류산업 진흥을 담당
    - 전통주와 같은 경쟁력 있는 문화·수출상품에 대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고, 정부 양곡정책과 연계해 주류산업의 진흥을 체계적으로 꾀하고자 함
    - 지역농업의 인프라를 활용해 원료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음

- 한편, 주류행정의 이관과 함께 변화하는 경제상황과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주세법상 남아 있는 주류행정제도가 합리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주세법상 주류행정제도는 크게 주류 규격에 대한 관리, 주류면허제도, 주세징수로 구분할 수 있음
  - 이 중 주류 규격이나 주류면허의 규제 방식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주류 면허제도가 일부 개정된 바 있음
  - 따라서 주류행정의 이관 이후 세원 확보 및 국민보건 차원에서 주류 규격과 주류면허에 대한 규제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논의해 봄으로써 주세법상 주류행정을 합리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함
  
- 따라서 본 보고서는 외국 제도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주세법상 주류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외국의 주세 관련 법령상 주류 규격과 주류면허에 대한 규정을 조사하여 비교분석하였음

## Ⅱ. 우리나라의 주류행정제도

### 1. 개관

- 국세청은 「주세법」에 근거하여 주류행정의 대부분을 전담하고 있음
  - 역사적으로 주류행정 전반은 세원관리 측면에서 시작되어 국세청이 주류행정을 독점적으로 담당해 왔으나, 최근에 일부 업무가 다른 부처로 분리됨
    - － 즉, 2010년에 주류 안전관리의 전문화 및 주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류 안전관리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주류산업 진흥업무는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되었음
  
- 현재 국세청은 주류행정업무로서 면허관리, 제조관리, 판매관리, 세원관리, 납세증명표지 관리, 주류 검정·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함
  
- 식품의약품안전청도 2011년 3월에 다음과 같은 주류안전관리 3개년(2011~2013) 계획을 확정하고, 소비자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첫째, 소비자가 안심하고 주류섭취를 할 수 있도록 정확한 국민 주류 소비·섭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류의 칼로리 등 영양정보 제공 및 가짜 술에 대한 판별법 등을 개발함
  - 둘째, 주류제조원료(곡류, 과일, 발효제 등), 식품첨가물, 양조용수의 사용실태조사 및 유해물질(곰팡이독소, 식중독균 등)의 모니터링 등 원료·제조공정 관리도 강화함
  - 셋째, 노후시설이나 위생관리 수준이 미흡한 영세·소규모 제조업체에 대한 교육·훈련과 기술지원 등 제조위생관리를 강화함

- 이와 같이 주류 안전관리업무의 이관에 따라 국세청의 주류 검정·검사 업무 중 세원·면허관리와 관련된 사항만이 국세청 소관사항으로 남게 됨

〈표 II-1〉 주류 검정·검사 업무의 구분

	국세청 담당	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
제조장 점검	제조장 및 도매장 순환점검 - 제조방법 및 규격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순환	제조장 위생점검 - 부패·변질 등 부적절한 원료사용 등에 대한 주질분석 - 양조용수 수질검사 - 첨가물료 기준 및 성분에 관한 규격 적정여부 검토 - 시설물에 대한 위생관리, 종사원 개인위생 등
최초 출고전 주류분석	- 주종분류를 위한 원료사용량·첨가물료·제조방법 등 검토 - 승인한 제조방법에 따라 제조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 -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부과·징수를 위한 주종분류 분석 등	
출고후 주류분석	- 신고한 제조방법에 따라 제조 여부 확인을 위한 주질분석 - 주세법령상 주류 규격·기준 적정여부 검사 - 무면허주류제조(가짜양주) 주류 분석·감정 - 영세주류제조자 양조기술 지도를 위한 분석 등	- 유통주류 유해물질 분석 및 유해주류 수거·폐기 - 수입주류 주질분석 등 안전관리 - 첨가물 기준관리 및 불법첨가물료 사용 적발 - 주류이물보고 및 이물조사·관리 - 주류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기준 설정 및 관리 - 주류안전관리기준 설정을 위한 검사·분석·평가 - 수출주류에 대한 위생증명 발급 등

자료: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주류 안전관리 업무 이관」 관련 Q&A, 2010.6.29

-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 2월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전통주 산업진흥정책을 추진함<sup>1)</sup>
  - 첫째, 산업진흥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으로서 제조업체의 경영개선을 지원하고 제

1) 농림수산식품부,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 기본계획」, 2011.9.21 보도자료

조기술을 보급하고, 양조용 벼 또는 과일 품종을 개발하며, 국가 양조자격증제도를 도입하는 등을 제시하고 있음

- 둘째, 전통주 경쟁력 제고 및 세계화를 위한 정책으로서 품평회 활성화 및 선진국형 품질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전통주 복원 프로젝트 등 전통주의 세계화 및 과학화를 지원하며,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함
- 셋째, 농업·한식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으로서 원료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원산지·지리적 표시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한식 세계화와 연계한 홍보·교육을 확산하는 방안을 제시함

## 2. 주세법상 주류행정제도

### 가. 주류의 규격에 대한 규제

#### 1) 주류의 정의 및 분류

- 주세법상 주류는 주정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함
  - ‘주정’이란 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함
  - ‘알코올분’은 전체 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코올(섭씨 15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함
- 주세법상 주류는 제조방법에 따라 주정, 발효주류, 증류주류, 기타 주류의 4가지 종류로 구분됨
  - 발효주류는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로 구분됨
  - 증류주류는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 증류주, 리큐르로 구분됨

2) 주류 제조방법 및 주류의 규격

- 주류의 규격은 주류를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주류의 종류별로 규정하고 있음
  - 주세법은 주류의 규격으로서 원료 사용량, 첨가재료의 종류 및 비율, 알코올분 및 불휘발분의 함량, 나무통에 저장하는 기간, 여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 주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사용량과 첨가재료의 종류 및 비율은 주세법 별표(주류의 종류별 세부내용), 주세법 시행령 제2조(첨가재료의 종류)와 별표1(주류별 첨가재료), 제3조(주류원료의 사용량·여과방법등)에 규정되어 있음

〈표 II-2〉 주세법상 주류의 종류별 세부내용

주류의 종류		세부 내용
주정		녹말 또는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발효시켜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발효주류	탁주	1)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와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2) 1)에 따른 주류의 원료에 당분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원료에 과일·채소류를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약주	1)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와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2) 1)에 따른 주류의 원료에 당분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원료에 과일·채소류를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5)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 과정에 주정 또는 증류식 소주를 혼합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25도 미만인 것

〈표 II-2〉의 계속

주류의 종류		세부 내용
	청주	1) 곡류 중 쌀(잡쌀을 포함),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또는 그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2) 1)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주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하여 여과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알콜분 25도 미만인 것
	맥주	1) 엿기름(밀엿기름을 포함한다. 이하 같음), 홉(홉 성분을 추출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음)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2) 엿기름과 홉, 밀·쌀·보리·옥수수·수수·감자·녹말·당분·캐러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중 하나 이상의 것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주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하여 인공적으로 탄산가스가 포함되게 제성한 것으로서 알콜분 25도 미만인 것
	과실주	1) 과실(과실즙과 건조시킨 과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음) 또는 과실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하거나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2) 과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당분과 물을 혼합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하거나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과실 또는 당분을 첨가하여 발효시켜 인공적으로 탄산가스가 포함되게 하여 제성한 것 4)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과실즙을 첨가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5)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주정, 브랜디 또는 일반증류주를 혼합하거나 첨가한 것으로서 알콜분 25도 미만인 것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증류주류	소주 증류식 소주	1) 녹말이 포함된 재료, 국(麴)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연속식 증류 외의 방법으로 증류한 것. 다만, 발아시킨 곡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것, 곡류에 물을 뿌려 섞어 밀봉·발효시켜 증류한 것 또는 자작나무숯(다른 재료를 혼합한 숯을 포함한다. 이하 같음)으로 여과한 것은 제외함 2) 1)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정 또는 알콜분 85도 이상 90도 이하인 곡물주정(이하 '곡물주정'이라 함)을 혼합한 것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표 II-2〉의 계속

주류의 종류		세부 내용
소주	희석식 소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정 또는 곡물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li> <li>2) 주정과 곡물주정을 혼합한 것을 물로 희석한 것</li> <li>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li> <li>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류식 소주 중 1) 또는 4)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li> <li>5)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li> </ol>
	위스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발아된 곡류와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해서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li> <li>2) 발아된 곡류와 물로 곡류를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li> <li>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술덧을 증류한 후 이를 혼합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li> <li>4) 1)과 2)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li> <li>5)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에 주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한 것</li> </ol>
	브랜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과실주(과실주지게미를 포함)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li> <li>2) 1)에 따른 주류에 주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한 것</li> </ol>
	일반증류주	<p>다음 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것으로서 주정, 소주, 위스키, 브랜디 외의 것. 다만, 6)부터 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첨가 재료에 과실·채소류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과실·채소류를 발효시키지 아니하고 사용하여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수 또는 옥수수, 그 밖에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국(麴)을 원료(고량주지게미를 첨가하는 경우를 포함)로 하여 물을 뿌려 섞은 것을 밀봉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li> <li>2) 사탕수수, 사탕무, 설탕(원당을 포함) 또는 당밀 중 하나 이상의 재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물과 함께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한 것</li> <li>3) 술덧이나 그 밖에 알콜분이 포함된 재료를 증류한 주류에 노간주나 무열매 및 식물을 첨가하여 증류한 것</li> <li>4) 주정이나 그 밖에 알콜분이 포함된 재료를 증류한 주류를 자작나무 숯으로 여과하여 무색·투명하게 제성한 것</li> <li>5) 녹말 또는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li> <li>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li> <li>7)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또는 이들 혼합한 주류의 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li> <li>8) 주정, 소주, 위스키, 브랜디의 발효·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li> <li>9) 주정, 소주, 위스키, 브랜디를 혼합한 것 또는 이들 혼합한 주류의 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li> </ol>

〈표 II-2〉의 계속

주류의 종류		세부 내용
		10) 1)부터 5)까지, 주정, 소주, 위스키, 브랜디를 혼합한 것 또는 이들 혼합한 주류의 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11)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리큐르	일반 증류주로서 불휘발분이 2도 이상인 것
	기타주류	1) 용해하여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상태인 것 2) 발효에 의하여 제성한 주류로서 발효주류 외의 것 3) 쌀 및 입국(粒麴)에 주정을 첨가해서 여과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하여 여과한 것 4) 발효에 의하여 만든 주류와 주정 또는 증류주류를 섞은 것으로서 발효주류 외의 것 5) 주정, 발효주류, 증류주류, 기타주류 중 1)부터 4)까지의 주류를 제외한 그 밖의 주류

자료: 「주세법」 [별표]

□ 「주세법 시행령」 제2조는 주종을 구분하여 〈표 II-3〉과 같이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를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첨가재료 중 당분, 산분, 조미료, 향료, 색소의 종류에 대해 세부규정을 두고 있음

－ 당분의 종류에는 설탕(백설탕·갈색설탕·흑설탕 및 시럽 포함)·포도당(액상포도당·정제포도당·함수결정포도당 및 무수결정포도당 포함)·과당(액상과당 및 결정과당 포함)·엿류(물엿·맥아엿 및 덩어리엿 포함)·당시럽류(당밀시럽 및 단풍당시럽 포함)·올리고당류 또는 꿀이 포함됨

－ 산분의 종류로 젖산·호박산·식초산·푸말산·글루콘산·주석산·구연산·사과산 또는 탄닌산이 규정됨

－ 조미료의 종류에는 아미노산류·글리세린·텍스트린·흡·무기염류가 포함됨

－ 향료의 종류로 퓨젤유·에스테르류·알데히드류가 규정됨

－ 색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것을 말함

○ 그 밖에 탄산가스와 「식품위생법」상 허용되는 방부제도 첨가할 수 있음

〈표 II-3〉 주류별 첨가재료

	주종	첨가재료
1. 발효주류 -탁주	법 별표 제2호가목 <sup>1)</sup> 에 해당하는 주류	아스파탐·스테비올배당체·젓산·주석산·구연산·아미노산류·수크랄로스·토마틴·아세실팜칼륨·에리스리톨·자일리톨·산탄검·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당분, 「식품위생법」상 허용되는 식물 <sup>2)</sup> (물 또는 주정 등으로 추출한 액을 포함)
2. 발효주류 -약주	법 별표 제2호나목 <sup>3)</sup> 에 해당하는 주류	아스파탐·스테비올배당체·젓산·주석산·구연산·아미노산류·식물·수크랄로스·토마틴·아세실팜칼륨·에리스리톨·자일리톨·당분
3. 발효주류 -청주	법 별표 제2호다목 <sup>4)</sup> 에 해당하는 주류	아스파탐·스테비올배당체·젓산·주석산·구연산·아미노산류·식물·수크랄로스·토마틴·아세실팜칼륨·에리스리톨·자일리톨
4. 발효주류 -청주	법 별표 제2호다목 <sup>5)</sup> 에 해당하는 주류	당분·산분·조미료·향료·색소
5. 발효주류 -맥주	법 별표 제2호라목 <sup>3)</sup> 에 해당하는 주류	당분·산분·조미료·향료·색소·식물 등
6. 발효주류 -과실주	법 별표 제2호마목 <sup>4)</sup> ·마목 <sup>5)</sup> 에 해당하는 주류	당분·산분·조미료·향료·색소 등
7. 발효주류 -과실주	법 별표 제2호마목 <sup>6)</sup> 에 해당하는 주류	식물 등
8. 증류주류 -소주	법 별표 제3호가목 <sup>1)</sup> 나) 및 같은 목 <sup>2)</sup> 다)에 해당하는 주류	당분·구연산·아미노산류·솔비톨·무기염류·스테비올배당체·아스파탐·수크랄로스·토마틴·아세실팜칼륨·에리스리톨·자일리톨·다(茶)류(단일침출자 중에서 가공곡류차를 제외한 것을 말함)
9. 증류주류 -위스키	법 별표 제3호나목 <sup>5)</sup> 에 해당하는 주류	당분·산분·조미료·향료·색소
10. 증류주류 -브랜디	법 별표 제3호다목 <sup>2)</sup> 에 해당하는 주류	당분·산분·조미료·향료·색소
11. 일반 증류주	법 별표 제3호라목 <sup>6)</sup> 부터 같은 목 10)까지에 해당하는 주류	당분·산분·조미료·향료·색소·식물 등
12. 리큐르	법 별표 제3호마목에 해당하는 주류	당분·산분·조미료·향료·색소·식물 등
13. 기타주류	법 별표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주류	당분·산분·조미료·캐러멜

주: 1) 당분 및 과실·채소류의 사용량은 「주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함.

2) 식물을 주정 등으로 추출하는 경우 그 추출액의 알콜분 총량은 최종제품의 알콜분 총량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이하 이 표에서 같음.

3) 당분 및 과실·채소류는 「주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함.

4) 식물 중 알콜분 1도 이상으로 발효시킬 수 있는 것은 제외함.

5) 주정이 첨가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음.

자료: 「주세법 시행령」 별표 1

- 또한 주종별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는 다음과 같음<sup>2)</sup>
  - 과실주, 일반증류주 : 아스파탐, 스테비오사이드, 솔비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 맥주, 리큐르 : 과실주·일반증류주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와 우유, 분유, 유크림, 카제인나트륨, 아라비아검(맥주에 한함), 펙틴
  
- 주류원료의 사용량과 알코올분 함유량은 다음 <표 II-4>와 같음
  - 불휘발분 함량<sup>3)</sup>은 증류주류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는데,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는 2도 미만이어야 하는 반면, 리큐르는 2도 이상이어야 함

<표 II-4> 주세법 시행령상 주류원료의 사용량 및 알코올분 함유량

주류의 종류		원료 사용량 및 알코올분 함유량
주정		주정의 알코올분은 95도 이상이어야 하며, 곡물주정은 곡물을 원료로 하여 알코올분 85도 이상 90도 이하이어야 함
발효주류	탁주	녹말재료의 중량은 녹말재료와 당분 및 과실·채소류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50% 이상 사용해야 하며, 과실·채소류의 중량은 녹말재료와 당분 및 과실·채소류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20%를 초과할 수 없음
	약주	1) 녹말재료의 중량은 녹말재료와 당분 및 과실·채소류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50% 이상 사용해야 하며, 과실·채소류의 중량은 녹말재료와 당분 및 과실·채소류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20%를 초과할 수 없음 2) 약주의 원료인 곡류에 쌀(참쌀을 포함) 외의 다른 곡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녹말재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누룩을 1% 이상 사용해야 함. 3) 발효 및 제성과정(製成過程)에 주정 또는 증류식소주를 혼합하는 경우 혼합하는 주류의 알코올분 양은 혼합된 후 해당 주류의 알코올분 총량의 20% 이하이어야 함
	청주	1) 쌀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누룩을 1% 미만 사용해야 함 2) 청주의 발효·제성과정에 주정을 혼합하는 경우에 주정의 양은 알코올분 30도로 희석한 주정을 기준으로 하여 술덧에 사용한 원료용 쌀 1킬로그램당 2.4리터 이하로 함
	맥주	1) 법 별표 제2호라목2)에 따른 맥주의 제조에 있어서 그 원료곡류 중 엿기름 사용중량은 쌀·보리·옥수수·수수·감자·전분·당분 또는 캐러멜의 중량과 엿기름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 이상이어야 함 2) 맥주의 발효·제성과정에 과실(과실즙과 건조시킨 과실을 포함)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과실의 중량은 엿기름과 전분질원료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20%를 초과할 수 없음

2) 국세청고시 제2012-24호,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지정 고시  
 3) 불휘발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cm<sup>3</sup> 중에 포함되어 있는 불휘발분의 그램수로 측정함

〈표 II-4〉의 계속

주류의 종류		원료 사용량 및 알콜분 함유량
	과실주	1) 첨가하는 당분의 중량이 주원료의 당분과 첨가하는 당분의 합계중량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2) 과실주의 발효·제성과정에 주정·브랜디 또는 일반증류주를 혼합하는 경우 혼합하는 주류의 알콜분의 양은 혼합된 후 당해주류의 알콜분 총량의 80% 이하이어야 함
증류주류	소주	증류식소주 법 별표 제3호가목1)다)에 따라 증류식소주에 주정 또는 곡물주정을 혼합하는 경우 혼합하는 주정 또는 곡물주정의 알콜분의 양은 혼합된 후 당해주류의 알콜분 총량의 50% 미만이어야 함
		희석식소주 법 별표 제3호가목2)라)에 따라 희석식소주에 법 별표 제3호가목1)가)에 따른 증류식소주를 혼합하는 경우 증류식소주의 알콜분의 양은 혼합된 후의 당해주류의 알콜분 총량의 50% 미만이어야 함
	위스키	위스키 또는 브랜디에 주정을 혼합하는 경우 혼합하는 주류의 알콜분의 양은 혼합된 후 당해주류의 알콜분 총량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브랜디	위스키 또는 브랜디에 주정을 혼합하는 경우 혼합하는 주류의 알콜분의 양은 혼합된 후 당해주류의 알콜분 총량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일반증류주	일반증류주에 위스키 또는 브랜디를 혼합하는 경우 혼합하는 주류의 알콜분의 양은 혼합된 후 당해주류의 알콜분 총량의 20% 미만이어야 함

자료: 「주세법 시행령」 제3조

- 일부 위스키와 브랜디에 대해서는 나무통에 저장하는 기간을 1년 이상으로 규정함
- 약주 제조 시 여과방법으로서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첨가물 공전상 미탁 이하로 맑게 여과해야 함
  - 단, 전통문화계승을 위해 예외적으로 미탁 이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음

## 나.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에 대한 면허제도

- 주류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제조장 또는 판매장마다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인적 기준<sup>4)</sup> 등을 충족하여 면허를 받아야 함

4) 「주세법」 제10조상 제조면허 또는 판매업면허가 제한되는 인적 기준

1. 면허 신청인이 면허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면허 신청인 또는 주세법 제8조의2에 따른 전환법인의 신고인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3. 면허 신청법인 또는 전환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 예외적으로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거나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자는 주류 판매신고만으로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됨(의제판매면허)

### 1) 제조시설기준

-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류 종류별로 제조장마다 주류제조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주류제조장에 대한 일반적인 시설기준은 <표 II-5>와 같이 크게 발효 및 증류시설, 담금·저장·제성용기, 시험시설로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음
    - 다만, 소규모 맥주제조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
    - ‘소규모 맥주제조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받을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그 영업허가를 받거나 받을 장소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장소에서 맥주를 제조하여 그 영업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함
  - 그러나 농어촌지원 또는 전통문화계승을 위해 일반적인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표 II-6>과 같이 특수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음
  - 한편, 시험용 또는 학술연구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시설 기

- 
4.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지배인으로 하려는 경우
  5.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두지 아니한 경우 그 대리인 또는 지배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신청 또는 신고 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7. 면허 신청인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포탈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8. 면허 신청인이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처벌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9. 면허 신청인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10. 면허 신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11. 국세청장이 세수보전, 주류의 유통·판매 관리 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없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12. 면허 신청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13. 국세청장이 주류의 수급 균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에 면허 신청인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준을 갖출 필요가 없음

〈표 Ⅱ-5〉 주류제조장에 대한 일반적 시설기준

주류 종류	일반적 기준 <sup>1)</sup>		
	시설구분	시설기준	
주정	1) 발효 및 증류시설 가) 발효조 총용량 나) 술덧탑 다) 정제탑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항온항습기 다) 간이증류기	550kl 이상 1기 이상 1기 이상  1,000배 이상 1대 0~65℃ 1대 1대	
탁주 및 약주	1) 담금·저장·제성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나) 제성조 총용량 2) 시험시설 가) 간이증류기 나) 주정계	3kl 이상 2kl 이상  1대 0.2도 눈금 0~30도 1조	
청주	1) 담금·저장·제성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나) 저장 및 검정조 총용량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항온항습기 다) 간이증류기 라) 무균상자	6kl 이상 7.2kl 이상  500배 이상 1대 0~65℃ 1대 1대 1대	
맥주	일반	1) 담금·저장·제성용기 가) 용기 총용량 (1) 전발효조 (2) 후발효조(저장조)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항온항습기 다) 가스압측정기 라) 간이증류기	50kl 이상 100kl 이상  500배 이상 1대 0~65℃ 1대 1대 1대
	소규모 맥주 제조자 <sup>2)</sup>	1) 담금·제성·저장용기 가) 당화·여과·자비조 등 나) 담금 및 저장조 2) 시험시설 가) 간이증류기 나) 주정계	0.5kl 이상 5kl 이상  1대 0.2도 눈금 0~30도 1조

〈표 II-5〉의 계속

주류 종류	일반적 기준 <sup>1)</sup>	
	시설구분	시설기준
과실주	1) 담금·저장·제성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나) 저장 및 검정조 총용량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항온항습기 다) 간이증류기	21kl 이상 22.5kl 이상  500배 이상 1대 0~65℃ 1대 1대
희석식 소주	1) 담금·저장·제성용기 가) 희석조 및 검정조 총용량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항온항습기 다) 간이증류기	25kl 이상  500배 이상 1대 0~65℃ 1대 1대
위스키 및 브랜디	1) 담금·저장·제성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나) 원액숙성용 나무통 총용량 다) 저장 및 제성조 총용량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항온항습기 다) 간이증류기	7kl 이상 85kl 이상 50kl 이상  500배 이상 1대 0~65℃ 1대 1대
증류식 소주	1) 담금·저장·제성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나) 저장 및 검정조 총용량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항온항습기 다) 간이증류기	6kl 이상 25kl 이상  500배 이상 1대 0~65℃ 1대 1대
일반증류주, 리큐르 및 기타 주류	1) 담금·저장·제성용기 가) 담금(발효)조 총용량 나) 저장, 침출, 제성조 총용량 2) 시험시설 가) 현미경 나) 항온항습기 다) 간이증류기	6kl 이상 25kl 이상  500배 이상 1대 0~65℃ 1대 1대

주: 1) 공업용 합성주정만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1)의 가)·나) 및 2)의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주정을 제외한 주류의 담금·저장·제성용기는 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설치함  
2) 제조장과 영업장이 연결(連接)한 경우에는 제조장과 영업장을 배관시설로 연결하여야 하며, 주류의 담금·저장·제성용기 중 합성수지 용기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시험분석에서 사용적격 판정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함

자료: 「주세법 시행령」 [별표3]

〈표 II-6〉 주류제조장에 대한 특수목적 시설기준

주류 종류	농어촌지원 <sup>1)</sup>		전통문화계승 <sup>2)</sup>	
	시설구분	시설기준	시설구분	시설기준
주정	규정없음	규정없음	1) 건물	
탁주·약주 및 청주	1) 건물 가) 담금실 2) 시험시설 가) 간이증류기 나) 주정계	10㎡ 이상  1대 0.2도 눈금 0~30도 1조	가) 담금실 (밀술실·제성실·저장실 포함) 2) 시험시설 가) 온도계 나) 주정계 다) 간이증류기	10㎡ 이상   0.2℃ 눈금 1개 0.2도 눈금 0~100도 1조 1대
맥주	규정없음	규정없음		
과실주	1) 건물 가) 원료처리실 나) 담금실(밀술실·제성실·저장실 포함) 2) 시험시설 가) 온도계 나) 주정계 다) 간이증류기	6㎡ 이상 20㎡ 이상  0.2℃ 눈금 1개 0.2도 눈금 0~100도 1조 1대		
희석식 소주	규정없음	규정없음		
위스키 및 브랜디	규정없음	규정없음		
증류식 소주·일반 증류주, 리큐르 및 기타 주류	1) 건물 가) 담금실(원료처리실·침출실·발효실·저장실·제성실 포함) 2) 시험시설 가) 온도계 나) 주정계 다) 간이증류기	25㎡ 이상  0.2℃ 눈금 1개 0.2도 눈금 0~100도 1조 1대		

주: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자가 스스로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임

2)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을 위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이 추천한 주류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전통식품명인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한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임

자료: 「주세법 시행령」 [별표3]

□ 밀술을 제조하려는 자도 제조장별로 〈표 II-7〉과 같은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함

○ ‘밀술’이란 효모를 배양·증식한 것으로서 당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을 알코올

발효시킬 수 있는 재료를 말함

〈표 II-7〉 밀술의 제조장 시설기준

시설구분		시설기준
제조장시설	1) 창고	25m <sup>2</sup> 이상
	2) 원료처리실	20m <sup>2</sup> 이상
	3) 제국실	“
	4) 당화실	“
	5) 배양실	30m <sup>2</sup> 이상
	6) 포장실	20m <sup>2</sup> 이상
	7) 저온저장실	10m <sup>2</sup> 이상
	8) 시험실	30m <sup>2</sup> 이상
	9) 무균실	9m <sup>2</sup> 이상
	10) 사무실	20m <sup>2</sup> 이상
제조장에 갖추어야 할 기계·기구	1) 증자기	200ℓ용 1대
	2) 당화조	300ℓ용 1대
	3) 가압여과기	1개
	4) 배양탱크	300ℓ용 3대
	5) 컴프레셔(공기압축기)	1개

자료: 「주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 2) 주류 판매업에 대한 추가적 면허요건

-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판매업 종류별로 자본금, 창고면적, 시설기준, 면허신청인의 자격요건 등을 필요로 함
- 주류 판매업은 종합주류도매업, 특정주류도매업, 주정도매업, 주류수출입업, 주류중개업, 주류소매업으로 구분됨

〈표 II-8〉 주류판매업 면허요건

판매업 종류	면허요건	
종합주류 도매업	1) 자본금 2) 창고면적 3) 전업요건 4) 면허신청인 자격요건	5천만원 이상 66㎡ 이상 종합주류도매업만 전업할 것 1) 미성년자가 아닐 것(단, 그 법정대리인이 법 제10조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예외) 2) 면허신청일 현재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이 아닐 것 3) 「조세범 처벌법」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었을 것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 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 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5) 「국세징수법」에 따라 결손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었을 것
특정주류 도매업	1) 창고면적 2) 판매시설 3) 면허신청인 자격요건	33㎡ 이상 저장용기 및 방충설비(병입주류만 판매하는 경우 제외)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신청인 자격요건 중 1), 3)~5)
주정 도매업	1) 전업요건 2) 시설기준 가)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나) 화학천칭 다) 현미경 라) 항온항습기 마) 건조기 바) P.H메타 사) 고압살균기 아) 증류수채취기 자) 무균상자 차) 간이증류기 카) 주정계 타) 비중계 파) 저장조 하) 탱크로리 3) 면허신청인 자격요건	주정도매업만을 전업할 것 1대 감도 0.1mg 1대 1,000배 이상 1대 0~65℃ 1대 110℃ 1대 감도 0.1 1대 20파운드 이상 1대 시간당 2ℓ 이상 1대 1대 1회 2점 이상 증류 1대 0.2도 눈금 0~100도 1조 0.7~1.85 SG 1대 주정의 종류별로 500D/M 이상 용량의 저장조 1개 이상 용량합계가 500D/M 이상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신청인 자격요건 중 4) ~ 5)

〈표 II-8〉의 계속

판매업 종류	면허요건		
	수출업자·수입업자 공통요건		「대외무역법 시행령」상 무역업고유번호 받은 자
주류 수출입업	수입 업자 추가 요건	1) 자본금 2) 창고면적 3) 면허신청인 자격요건 4) 기타	5천만원 이상 66㎡ 이상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신청인 자격요건 중 4)~5) 주정 수입 시 주정도매업에 대한 시설기준 갖출 것
주류 중개업	「대외무역법 시행령」상 무역업고유번호 받은 자 국내에서 주류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면허신청일 직 전 6개월간 소속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 고 매월 상품공급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2)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 른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및 신용협동조합		
주류 소매업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 예외) 의제판매면허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하는 자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외의 판매장에서 주류소매업 면 허를 받으려는 자		

자료: 「주세법 시행령」 [별표5]

- 또한 다음과 같은 주류 판매면허가 제한되는 장소<sup>5)</sup>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무면허 주류도매 행위로 「조세범처벌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자의 무  
자료주류 판매 사업장으로 처벌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장소
  - 주류운반용 차량의 출입이 곤란한 장소
  - 소음, 주차에 따른 교통장애 등으로 주변의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주거장소
  - 주한 미군부대 주둔 지역으로 면세주류 불법판매 우려장소
  - 외항선원 출입지역으로 주류 변칙거래 우려장소
  - 주류제조장 또는 판매장과 같은 장소
    - 다만, 같은 시·군내에 소재하는 2이상의 주류 도매업자(중개 및 수입업자 포  
함)가 공동 보관·배송을 위하여 같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고자 할 경우,

5) 「주세법」 제10조 제11호, 「국세청고시」 제2011-27호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에 관한 지정 고시

5년 이상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3년 이내에 무자료주류 거래 및 국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기타 면허사업 행위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곤란한 장소

□ 주류의 수급 균형을 위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는 인구 수, 주류소비량, 판매장 수 등을 감안해 시·군별로 면허 허용범위가 정해짐<sup>6)</sup>

---

6) 「주세법」 제10조 제13호

### Ⅲ. 주요국의 주류행정제도

#### 1. 미국

##### 가. 개관

- 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ureau(이하 'TTB')는 연방내국세법(IRC) 및 연방주류행정법(The Federal Alcohol Administration Act)에 따라 주류면허 및 주류표시 등 대부분의 주류 행정을 전담하고 있음
  - 또한 TTB는 주류에 사용된 모든 성분과 처리된 물질이 관련 법령에서 허용된 것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부합됨을 확인하는 역할도 함<sup>7)</sup>
    - 예를 들어, 튜존(thujone), 메탄올(methanol), 독성 중금속(toxic heavy metals)이 함유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함
    - 와인의 경우 농약, 오크라톡신 A(ochratoxin-A)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분석하며, 맥아음료(malt beverage)는 곰팡이독(mycotoxins)에 대한 검사를 실시함
  
- 한편, 주류 유통에 대한 규제기관 및 근거법령은 유통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됨<sup>8)</sup>
  - 생산자 및 도매업자에 대한 규제는 TTB, 관세청, 각 주정부 주류규제위원회(Liquor control Commission) 및 주정부 세무국이 담당함
  - 소매업자에 대한 규제는 각 주정부 주류규제위원회(Liquor control Commission) 및 주정부 세무국이 담당함

7) TTB, Annual Report 2011, p. 25

8) Regulation of Beverage Alcohol in Illinois: Understanding the Three-Tier System

〈표 Ⅲ-1〉 미국의 주류 관련 법체계 및 주류행정 분담

업무	근거법령	담당기관
제조면허 및 판매면허	연방내국세법(IRC) Subtitle E, 연방주류행정법 시행령	TTB
주류표시	연방주류행정법	TTB
안전관리	연방식품의약품법 시행령	식품의약국(FDA)
		TTB
유통규제	연방주류행정법 시행령 및 주법	TTB, 주정부 주류규제위원회 및 세무국

□ 한편, TTB가 담당하는 세부 주류행정 영역에 적용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음

〈표 Ⅲ-2〉 TTB 담당 주류행정

근거법령	세부 주류행정 영역
27 CFR Part 1	연방주류행정법상 basic permit requirement, 증류주 및 와인의 비산업용 사용, 증류주의 대량매매(bulk sales) 및 용기주입
27 CFR Part 4	와인 표시 및 광고
27 CFR Part 5	증류주 표시 및 광고
27 CFR Part 6	Tied-house
27 CFR Part 7	맥아음료의 표시 및 광고
27 CFR Part 8	독점 판매점(exclusive outlets)
27 CFR Part 9	미국 포도 재배 지역(American Viticultural Area)
27 CFR Part 10	Commercial Bribe
27 CFR Part 11	Consignment Sales
27 CFR Part 12	지리적 중요성을 가지면서 와인 표시에 사용되는 외국 비표준 명칭(foreign nongeneric names)
27 CFR Part 13	표시 절차
27 CFR Part 16	알코올 음료 건강 경고 문구
27 CFR Part 17	비음용 제품 제조에 사용된 과세 증류주에 대한 환급
27 CFR Part 18	휘발성 과일향 농축물 제조
27 CFR Part 19	증류주 공장
27 CFR Part 20	변성 알코올 및 럼의 유통 및 사용
27 CFR Part 21	변성 알코올 및 럼의 제조법
27 CFR Part 22	비과세 알코올의 유통 및 사용
27 CFR Part 24	와인
27 CFR Part 25	맥주
27 CFR Part 26	푸에르토리코 및 버진 아일랜드로부터의 주류 및 물품
27 CFR Part 27	증류주, 와인 및 맥주의 수입
27 CFR Part 28	알코올의 수출
27 CFR Part 29	증류기 및 기타 규정
27 CFR Part 30	측정 메뉴얼
27 CFR Part 31	알코올 음료 판매자

자료: [http://www.ttb.gov/other/regulations\\_shtml](http://www.ttb.gov/other/regulations_shtml)

## 나. 주류의 규격에 대한 규제

### 1) 주류의 정의 및 분류

- 연방주류행정법상 알코올(alcohol)은 95도 이상으로 증류된 에틸알코올을 의미함<sup>9)</sup>
- 연방내국세법은 주류의 종류를 증류주(distilled spirits), 와인, 맥주의 3종류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 증류주는 에틸알코올, 에탄올, 주정으로 알려진 것을 의미함<sup>10)</sup>
    - FAA법에서는 에틸알코올, hydrated oxide of ethyl, 주정(spirits of wine), 위스키, 럼, 브랜디, 진 그 밖의 증류주(비산업용의 모든 희석주와 혼합주를 포함)로 정의됨<sup>11)</sup>
  - 와인은 부피기준(by volume)으로 7% 이상 24% 이하의 알코올을 함유하는 비산업용 상품으로 다음 중 하나인 것<sup>12)</sup>
    - §610, 617 Revenue act of 1918(연방내국세법 5381~5392)에 정의된 와인
    - 스파클링과 발포성 포도주를 포함하여 와인 방식으로 제조된 그 밖의 알코올 음료, 농축포도즙으로 만든 와인, 농산물로 만든 와인(잘 익은 포도주스 제외), imitation wine, 와인으로 팔리는 혼합물, 혼성포도주(베르무트), 사과주, 배주(perry), 사케
  - 맥주는 부피기준으로 0.5% 이상의 알코올을 함유하고, 맥아를 원료로 양조 또는 생산된 맥주(beer), 에일(ale), 흑맥주(porter), 스타우트(stout) 및 이와 유사하게 발효된 음료를 말함<sup>13)</sup>
- 연방내국세법은 와인을 생포도주, specially sweetened natural wine, special natural wines, 농산물 와인으로 구분하여 저장고 처리(cellar treatment)나 블렌딩 방식을 규

9) 27 CFR §1.10

10) 26 USC §5002(a)(8)

11) 27 CFR §117(a)

12) 27 CFR §1.10

13) 26 USC §5052(a)

정하고 있음<sup>14)</sup>

- 생포도주(natural wine)는 잘 익은 포도나 과일주스 또는 과즙 제품으로서 승인된 저장고 처리를 거치고 총고형분 중량비율이 21% 이하인 것을 의미함
- specially sweetened natural wine은 와인제조자의 제품인 생포도주에 충분한 양의 pure dry sugar, 동일한 과일의 주스나 농축주스를 첨가한 제품으로서 최종 제품이 총고형분을 중량기준(by weight)으로 17%를 초과하고 알코올 성분을 부피 기준으로 14% 이하로 함유하도록 한 것을 의미함
  - extra sweet kosher wine<sup>15)</sup>과 고당도 와인을 포함함
- special natural wines는 오직 생포도주(heavy-bodied blending wine 포함)를 기본으로 하여 승인된 제조법에 따라 자연 허브, 향신료, 과일 주스, 아로마, 에센스 및 기타 자연향료로 만들어진 제품을 의미함
- 농산물 와인(agricultural wines)은 과일 주스 이외의 농산물로 만든 것임

## 2) 주류 제조방법 및 알코올 규격

### 가) 증류주

- 증류주 제조규정으로서는 재료 반입 · 사용 · 처분절차, 증류주 제조방법, 화학적 부산물 처리, 재고관리 및 재증류로 구분되어 있음
  - 이 중 증류주 제조방법과 화학적 부산물 처리에 대한 내용은 다음 <표 Ⅲ-3>과 같음

---

14) 26 USC §5381~5987

15) kosher wine은 엄격한 유대 율법에 따라, 랍비의 관리하에 만들어진 유대 와인. 유대인들의 안식일이나 유월절 의식에 사용됨

〈표 Ⅲ-3〉 미국의 연방법상 증류주 제조방법

	증류주 제조 및 화학적 부산물의 처리 규정
증류	① 증류주는 연속적인 시스템에서 증류되어야 함 ② 재증류 목적으로 미완성 증류주를 모으는 것은 증류과정상 연속적인 것으로 간주됨 - 단, 다른 물질과 혼합되기 전이나 연속적인 시스템 외의 공정이 있기 전에 미완성 증류주의 양과 proof는 결정되고 기록되어야 함
생산과정 중 처리	① 생산과정 중 사업자는 완제품에 잔존하지 않을 물질을 사용해서 증류주를 정제할 수 있음 ② 진(gin) 증류 시 juniper berries 및 그 밖의 천연 aromatic 또는 이들에게서 추출한 오일을 사용할 수 있음 ③ 증류주는 화학처리되지 않은 오크조각(oak chips)을 이용해 처리될 수 있음 ④ 사업자는 음용에 적합한 증류주를 추출하지 못하도록 증류주 처리에 사용된 모든 물질들을 폐기해야 함
럼이나 브랜드에 캐러멜 첨가 및 증류주에 오크조각 첨가	① 사업자는 제품측정(production gauge) 전에 packages나 탱크 안에 있는 럼 또는 브랜드에 달게 하는 속성의 물질이 없는 카라멜을 첨가할 수 있음 ② 사업자는 제품측정 전후에 증류주 packages에 화학처리하지 않은 오크조각을 첨가할 수 있음 ③ 사업자는 모든 거래 기록에 오크조각의 사용을 기록해야 함
제품측정	사업자는 생산완료 즉시,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그 양과 proof를 결정하여 모든 증류주를 측정해야 함 ※제품측정에 대한 추가요건은 27 CFR §19.281~19.289를 참조
이물질을 함유하는 증류액	① 퓨젤유, 알데히드 또는 다른 이물질(extraneous substances)을 함유하는 증류액은 제품측정 전에 증류시스템에서 제거될 수 있고, 생산된 증류주 공장에서 그 즉시, 발효물질 또는 증류물질에 첨가될 수 있음 ② 알데히드를 함유한 증류액은 세금납부 없이 와인 발효를 위해 인접한 bonded 포도주 저장실로 이전할 수 있음
화학적 부산물의 증류주 성분 및 처리	① bonded premises에서 제거될 화학적 부산물의 증류주 성분은 부피 기준으로 10%를 초과할 수 없음(단, TTB가 승인하는 경우 예외 가능) ② ①의 요건을 충족한 화학적 부산물은 그 내용물을 볼 수 있도록 표시된 파이프라인이나 컨테이너를 통해 bonded premises에서 제거될 수 있음
세척수	화학적 부산물을 세척하는 데 사용되는 물은 물탱크나 증류물질 탱크로 흐르게 하거나 그 premises에서 폐기될 수 있음

자료: 27 CFR §19.301~312

나) 와인

- 사업자는 와인 생산 전에 special natural wine, 농산물 와인, 그 밖의 standard wine의 제조법(formula)과 제조공정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함<sup>16)</sup>
  - 승인된 제조법에 따라 special natural wine과 그 밖의 standard wine을 생산하는 경우 에센스나 농축액(과일, 허브, 베리 등에서 추출한 천연성분의 조제용 물질)이 사용될 수 있음<sup>17)</sup>
    - 에센스가 주정(spirits)을 함유하는 경우 와인 용량을 10% 초과하여 증가시킬 수 없으며, 용량기준으로 알코올 성분을 4% 초과하여 증가시킬 수 없음
  
- 와인의 제조방법은 생포도주, special natural wine, 농산물 와인, 그 밖의 standard wine으로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음
  - 이 중 생포도주의 공정별 제조방법은 다음과 같음

〈표 Ⅲ-4〉 미국의 연방법상 생포도주 제조방법

	공정별 제조방법
분쇄 및 발효	① 물은 분쇄 과정 동안 설비를 씻어내거나 발효를 촉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나, 주스 당도는 22브릭스 미만으로 감소될 수 없음 - 다만 원래 주스 당도가 23브릭스 미만인 경우에는 물의 사용으로 인한 주스 당도 감소는 1브릭스 이하로 제한됨 ② 발효시작 시 물, 설탕, 동일한 종류의 과일을 농축한 과일주스, malo-lactic 박테리아, 동일한 종류의 과일 주스에서 자란 효모균 또는 효모배양물, yeast food, 살균제, 침전제 기타 승인된 발효 첨가물만 부가될 수 있음 ③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물은 효모균 1파운드에 대해 물 최대 2갤런까지 효모균을 원상으로 회복(rehydrate)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 ④ 발효 후 생포도주는 동일한 종류의 과일에서 생산된 경우에만 서로 혼합될 수 있음

16) 27 CFR §24.80

17) 27 CFR §24.85

〈표 Ⅲ-4〉의 계속

	공정별 제조방법
가당(당도 조정) chaptalization (Brix adjustment)	① 설탕함유량이 적은 주스로 생포도주를 생산할 경우, 알코올을 생성하기 위해 발효 전 또는 발효과정에 pure dry sugar 또는 농축 포도주스를 첨가할 수 있음 ② 첨가되는 설탕이나 농축주스의 양은 그 주스의 당도를 25브릭스 이하로 유지하는 데까지 허용됨 ③ 포도주스나 포도와인이 가당절차 이후에 amelioration되는 경우 가당절차를 위해 주스에 첨가된 pure dry sugar의 양은 ameliorating 물질에 포함됨 - 그러나 가당절차 이후 과일주스나 과일와인이 amelioration되는 경우에는 첨가된 pure dry sugar는 ameliorating 물질로 간주되지 않음 ④ 가당절차 이후 과일주스나 과일와인이 amelioration되고 액상당이나 invert sugar syrup이 과일주스를 가당하는 데 사용된 경우 액상당이나 invert sugar syrup에 함유된 물의 양은 ameliorating 물질에 포함됨
아멜저젠이션 <sup>1)</sup> (amelioration)	① 리터당 5g을 초과하는 고정 산도를 띠는 주스로 생포도주를 생산할 경우 와인제조자는 발효 시 ameliorating 물질(물, 설탕 또는 물·설탕의 혼합물)을 첨가해 고정 산도를 조정할 수 있음 ② 주스의 고정산도는 발효 전에 결정되며, 포도는 타르타르산, 사과는 말릭산, 다른 과일에 대해서는 시트르산으로 계산됨 ③ 1천 갤런의 주스나 와인에 첨가되는 ameliorating 물질의 각 20갤런마다 주스나 와인의 고정산도를 리터당 0.1g 감소시킴
sweetening	① 설탕, 주스, 동일한 종류의 과일의 농축 과일주스는 발효 후 와인을 달게 하기 위해 첨가될 수 있음 ② 주스나 농축 과일주스가 첨가된 경우 완성된 와인의 고형물은 중량기준으로 21%를 초과할 수 없음 ③ 액상당이나 invert sugar syrup이 사용되는 때에는 그 용량은 pure dry sugar만을 최대한 사용한 용량을 초과할 수 없음
농축·비농축 과일과즙의 사용	① 물을 섞어 원래 당도나 22브릭스로 감소하거나 원래 당도와 22브릭스 사이의 당도로 감소된 농축 과일주스와 22브릭스 이상으로 감소된 비농축 과일주스는 standard wine 생산 시 주스로 간주됨 ② 물을 섞어 22브릭스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감소된 농축 과일주스는 추가적으로 물을 섞어 원래 당도와 22브릭스 사이의 당도로 감소시킬 수 있음 ③ 농축 또는 비농축 과일주스는 가당절차나 sweetening을 위해 동일한 종류의 과일로 만든 주스나 와인에 사용될 수 있음 ④ 농축 과일주스는 80브릭스를 초과하여 농축된 때 standard wine 생산에 사용될 수 없음
설탕의 사용	① 설탕만이 standard wine 생산에 사용될 수 있음 ② 사용되는 설탕의 양은 용량증가를 측정하거나 pure dry sugar의 13.5파운드당 1갤런의 용적 증가를 가져오는 것을 고려하여 결정함

〈표 III-4〉의 계속

	공정별 제조방법
천연적 결핍을 보완하기 위한 산(acid)의 사용	① 포도나 다른 과일에서 생성되는 산은 천연적 결핍을 보완하기 위해 주스나 와인에 첨가될 수 있음 ② 포도 와인 생산 시 타르타르 산이 주스나 와인의 pH를 감소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amelioration된 주스나 와인에는 산을 첨가할 수 없음 ③ 타르타르산이 포도주스나 와인의 pH를 보완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에는 ameliorating 물질의 최대 허용량을 결정하기 위해 주스의 고정산도를 타르타르산 첨가 전에 측정해야 함 ④ amelioration된 포도주스나 와인의 pH를 줄이기 위해 타르타르산을 사용한 경우 pH는 3.0 미만으로 감소될 수 없음
알데히드를 함유한 증류액의 사용	① 알데히드를 함유한 증류액은 와인 발효에 사용하기 위해 와인 부지에 반입될 수 있고, 반출된 증류주 공장으로 반납할 수 있음 ② 한 종류의 과일에서 생산된 증류액은 다른 종류의 과일로 만든 와인의 발효과정에 사용될 수 없음 ③ bonded 와인 부지에 반입되어 즉시 사용되지 않는 알데히드 함유 증류액은 bonded 와인 부지의 밀폐된 방이나 탱크에 보관되어야 함 ④ 알데히드 함유 증류액은 wine spirits와 섞을 수 없음 ⑤ 증류액인 0.1% 미만의 알데히드를 함유하는 경우 사업주는 증류주의 반입, 저장, 사용에 관련하여 TTB 직원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요건을 따라야 함
휘발성 과일향 농축물의 사용	와인제조자가 생산한 생포도주의 저장고 처리 시 동일한 종류의 과일이나 동일한 딸기(베리)나 포도 종류에서 생산된 휘발성 과일향 농축물을 첨가할 수 있음 - 단, 휘발성 과일향 농축물의 비중은 와인이 생산된 본래 주스나 포도액의 휘발성 과일향 농축물 비중보다 낮아야 함

주: 1) 와인 제조과정에서 포도즙의 당도와 산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설탕이나 물 등을 첨가하는 작업  
 자료: 27 CFR §24.175~24.218

#### 다) 맥주

□ 맥주 제조 시 다음과 같은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법(formula)을 신고해야 함<sup>18)</sup>

- 맥주, ale, porter, stout, lager 또는 맥아주(malt liquor)로 지정된 발효음료를 생산할 경우 전형적인 절차로서 인식되지 않는 가공, 여과 또는 다른 제조법으로 처리될 발효제품

18) 27 CFR §25.55

- 비전형적인 절차로서 맥주에서 물 제거, 색상·향기·특성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맥주 여과, 맥주를 다른 성분으로 분리, 역삼투(reverse osmosis), 맥주 농축 및 이온교환처리를 예로 들 수 있음
  - 향료 또는 다른 비음용 성분(hop extract 제외)이 첨가될 발효제품
  - 착색 또는 자연·인공 향료가 첨가될 발효제품
  - 과일, 과일주스, 과일농축액, 허브, 향신료, 꿀, 메이플 시럽 또는 기타 음식재료가 첨가될 발효제품
  - flavored sake, 스파클링 사케를 포함한 사케
- 맥주 제조법을 신고해야 할 경우, 성분 정보(ingredient information), 공정별 정보, 알코올 성분(alcohol content) 및 맥주 베이스 공식 등을 포함해야 함<sup>19)</sup>
- 성분 정보로서 각 성분 및 성분별 사용량을 신고해야 함
    - 향료를 함유하는 발효제품은 제품별로 향료 이름, 제품번호 또는 TTB 환급번호 및 향료 승인일, 향료 제조자의 이름 및 사업장, 향료의 알코올 성분 및 향료가 첨가된 생산지점(발효 전, 발효 중 또는 발효 후인지 여부)을 열거해야 함
    - 향료와 알코올을 함유하는 비음용 성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맥주 베이스의 용량 및 알코올 성분, 사용된 향료나 알코올을 함유하는 비음용 성분의 최대용량, 향료나 알코올을 함유하는 비음용 성분의 알코올분(alcohol contribution), 향료 또는 알코올을 함유하는 비음용 성분이 첨가된 완제품 중 전체 알코올분 및 완제품의 최종 용량 및 알코올 성분
  - 알코올 성분으로서 발효 후 발효제품의 알코올 성분 및 완제품의 알코올 성분을 기술해야 함
- 맥주는 맥아나 맥아대체물로 양조되어야 함<sup>20)</sup>
- 쌀, 곡류, 겨, 포도당, 설탕, 당밀만 맥아대체물이 될 수 있음
  - 맥주를 발효하는 과정에서 첨가물로서 꿀, 과일, 과일주스, 과일농축액, 허브, 향

19) 27 CFR §25.57

20) 27 CFR §25.15

신료 및 기타 식물성을 사용할 수 있음

- 또한 향료나 알코올을 함유하는 비음료 성분은 완성된 맥주의 전체 알코올함유량 중 49% 이하의 범위에서 사용될 수 있음

## 다. 제조시설기준 및 제조·판매 면허제도

### 1) 제조시설기준

#### 가) 증류주

- 증류주 공장 소유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구조물, 설비 및 보안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이 기준은 공장 내의 미납 증류주 보호, bonded premises상 제품의 적절한 계량과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 연방주류행정법 시행령은 증류주 공장 내 탱크, 포장저울(package scale), 파이프 라인, 측정장치 및 proofing 기구 등에 대한 요건을 규정함<sup>21)</sup>
- 증류주 공장 내의 설비 중 탱크에 대한 요건은 일반적인 요건과 계량탱크(scale tanks)에 대한 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증류주나 변성주정(denatured spirits)을 보관하기 위한 모든 탱크가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요건은 다음 <표 Ⅲ-5>와 같음
  - 증류주 공장 소유자가 과세목적으로 계량탱크를 갖추는 경우 탱크 내 내용물의 무게와 부피가 모두 측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계량탱크의 눈금판은 무게별로 1/2 파운드 ~ 10파운드의 최소눈금기준을 충족해야 함<sup>22)</sup>
  - 또한 계량탱크를 사용하는 경우 계량의 정확성을 위해 최소한 6개월(계량기를 수리하는 경우 수리 시마다)마다 계량기를 검사해야 함

21) 27 CFR §19.181~19.193

22) 27 CFR §19.184

〈표 Ⅲ-5〉 증류주 공장 내 탱크에 대한 일반적 요건

탱크에 대한 일반적 요건		
1	사용목적	공장 등록 시 신고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함
2	측정장치	탱크 내 내용물을 측정하기 위한 정확한 장치를 설치해야 함 - 측정장치가 탱크의 영구적인 부착물이 아닌 경우 사업자는 내용물을 측정할 수 있는 고정장치를 가진 탱크를 구비해야 함 - 다만 탱크 용량이 101갤런 미만인 경우 고정장치를 갖출 필요없음
3	눈금	측정 시 정확한 눈금이 사용되어야 함 - 최초 눈금 설정 후 탱크나 측정장치의 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눈금이 재설정되어야 함
4	접근성	모든 탱크는 탱크의 전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 층계참(landings) 및 계단을 통해 접근이 가능해야 함
5	보안성	모든 탱크는 장비를 갖추어 잠겨지거나 안전하게 보안되어야 함
6	구조	모든 탱크는 통풍구, 불꽃막이(flame arresters) 또는 다른 보안장치를 통해 증류주로의 접근을 막을 수 있도록 구조를 갖추어야 함

자료: 27 CFR §19.182

나) 와인

연방주류행정법 시행령은 와인 부지 내 탱크, 파이프라인, 측정장치 및 시험 기구 등에 대한 요건을 규정함<sup>23)</sup>

와인 부지 내 설비 중 탱크에 대한 요건은 다음 〈표 Ⅲ-6〉과 같음

- 또한 탱크 또는 용량 100갤런을 초과하는 통(barrel), 큰 나무통(puncheon) 또는 이와 유사한 대량용기에는 각각 고유번호, 현재 사용목적 및 제조번호(제조법에 따라 만든 와인을 보관하는 경우)를 표시해야 함<sup>24)</sup>

23) 27 CFR §24.167~24.170

24) 27 CFR §24.168

〈표 Ⅲ-6〉 와인 부지 내 탱크에 대한 요건

		와인탱크에 대한 요건
1	사용목적	와인부지 내 모든 탱크는 의도한 목적에 적합해야 함
2	설치	와인제조에 사용되는 각 탱크는 즉시 검사를 받고 정확하게 내용물을 판단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함 - 와인제조에 사용되는 탱크가 건물이나 방 안에 있지 않는 경우 안전울타리 (secure fence) 내에 있어야 함 - 개방형 탱크는 지붕이나 적당한 덮개 아래에 있어야 함
3	측정장치	각 탱크별 내용물을 측정하기 위한 정확한 장치를 설치해야 함 - 측정장치가 탱크의 영구적인 부착물이 아닌 경우 사업자는 내용물을 측정할 수 있는 고정장치를 가진 탱크를 구비해야 함
4	접근성	사업자는 탱크 모든 부분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5	눈금	탱크 내 눈금이 정확하게 설정되고 눈금의 정확성 인증서가 해당 부지에 대해 설정되어야 함 - 최초 눈금 설정 후 탱크나 측정장치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눈금이 재설정되어야 함
6	틈	증류주 저장, 저울질, 측정 목적 또는 와인에 증류주를 첨가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탱크 내에 틈이 있는 경우 모든 틈에 대한 폐쇄장치나 세수보호를 위한 유사 장치를 갖추어야 함
7	구조	통풍구, 불꽃막이(flame arresters), 거품장치 또는 증류주 탱크에 부착된 다른 안전장치는 탱크 내용물을 추출할 수 없는 구조를 갖추어야 함

자료: 27 CFR §24.167

#### 다) 맥주

- 연방주류행정법 시행령은 맥주 제조장 설비와 측정 장치에 대한 요건을 규정함<sup>25)</sup>
- 맥아즙, 맥주 또는 맥주에서 생산된 농축액을 담을 용기로 사용되거나 의도된 탱크, 통(vat), 거푸집(cast) 또는 다른 용기는 고유번호와 용량을 표기하고 적절한 측정 장치를 갖추어야 함
  - 비어 있는 통(barrel), 작은 통(kegs), 병, 기타 용기 또는 맥주 제조장에 보관된 다른 저장품은 가득 찬 용기와 분리되어야 함
  - 계량기나 검수관(gauge glass)과 같은 맥주 측정 장치는 주기적으로 검사되어야 하며, 검사일시, 측정 장치 이름, 검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함

25) 27 CFR §25.35~25.42

## 2) 주류 제조면허 및 판매면허

### 가) 연방주류행정법상 Basic permit

- 연방주류행정법은 수입업자, 생산 관련업자, 도매업자에 대해 basic permit을 요구함<sup>26)</sup>
  - 수입업자와 도매업자는 증류주, 와인, 맥주 모두에 대해 basic permit을 갖추어야 함
  - 증류주 증류 및 와인 제조, 증류주 또는 와인의 정류 또는 혼합, 증류주의 창고보관 또는 bottling을 하려는 생산 관련업자도 basic permit을 필요로 함
  
- basic permit 요건으로서 연방법 또는 주법상 위반사항이 없고, 해당 사업체를 운영할 능력을 요구함<sup>27)</sup>
  - 첫째, 신청일로부터 5년 내에 연방법이나 주법상 중죄(felony)를 선고받지 않아야 하고, 신청일로부터 3년 내에 주류 관련 연방법상 경죄(misdemeanor)를 선고받지 않아야 함
  - 둘째, 신청인의 사업경험, 재무상태, 거래관계에 비추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수입업, 생산 관련업, 도매업을 개시하고, 연방법에 따라 그러한 사업체를 영위할 가능성이 있어야 함
  - 셋째, 예정된 사업과 관련하여 그 사업이 수행될 주정부의 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

### 나) 증류주 제조 시 등록의무 및 연방내국세법상 permit

- 증류주 제조장(distilled spirits plants)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 시설을 TTB에 등록(registration)해야 하고, 그 시설 운영에 대해 연방주류행정법상 basic permit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방내국세법상 permit을 요구함<sup>28)</sup>

---

26) 27 CFR §1.20~1.22

27) 27 USC §204(a)(2), 27 CFR §1.24

28) 26 USC §5171(c), (d)

□ 증류주 제조장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사업장 정보, 제조장 및 주요 설비 내역, 생산량, 제조장 보안정보 등을 제공해야 함

○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정보는 <표 Ⅲ-7>과 같음

<표 Ⅲ-7> 미국의 증류주 제조장 등록을 위한 필수정보

	필수정보	상세내용
1	일련번호	
2	상호 및 주사무소 주소	단, 증류주 제조장이 신청인의 주사무소와 다른 곳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증류주 제조장의 소재지 정보도 제출
3	예정사업에 대한 상세	
4	신청 목적	
5	사업자 유형 정보	
6	허가 또는 담보목록	operating permits, basic permits, operation bonds, withdrawal bonds, unit bonds 목록
7	사무소 목록 및 임원명단(법인인 경우)	임원은 정관 또는 이사회에서 회사를 위해 서명하거나 행동할 권한을 준 자를 의미
8	제조장 상세내역	① 증류주 제조장이 소재하는 부지의 각 구역에 대한 정보 ② bonded premises와 general premises를 명확하게 구분하게 하는 정보 ③ TTB 담당자가 제조장의 경계를 쉽게 결정하도록 하는 방향과 거리에 대한 정보 ④ 증류주 제조, 보관, 가공에 사용될 건물과 외부탱크에 대한 정보 ⑤ 건물의 특정 방 또는 특정 층만을 제조장 운영에 사용할 경우 그 건물, 층, 방의 위치와 상세내역에 대한 정보
9	주요 설비 내역	① 제조장의 각 탱크별 일련번호 및 용량 ② 제조장의 각 증류기별 일련번호, 종류, 용량 및 예상 사용법 ③ 각 냉각기별 일련번호
10	생산량 정보	15일 동안 양조장에서 생산될 최대 proof gallon, bonded premises에 저장될 최대 proof gallon 및 bonded premises로 운송 중인 최대 proof gallon
11	회계장부	
12	제조장 보안정보	① 제조장 보안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② 보안직원 이용에 대한 정보 ③ 전자 또는 기계 경보 장치의 이용에 대한 정보 ④ 잠금장치가 법령상 요건에 충족함을 인증하는 자료 ⑤ 잠금장치 열쇠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명단 및 직책

〈표 Ⅲ-7〉의 계속

	필수정보	상세내용
13	증류업자에 대한 추가요건	① 일별 생산가능 proof gallon ② 생산절차에 대한 정보 ③ 증류주를 재증류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
14	창고보관업자에 대한 추가요건	① 보관시스템 정보 ② 보관가능한 bulk wine gallon
15	가공업자에 대한 추가요건	① 용기주입, 변성 또는 재증류 여부에 대한 정보 ② 용기주입되어 케이스에 넣은 증류주 또는 bonded premises로부터 제거를 위해 승인받은 컨테이너에 포장되어 보관된 증류주에 대한 보관시스템 정보

자료: 27 CFR 19 §19.73~19.76

- 또한 산업용 증류, 증류주 보관, 증류주 변성, 산업용(industrial use) 증류주 용기주입 또는 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연방내국세법상 operating permit을 필요로 함<sup>29)</sup>
  - operating permit의 요건으로서 신청인의 사업경험, 재무상태, 거래관계에 비추어 해당 사업체를 운영할 가능성이 있고, 정보제공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사업을 영위할 부지가 세수보호에 적합할 것을 필요로 함<sup>30)</sup>
  - operating permit을 받기 위해 〈표 Ⅲ-8〉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함
  
- 한편, 증류주 제조장 정보는 등록 신청 시 필수정보인데, 증류주 제조장의 설치와 사용에 대해서는 제한 요건이 규정되어 있음<sup>31)</sup>
  - 첫째, 증류주 제조장의 소재지 제한으로서 주택, 선박, 맥주나 와인이 제조되는 장소, 주류가 소매로 판매되는 장소에는 증류주 공장을 설치할 수 없음
  - 둘째, 제조장 부지의 연속성 요건으로서 공공수로, 공용도로 또는 항공사 통행권에 따라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증류주 공장부지는 연속되어야 함
  - 셋째, 증류주 제조장 부지의 사용제한으로서 공장주는 증류주 사업을 위한 bonded premises는 오직 증류주 사업에만 사용해야 함

29) 27 CFR §19.91

30) 27 CFR §19.96

31) 27 CFR §19.52~19.56

- 단, 세수에 위험이 없고 TTБ의 업무수행에 방해하지 않는 등을 이유로 TTБ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bonded premises에서 다른 사업을 겸업할 수 있음

〈표 Ⅲ-8〉 미국의 증류주 제조장 operating permit 신청을 위한 필수정보

필수정보		상세내용
1	상호 및 주사무소 주소	단, 증류주 제조장이 신청인의 주사무소와 다른 곳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증류주 제조장의 소재지 정보도 제출
2	예정사업에 대한 상세	
3	사업자 정보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회사설립허가서</li> <li>② 이사 및 임원의 성명 및 주소</li> <li>③ 이사회 회의록 또는 발췌록으로서 공인된 것</li> <li>④ 주식 종류별 수권주식 또는 발행주식수 및 주주별 의결권수</li> </ul>
		파트너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관 사본(지자체에서 인증을 요하는 경우에는 인증서도 가능)</li> </ul>
		유한책임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정관 사본</li> <li>② 사업약정(operating agreement) 사본</li> <li>③ 모든 사원 및 관리자의 이름 및 주소</li> </ul>
4	상표	

자료: 27 CFR §19.92~19.94

#### 다) 와인 제조 시 부지 설정 및 운영 승인

- 와인을 제조하려는 자는 와인 부지(wine premises)를 정하여 담보를 제공하고 와인 부지를 운영하기 위한 승인(permission)을 받아야 함
- 자가소비용 와인 제조, 면세 사이다, 시험용으로 와인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음
  - 승인 이후 와인 부지는 ① 담보를 제공한 포도주 제조장(bonded winery), ② 담보를 제공한 포도주 저장고(bonded wine cellar) 또는 ③ 세금완납 와인 용기주입소(taxpaid wine bottling house)로 구분하여 지정됨<sup>32)</sup>
- 와인 부지에 대한 운영 승인을 받기 위해 ‘와인 부지 설정 및 운영 신청서(Application

32) 27 CFR §24.100

to Establish and Operate Wine Premises)’를 제출해야 함

○ 와인 부지 설정 및 운영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는 <표 Ⅲ-9>와 같음

<표 Ⅲ-9> 미국의 와인 부지 설정 및 운영 신청 시 필수정보

	필수정보	상세내용
1	일련번호	
2	상호 및 주사무소 주소	단, 와인 부지가 신청인의 주사무소와 다른 곳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와인 부지의 소재지 정보도 제출
3	사업자 유형 정보	
4	신청 목적의 구분	담보를 제공한 포도주 제조장, 담보를 제공한 포도주 저장고, 세금완납 와인 용기주입소 중 설정대상을 명시
5	회사 정관 또는 이사회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임원 명단	
6	와인 부지의 상세내역	① 와인 부지를 구성하는 각 구역별 상세내역으로서 방향, 거리 등 와인 부지의 경계를 결정하는 데 충분한 정보 ② 와인 작업에 사용되는 건물: 크기, 구조, 용도 정보 ③ 와인 작업에 사용되지 않는 건물: 크기, 구조 정보 ④ 와인 부지가 한 건물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방 또는 층은 구분하여 기술
7	상표	
8	spirits 작업의 상세내역	
9	와인 부지에 대한 담보내역	담보별 담보제공자의 이름이 표시된 basic permit 및 담보 목록을 제출
10	휘발성 과일향 농축액 작업의 상세내역	① 과일에서 주스를 얻는 과정부터 휘발성 과일향 농축액을 추출하는 과정까지의 각 과정에 대한 정보 ② 휘발성 과일향 농축액이 알코올을 24% 초과하여 함유하는 경우 제조 과정 중 음용에 적합한 주류에 해당하게 된 단계를 구분하여 표시 ③ 사용된 과일별로 24시간 내 사용된 과일액과 생산된 휘발성 과일향 농축액 최대량, the maximum and minimum fold 및 휘발성 과일향 농축액 중 최대 알코올 퍼센트를 기술
11	작업 상세, 부지 목록, 그 작업과 와인 제조와의 관계에 대한 자료	법령에서 승인하지 않은 작업을 와인 부지에서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

자료: 27 CFR §24.109

## 라) 맥주 제조 시 통지의무

- 맥주 제조자에 대해서는 연방주류행정법상 basic permit이나 연방내국세법상 등록 요건을 요구하지 않지만, 맥주 제조장(brewery)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통지서 (notice)를 제출하여야 함<sup>33)</sup>
- TTB가 해당 맥주제조장과 맥주제조자의 통지서를 승인하지 않으면 맥주를 제조할 수 없음<sup>34)</sup>
- 맥주 제조자가 제출하는 통지서에 포함되는 필수정보는 <표 III-10>과 같음

〈표 III-10〉 미국의 맥주 제조장 통지서 제출 시 필수정보

	필수정보	상세내용
1	일련번호	
2	제출목적	
3	상호 및 주사무소 주소	단, 맥주 제조장이 신청인의 주사무소와 다른 곳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맥주 제조장의 소재지 정보도 제출
4	사업자 유형 정보	
5	제조장 상세내역	① 맥주 제조장이 위치한 토지의 각 구역 정보 ② 지정된 문자 또는 숫자로 기록된 맥주 공장건물의 목록
6	제조 또는 맥주 포장 시 사용하고 자 하는 상표	
7	제조장이 위치한 토지·건물의 사업자 또는 그 토지·건물에 대한 담보권자의 이름 및 주소	
8	맥주제조장의 하루 예정영업시간	
9	음용 부적합 맥주의 제조공정	
10	다른 맥주제조장의 소유권 또는 지배지분에 대한 자료	동일한 소유자가 여러 개의 맥주제조장을 보유하여 맥주제조장 간에 세금납부 없이 맥주를 이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11	통지일시 및 제조자의 이름과 서명	

자료: 27 CFR 19 §25.62, 25.68

33) 26 USC §5401

34) 27 CFR §25.61

- 한편, 맥주 제조장의 설치와 사용에 대해서는 제한 요건이 규정되어 있음<sup>35)</sup>
  - 첫째, 맥주 제조장의 소재지 제한으로서 주택, 선박 또는 세수에 위험을 주거나 효율적인 맥주 행정에 방해할 수 있는 건물이나 부지에는 맥주 제조장을 설치할 수 없음
  - 둘째, 제조장 부지의 연속성 요건으로서 공공수로, 공용도로 또는 항공사 통행권에 따라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맥주 공장부지는 연속되어야 함
  - 셋째, 맥주 제조장은 맥주와 곡물 음료를 생산하는 데 사용해야 하며, 그 이외에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TTB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맥주 제조 시 발생한 부산물이나 폐기물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 맥주 제조나 포장에 전체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건물, 방, 구역,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 제조장 부지의 최대이익을 실현하고 제조장의 간접비를 감소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 긴급하게 공익상 필요한 경우
    - 설비, 재료, 가공, 제품, 부산물, 폐기물에 관련된 실험이나 연구프로젝트를 포함하는 경우
    - 제조장 부지에서 간이주점(tavern)을 운영하는 경우

#### 마) 판매 등록

- 음료용에 적합한 알코올 제품(증류주, 와인, 맥주)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주는 판매자(dealer)로 등록해야 함
  - 판매자로 등록한 사업주는 주류 도매판매자로 구분되며, 또한 추가적인 등록 없이 주류 소매업자로 영업할 수 있음<sup>36)</sup>
  - 주류 판매자 등록 시 신고항목에는 판매자 본명, 상호, 사업주 식별번호, 판매자 주사무소 또는 본점 주소, 각 사업장의 정확한 위치, 사업장별 전화번호, 판매자

35) 26 USC §5402, 27 CFR §25.21~25.23

36) 27 CFR §19.202, 24.52, 25.112

유형, 사업주나 경영상 통제권을 가진 자의 이름·직책·주소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sup>37)</sup>

□ 연방내국세법상 주류판매자의 유형은 취급주류의 종류 및 도·소매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됨<sup>38)</sup>

- 첫째, 주류소매판매자(wholesale dealer in liquors)는 판매자 아닌 자에게 증류주, 와인 또는 맥주를 판매하는 자를 말함
  - 맥주소매판매자, 제한소매판매자는 주류소매판매자로 보지 않음
- 둘째, 주류도매판매자(wholesale dealer in liquors)는 다른 판매자에게 증류주, 와인 또는 맥주를 판매하는 자를 말함
  - 맥주도매판매자는 주류도매판매자로 보지 않음
  - 20 와인 갤런(75.7 리터) 이상의 증류주, 와인, 맥주를 매각하는 자는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한 주류도매판매자 또는 맥주도매판매자로 추정해야 함
- 셋째, 맥주소매판매자(wholesale dealer in beer)는 판매자 아닌 자에게 맥주만을 판매하는 자를 말함
  - 제한소매판매자는 맥주소매판매자로 보지 않음
- 넷째, 맥주도매판매자(wholesale dealer in beer)는 다른 판매자에게 맥주를 판매하는 자를 말함
  - 20 와인 갤런(75.7 리터) 이상의 증류주, 와인, 맥주를 매각하는 자는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한 주류도매판매자 또는 맥주도매판매자로 추정해야 함
- 다섯째, 제한소매판매자(limited retail dealer)는 축제, 모임, 소풍 또는 이와 유사한 야유회의 참가자들에게 증류주, 맥주, 와인을 판매하는 개인이나 오락, 파티, 소풍, 바자회 또는 종교축제를 개최하면서 증류주, 맥주, 와인을 판매하는 공제조합, 교회, 자선단체 등을 말함

37) 27 CFR §31.114

38) 26 USC §5121, 5122

- 다만, 주류 1회 판매, 위탁판매, 비음용목적 판매 등 법령상 판매자로 보지 않는 자는 위 유형(제한소매판매자 제외)에 해당하지 않음

## 2. 일본

### 가. 개관

- 일본은 주세법 등 다양한 관련법령을 근거로 국세청이 주류행정을 집행함
  - 국세청은 주류 제조·판매면허와 주류표시에 대한 전통적인 주류 행정업무를 담당함
  - 그 외에도 국세청은 주류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품질 수준을 향상시키며, 소비자에게 안전한 양질의 주류를 제공하도록 하는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함
    - － 기술적인 고급 문제에 대해서는 독립행정법인 주류총합연구소와 연계하여 대응함
    - － 예를 들어, 독립법인 주류총합연구소는 주류 및 주류제조에 관한 물품(원료, 보조제품, 양조용수 등)에 대해 방사성 물질의 수탁분석을 실시함
  - 또한 주류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매년 주류 판매장 등에 대한 거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함
  
- 2011년에 발표된 주류행정에 대한 「규제·제도개혁에 관한 방침」에 따라 2012년 9월부터 판매업면허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임<sup>39)</sup>
  - 면허요건 중 경영기초요건에 대한 기준수량을 인하하거나 폐지할 예정임
  - 매장판매주류 도매업면허, 협동조합원간 주류도매업면허, 자기상표주류 도매업면허와 같은 신규 면허구분이 신설될 예정임
  - 전주류도매업면허 및 맥주도매업면허의 면허가능건수에 관한 계산방법이 변경될

39) 일본 국세청 자료, 「酒類卸売業免許の要件緩和等について」, 2012.6.

## 예정입

〈표 Ⅲ-11〉 일본의 주류 관련 법체계 및 주류행정 분담

업무	근거법령	담당기관
제조·판매면허 허가	「주세법」, 「알코올사업법」	국세청
주류표시	「주세보전 및 주류 산업 협회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국세청
안전관리	「식품위생법」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 기준」	국세청, 독립행정법인 주류총합연구소
유통규제	「주류에 관한 공정거래를 위한 지침」	국세청

## 나. 주류의 규격에 대한 규제

## 1) 주류의 정의 및 분류

- 주세법상 주류는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희석하여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을 포함)를 말함
  - 다만, 「알코올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알코올분 90도 이상의 것은 주류에 포함되지 않음
- 주세법에서는 주류를 제조법에 따라 발포성 주류, 양조 주류, 증류 주류, 혼성 주류의 4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각 분류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발포성 주류에는 맥주, 발포주 및 그 밖의 발포성 주류(알코올분이 10도 미만인 것)가 포함됨
  - 양조 주류에는 청주, 과실주 및 그 밖의 양조류가 포함됨
  - 증류 주류에는 연속식 증류소주, 단식 증류소주, 위스키, 브랜디, 원료용 알코올, 스피릿이 해당됨
  - 혼성 주류에는 합성 청주, 미림, 감미과실주, 리큐르, 분말주 및 잡주가 포함됨

〈표 Ⅲ-12〉 일본 주세법상 주류의 품목구분

품목구분	정의 및 개요
청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쌀, 쌀누룩, 물을 원료로 발효하여 여과시킨 것(알코올분이 22도 미만인 것)</li> <li>• 쌀, 쌀누룩, 물 및 청주 찌꺼기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원료로 발효하여 여과시킨 것(알코올분이 22도 미만인 것)</li> </ul>
합성청주	알코올, 소주 또는 청주와 포도당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원료로 해 제조한 주류로 청주와 유사한 것(알코올분이 16도 미만으로 엑기스분이 5도 이상 등의 것)
연속식 증류소주	알코올 함유물을 연속식 증류기에 의해 증류한 것(알코올분이 36도 미만인 것)
단식 증류소주	알코올 함유물을 연속식 증류기 이외의 증류기에 의해 증류한 것(알코올분이 45도 이하인 것)
미림	쌀, 쌀누룩에 소주 또는 알코올, 기타 정령으로 정한 물품을 첨가한 것(알코올분이 15도 미만으로 엑기스분이 40도 이상 등의 것)
맥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맥아, 홉,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것(알코올분이 20도 미만인 것)</li> <li>• 맥아, 홉, 물, 보리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한 물품을 원료로 발효시킨 것(알코올분이 20도 미만인 것)</li> </ul>
과실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실을 원료로 발효시킨 것(알코올분이 20도 미만인 것)</li> <li>• 과실, 당류를 원료로 발효시킨 것(알코올분이 15도 미만인 것)</li> </ul>
감미과실주	과실주에 당류, 브랜디 등을 혼합한 것
위스키	발아시킨 곡류, 물을 원료로 당화시켜 발효한 알코올 함유물을 증류한 것
브랜디	과일,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알코올 함유물을 증류한 것
원료용 알코올	알코올 함유물을 증류한 것(알코올분이 45도 미만인 것)
발포주	맥아 또는 보리를 원료의 일부로 한 주류에서 발포성을 가진 것(알코올분이 20도 미만인 것)
기타 양조주	곡류, 당류 등을 원료로 발효시킨 것(알코올분이 20도 미만으로 엑기스분이 2도 이상 등의 것)
스피릿	위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주류 중 엑기스분이 2도 미만인 것
리큐르	주류와 당류 등을 원료로 한 주류 중 엑기스분이 2도 이상인 것
분말주	용해하여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
잡주	위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주류

자료: <http://www.nta.go.jp/shiraberu/senmonjoho/sake/qa/01/01.pdf>

## 2) 주류 제조방법 및 주류의 규격

- 주류 제조 시 주된 원료의 종류는 품목별 정의규정에 나타나 있으며, 그 밖의 구체적인 원료는 「주세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표 Ⅲ-13〉 일본 주세법상 주류의 원료

품목구분	품목별 원료
청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쌀, 쌀누룩, 물, 청주찌꺼기</li> <li>• 그 밖의 정령으로 정하는 물품: 알코올(연속식 증류소주 중 알코올분이 36도 이상 45도 이하인 것을 포함), 소주(연속식 증류소주 또는 단식 증류소주를 말하며, 물 이외의 물품을 첨가한 것을 제외함), 포도당 그 밖에 재무성 영으로 정한 당류, 유기산, 아미노산염 또는 청주를 말함</li> </ul>
합성청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코올, 연속식 증류소주, 청주, 포도당</li> <li>• 그 밖의 정령으로 정한 물품: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쌀, 보리, 옥수수 또는 이러한 누룩</li> <li>2. 포도당 이외의 당류, 전분 전당물 분해물, 단백질물 또는 그 분해물, 아미노산 또는 그 염류, 유기산 또는 그 염류, 무기산, 무기물 염류, 색소, 향료, 粘ちよう剂, 주류 찌꺼기 또는 주류(알코올, 소주 및 청주는 제외)</li> </ol> </li> </ul>
미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쌀, 쌀누룩, 소주, 알코올, 미림</li> <li>• 미림의 원료로서 정령으로 정한 물품(물 제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옥수수, 포도당, 물엿, 단백질물 분해물, 유기산, 아미노산염, 청주찌꺼기 또는 미림찌꺼기</li> <li>2. 쌀 또는 쌀누룩에 청주, 소주, 미림 또는 알코올을 첨가하거나 이것에 물을 더 첨가해 같은 것</li> </ol> </li> </ul>
맥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맥아, 홉, 물, 보리</li> <li>•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한 물품: 보리, 쌀, 옥수수, とうもろこし, こうりやん, ばれいしよ, 전분, 당류 또는 재무성 영으로 정한 苦味料 또는 착색료</li> </ul>
과실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실, 물</li> <li>• 정령으로 정한 당류: 설탕, 포도당 또는 과당</li> </ul>

자료: 주세법 시행령 제2, 3, 5, 6, 7조

- 연속식 증류소주의 범위에는 물을 첨가한 증류주와 설탕 및 다음의 첨가물을 함유한 증류주도 포함함<sup>40)</sup>

40) 주세법 제3조 제9호

- 설탕(分みつ(조작을 가하고 당밀을 분리한 것)을 한 설탕에 한함), 주석산 또는 구연산(알코올 함유물을 증류한 주류에 이러한 물품을 가한 경우에 해당 주류에 착색 또는 착향을 시키게 된 것은 제외)
- 재무성 영으로 정한 합성 착색료

## 다. 제조시설 기준 및 제조·판매 면허제도

### 1) 제조시설기준

- 일본 주세법에는 제조시설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음
  - 다만, 제조면허 신청서에 제조장 설비상황을 기재하도록 함

### 2) 주류 제조면허 및 판매면허

#### 가) 개관

- 주류 제조자는 주류의 품목별로 제조장마다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며, 주류 판매자는 판매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함
  - 주류 제조면허를 신청하려는 자는 ① 신청자의 주소·이름(명칭), ② 제조장의 소재지·명칭, ③ 제조하려는 주류의 품목 및 범위, ④ 제조방법, ⑤ 제조면허를 받은 후 1년간 주류 제조예상수량, ⑥ 시험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그 취지 및 목적, ⑦ 제조장 설비상황을 신청서에 기재해야 함<sup>41)</sup>
    - 그 외에 제조장 대지의 상황 및 건물 구조에 대한 도면, 사업의 개요, 예상수지, 소요자금액 및 조달방법, 주류 판매관리에 관한 사항 등도 기재해야 함
  - 판매업면허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① 신청자의 주소·이름(명칭), ② 판매장의 소재지·명칭, ③ 판매하려는 주류의 품목, 범위 및 판매방법, ④ 박람회장 등 임시

41) 「주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판매장을 설치하고 주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그 취지 및 판매업을 하려는 기간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sup>42)</sup>

- 주류판매업 면허는 주류 판매처에 따라 크게 주류소매업 면허와 주류도매업 면허로 구분되고, 그 밖에 주류판매대리업 면허제도와 주류판매매개업 면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표 Ⅲ-14〉 일본의 주류판매업등 면허의 구분

주류판매업등 면허의 구분		개념	
주류판매업 면허	주류소매업 면허	일반주류 소매업면허	판매장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의 주류를 소매할 수 있는 주류소매업면허
		통신판매 소매업면허	2개 도도부현(都道府県) 이상 지역의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인터넷, 카탈로그 송부 등의 방법에 의해 일정한 주류를 소매할 수 있는 주류소매업면허
		특수주류 소매업면허	주류 소비자등의 특별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주류를 소매할 수 있는 주류소매업면허 예) 자사 직원 및 종업원에 대한 소매
	주류도매업 면허	전주류 도매업면허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의 주류를 도매할 수 있는 주류도매업면허
		맥주 도매업면허	맥주를 도매할 수 있는 주류도매업면허
		양주 도매업면허	과실주, 감미과실주, 위스키, 브랜디, 발포주, 기타 양조주, 증류주, 혼성주, 분말주 및 雑酒를 도매할 수 있는 주류도매업면허
		수출입주류 도매업면허	수출할 주류, 수입할 주류 또는 수출할 주류와 수입할 주류를 도매할 수 있는 주류도매업면허
		특수주류 도매업면허	주류사업자의 특별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주류를 도매하는 것이 인정된 주류도매업면허 • 주류제조자의 본지점, 출장소 등에 대한 주류도매업면허 • 주류제조자의 트러스트(企業合同)에 의한 주류도매업면허 • 주류제조자의 공동판매기관에 대한 주류도매업면허
	주류판매대리업 면허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의 주류 판매에 관한 거래를 계속적으로 대리하는 것(영리목적 불문)이 인정된 면허
	주류판매매개업 면허		타인간 주류의 매매거래를 계속적으로 매개하는 것(거래 상대방의 소개, 의사전달 또는 거래내용의 절충 등의 거래성립을 위한 보조 행위를 포함, 영리목적 불문)이 인정된 면허

자료: <http://www.nta.go.jp/shiraberu/senmonjoho/sake/qa/03/06.htm>

42) 주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나) 면허요건

- 주류 제조면허 또는 판매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인적 요건, 장소적 요건, 경영기초요건, 공급조정요건을 충족해야 함
- 첫째, 면허 신청자는 다음 ①~⑥의 인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sup>43)</sup>
  - 신청자의 법정대리인(신청자가 영업에 관해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갖지 않는 자인 경우), 신청법인의 임원, 신청판매장의 지배인은 ③을 제외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함

일본 주세법상 제조면허 및 판매면허에 대한 인적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신청자가 주류 제조면허 취소처분,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 또는 알코올 사업법상 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적이 없을 것</li> <li>② 신청자가 주류 제조면허 취소처분 또는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 또는 알코올 사업법상 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법인의 그 취소원인이 있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이었던 자인 경우에는 그 법인이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할 것</li> <li>③ 신청자가 신청 전 2년 내에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적이 없을 것</li> <li>④ 신청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법령등을 위반해 벌금형에 처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각각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은 것이 없어진 날 또는 그 통고취지를 이행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할 것</li> <li>⑤ 신청자가 「미성년자음주금지법」,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미성년자에 대한 주류제공에 관한 부분에 한함),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 「형법」(상해, 현장조력, 폭행, 흥기준비집합 및 결집, 협박 또는 배임의 죄)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벌금형에 처한 자인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은 것이 없어진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할 것</li> <li>⑥ 신청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져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을 받은 것이 없어진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할 것</li> </ul>

- 둘째, 장소적 요건으로서 면허 신청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이 단속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판매장을 설치하지 않아야 함<sup>44)</sup>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청판매장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해야 함<sup>45)</sup>

43) 주세법 제10조 제1호~제8호

44) 주세법 제10조 제9호

45) 국세청, 「一般酒類小売業免許申請の手引」, 平成22年9月, p. 7

- 신청판매장이 제조면허를 받고 있는 주류의 제조장과 판매업면허를 받고 있는 주류의 판매장, 주점 또는 요리점 등과 동일한 장소가 아닐 것
- 신청판매장에 관한 영업이 판매장의 구역에 할당되고, 전속 판매종사자의 유무, 대금결제의 독립성, 기타 판매행위에 있어서 다른 영업주체의 영업과 명확하게 구분될 것이 필요함

- 셋째, 경영기초요건으로서 면허신청자가 파산자로 복권받지 않은 경우 외에 그 경영기초가 공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sup>46)</sup>
- ‘경영 기초가 공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부족, 경제적인 신용 부족, 제품 또는 판매설비의 불충분, 경영능력의 부족 등과 같이 경영상 물적·인적·금전적 요소에 상당한 결함이 인정되어 주류제조자의 판매대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말함
  - 또한 신청자가 파산자로 복권받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①~⑧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 기초가 공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간주함<sup>47)</sup>
  - 한편, <표 Ⅲ-15>와 같이 경력 및 지식·능력 등(경영능력), 제조(판매)능력 및 소요자금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경영 기초가 공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간주함<sup>48)</sup>
    - 경영능력에 대한 판단요소로서 면허 신청자는 사업 경력 등을 판단하여 적정하게 주류를 제조하는 데 충분한 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이들이 주체가 되어 조직한 법인이어야 함

---

46) 주세법 제10조 제10호

47) 주세법 및 주류행정관계법령등 해석통달, 제10조 제조면허등의 요건 중 제10호관계

48) 주세법 및 주류행정관계법령등 해석통달, 제10조 제조면허등의 요건 중 제10호관계

일본 주류 제조면허 및 판매면허에 대한 경영기초요건 판단요소(1)

- ①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 ② 신청 전 1년 이내에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
- ③ 최종사업연도에 관해 확정된 결산에 기초해 대차대조표의 이월결손금이 자본등의액을 상회하고 있는 경우 또는 최종사업연도 이전 3사업연도 모두의 사업연도에 관해 자본등의액의 20%를 초과한 액만큼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 ④ 주세에 관계있는 법률에 위반해 통고처분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고발되어 있는 경우
- ⑤ 제조장 또는 판매장 신청장소의 설치에 대해 「건축기준법」, 「도시계획법」, 「농지법」, 「유통업무시기지 정비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에 위반하여 점포 철거 또는 이전을 명령받고 있는 경우
- ⑥ 현재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주류에 대한 주세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⑦ 주류 제조 면허를 부여하기로 한 경우 당해 공급자가 향후 1 년간 납부해야 할 주세액(기존 면허상 주세액 포함)의 평균 3 개월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조 면허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주류의 수량에 대한 주세 상당액 (이하 '신청주류 주세액'이라 함) 4개월분에 상당하는 가액 중 큰 금액 이상의 담보를 제공하는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 경우
  - 다만, 신청주류 주세액이 제조 면허를 부여하는 경우의 해당 제조 업체의 향후 1년간 납부할 주세액(기존 면허상 주세액을 포함)의 30% 이하이고, 제조업체가 신청주류 주세액의 4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담보 제공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⑧ 신청주류 소매판매장에 관해 주류의 적정한 판매관리체제가 구축되지 않은 것이 명확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표 Ⅲ-15〉 일본 주류 제조면허 및 판매면허에 대한 경영기초요건 판단요소(2)

	경영능력에 대한 특별규정	제조(판매)능력 및 소요자금등
제조면허	-	① 신청 제조장에 주류 제조예상수량이 법정제조수량 이상일 것 ② 신청자가 주류를 적절하게 제조하는 데 필요한 소요자금 등 및 제조 또는 저장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인원을 가진 자로서 주류의 제조에 관해서 안정적인 경영을 한다고 인정될 것 ③ 주류 제조면허를 부여할 경우 당해 주류 제조에 필요한 원료의 입수가 확실하다고 인정될 것

〈표 Ⅲ-15〉의 계속

	경영능력에 대한 특별규정	제조(판매)능력 및 소요자금등								
일반주류 소매업면허	<p>신청자(법인인 경우 임원) 및 신청판매장의 지배인이 다음 경력을 갖출 경우 경영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p> <p>① 주류 제조 또는 판매업(약용 술만을 판매하는 업 제외)에 직접 종사 기간이 계속해서 3년 이상인 자, 조미 식품 등의 판매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자 또는 이러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인 자</p> <p>② 주류업단체의 임직원으로 상당 기간 계속 근무한 자 또는 주류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경영자로서 직접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로 주류에 관한 사업 및 주류 업계의 실정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p>	<p>신청자 등은 신청 등 판매장에서 주류를 지속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소요 자금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소유 자금 등 및 필요한 판매 시설 및 설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소유 자금을 가지고 면허를 부여하기 전에 판매 시설 및 설비를 가진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자일 것</p>								
통신판매주류 소매업면허	-	<p>① 신청자는 주류의 통신 판매를 위한 소요 자금을 보유하고, 판매 방법이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의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미성년자의 음주 예방에 대한 표시 기준'을 충족할 것</p> <p>② 신청자는 주류 구입 신청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p>								
특수주류 소매업면허	일반주류 소매업면허에 대한 규정 준용	일반주류 소매업면허에 대한 규정 준용								
전주류 도매업면허	<p>신청자(법인인 경우 임원) 및 신청판매장의 지배인이 다음 경력을 갖출 경우 경영능력 있는 것으로 간주</p> <p>① 주류 제조 또는 판매업(약용 술만을 판매하는 업 제외)의 업무에 직접 종사 기간이 계속해서 10년(이들 기업의 경영자로서 직접 업무에 종사한 자는 5년) 이상인 자, 조미 식품 등의 도매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통산하여 10년 이상인 자 - 다만, 신청 판매장이 오키나와에 소재하는 경우 신청자 등의 경력은 10년 대신 3년으로 함</p> <p>② 주류업단체의 임직원으로 상당 기간 계속 근무한 자 또는 주류에 관한 사업 및 주류 업계의 실정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p>	<p>① 연평균 판매예상수량(전체 주류 도매 기준 수량)</p> <table border="1"> <thead> <tr> <th>판매장 소재지</th> <th>기준</th> </tr> </thead> <tbody> <tr> <td>대도시</td> <td>720kl 이상</td> </tr> <tr> <td>대도시 이외</td> <td>270kl 이상</td> </tr> <tr> <td>오키나와</td> <td>100kl 이상</td> </tr> </tbody> </table> <p>* 2012.9.1. 이후 100kl 이상으로 통일</p> <p>② 소요 자금 등: 신청자는 월평균 판매예상수량, 월평균 재고수량, 평균 재고 일수, 평균 매출 장소 및 ③에 규정하는 설비 등을 감안하여 전체 주류 도매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소요 자금을 가지고 있는 자일 것</p> <p>③ 설비: 신청자는 판매예상수량을 감안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포, 창고, 기구 및 운반차량 등의 판매 시설 및 설비를 보유할 것</p>	판매장 소재지	기준	대도시	720kl 이상	대도시 이외	270kl 이상	오키나와	100kl 이상
판매장 소재지	기준									
대도시	720kl 이상									
대도시 이외	270kl 이상									
오키나와	100kl 이상									

〈표 Ⅲ-16〉의 계속

	경영능력에 대한 특별규정	제조(판매)능력 및 소요자금등								
맥주도매업 면허	전주류 도매업면허에 대한 규정 준용	연평균 판매예상수량(맥주 도매 기준 수량) <table border="1" data-bbox="874 584 1297 719"> <tr> <td>판매장 소재지</td> <td>기준</td> </tr> <tr> <td>대도시</td> <td>360kl 이상</td> </tr> <tr> <td>중도시</td> <td>240kl 이상</td> </tr> <tr> <td>다른 지역</td> <td>120kl 이상</td> </tr> </table> * 2012.9.1. 이후 50kl 이상으로 통일	판매장 소재지	기준	대도시	360kl 이상	중도시	240kl 이상	다른 지역	120kl 이상
판매장 소재지	기준									
대도시	360kl 이상									
중도시	240kl 이상									
다른 지역	120kl 이상									
양주도매업 면허	일반주류 소매업면허에 대한 규정 준용	① 연평균 판매예상수량(양주 도매 기준 수량) <table border="1" data-bbox="874 824 1297 927"> <tr> <td>판매장 소재지</td> <td>기준</td> </tr> <tr> <td>대도시</td> <td>36kl 이상</td> </tr> <tr> <td>다른 지역</td> <td>24kl 이상</td> </tr> </table> * 2012.9.1. 이후 연평균 판매예상수량 기준 폐지 ② 소요자금 등: 전주류 도매업면허에 대한 규정 준용 ③ 설비: 전주류 도매업면허에 대한 규정 준용	판매장 소재지	기준	대도시	36kl 이상	다른 지역	24kl 이상		
판매장 소재지	기준									
대도시	36kl 이상									
다른 지역	24kl 이상									
수출입주류 도매업면허	-	① 일정한 점포를 보유할 것 ② 수출 주류 도매업 면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 등에 의해 주류를 수출하는 것이 확실할 것</li> <li>- 수출주류 도매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소요 자금 등을 가질 것</li> </ul> ③ 수입 주류 도매업 면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평균 판매예상수량이 대체로 6kl 이상이고, 해당 주류 판매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소요 자금 등을 가질 것</li> </ul> 예외) ㉠ 수입주류 도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지점, 출장소 등을 설치해 그 장소에서 직접 수입하지 않고, 자기의 다른 판매장에서 수입한 주류만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 수입 판매하는 주류가 약용술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 등에 의해 주류를 수입하는 것이 확실할 것</li> </ul> * 2012.9.1. 이후 연평균 판매예상수량 기준 폐지								

〈표 Ⅲ-18〉의 계속

	경영능력에 대한 특별규정	제조(판매)능력 및 소요자금등
주류판매 중개업면허	<p>신청자가 다음 경력을 갖출 경우 경영능력 있는 것으로 간주(단, 현재 주류업 단체의 임직 원인 자는 제외)</p> <p>① 주류 제조 또는 판매업(약용 술만 판매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의 업무에 직접 종사 기간이 계속해서 10년(이들 기업의 경영자로서 직접 업무에 종사한 자는 5년) 이상인 자</p> <p>② 과거에 주류의 매개 업무를 상당 기간 영위한 적이 있는 자</p> <p>③ 주류 부산물, 원료, 양조 기계 등의 판매 회사의 업무에 직접 종사 기간이 계속해서 10년 이상인 자</p> <p>④ 주류 양조 기술지도 등의 경험을 5년 이상 가지고 있는 자</p>	<p>① 연평균 처리예상수량(중개 업무 기준 수량) - 신청자의 연평균 취급 예정 수량은 240kl 이상임이 확실하고, 계속 중개업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것</p> <p>② 설비: 중개업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사무실 및 전화 기타 시설을 갖출 것</p>

자료: 주세법 및 주류행정관계법령등 해석통달, 제10조 제조면허등의 요건 중 제10호관계

- 넷째, 공급조정요건으로서 주세 보전상 주류 공급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서 주류 판매업면허를 부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sup>49)</sup>
- 구체적으로 신청자가 ① 설립취지로부터 볼 때 판매처가 원칙적으로 그 구성원에 특정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주점, 여관, 요리점 등 주류를 취급하는接客업자가 아닐 것이 필요하게 됨<sup>50)</sup>

49) 주세법 제10조 제1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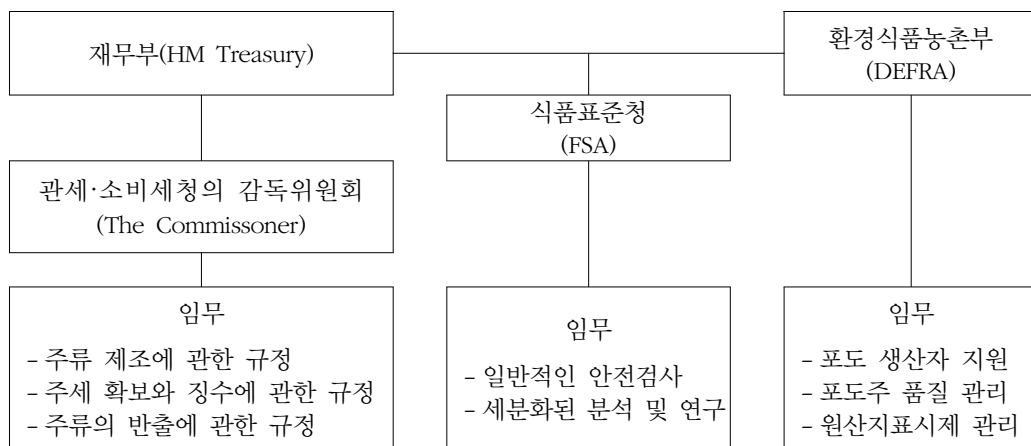
50) 국세청, 「一般酒類小売業免許申請の手引」, 平成22年9月, p. 8

### 3. 영국

#### 가. 개관

- 영국의 주류관리는 관세·소비세청 국가등록처(HMRC NRU<sup>51</sup>): HM Revenue Customs National Registration Unit)와 식품표준청(FSA: Food Safety Association) 및 환경식품농촌부(DEFRA: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가 담당함
  - 관세 및 소비세청은 주류 전반에 대한 제조·생산·이동·저장과 관련한 면허·등록의 허가와 행정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며 주류의 위조나 변성알코올의 안전업무에 대한 관리를 병행하고 있음
  - 식품표준청은 주류의 일반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세분화된 분석 및 연구를 담당함
  - 농산물과 연계된 포도주의 경우에는 환경식품농촌부에서 관할하고 있음

[그림 Ⅲ-1] 영국의 주류관련 행정체계



자료: 성명재·박상원(2010) 재구성

51) 이하 HMRC NRU로 언급함

- 영국의 관세·소비세청은 주류의 제조·생산·이동·저장과 관련한 면허관리업무 이외에 밀수 등의 불법적 반입 및 주류 도매와 판매 시 불법 유통되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2007년부터 MOU를 체결<sup>52)</sup>함
  - 체결기관은 UKWA(United Kingdom Warehousing Association), BWA(Bonded Warehousing Association), SWA(Scotch Whisky Association), WSTA(Wine & Spirits Trade Association)으로 2007년부터 2008년에 걸쳐서 체결함
  - 2006년까지는 부정행위에 대한 벌칙 부과 및 사후처리까지 HMRC에서 담당하였음
  
- 영국은 개별소비세법 등 내국세법과 구분되는 별도의 주세법<sup>53)</sup>이 존재하며 주세법은 주류의 생산과 저장에 부과되는 법령이고 주류의 소매면허와 관련해서는 면허법<sup>54)</sup>이 적용되고 있음
  - 영국의 주류인 증류주, 맥주, 와인, 만든 와인, 과일주의 생산과 제조 및 이동과 저장 등에 부과되는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음
    - The Customs and Excise Management Act 1979: 주류의 이동 및 저장
    - The Alcoholic Liquor Duties Act 1979: 주류제조 등
    - The Finance Act 1995: 세율 등
  - 주류의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시간 및 면허대상 등은 면허법(Licensing Act 2003)에 근거하고 있음
    - 이 면허법에서는 주류의 소매판매면허보유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 이 법령은 소매판매 시 허용된 시간 및 판매주류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개별 주류에 대한 각각의 규정이 존재함
    - The Spirits Regulations 1991
    - The Beer Regulations 1993
    - The Cider and Perry Regulations 1989

52) 세부내용은 아. 안전관리업무 참조

53) The Alcoholic Liquor Duties Act 1979

54) Licensing Act 2003

- The Wine and Made-wine Regulations 1989

〈표 Ⅲ-16〉 영국의 주류 관련 법체계 및 주류행정 분담

업무	근거법령	담당기관
제조·생산·이동·저장	The Alcoholic Liquor Duties Act 1979	관세·소비세청(HM Revenue Customs) 국가등록처(NRU: National Registration Unit)
소매면허	Licensing Act 2003	
주류표시	EU Consumer Law	식품표준청(Food Standards Agency)
일반적 안전관리	Health and Safety Acts	

〈표 Ⅲ-17〉 영국주류의 종류와 관련 법령

법령	주류 종류
ALDA(Alcoholic Liquor Duties Act 1979)	기타 모든 주류의 기본 법령
The Spirits Regulations 1991	증류주
The Beer Regulations 1993	맥주
The Cider and Perry Regulations 1989	과실주
The Wine and Made-wine Regulations 1989	와인(만든와인)
The Customs and Excise Management Act 1979	주류의 이동과 저장

- 영국의 관세·소비세청은 과세 납부없는 주류의 밀수 등 불법적 반입 및 주류 도매와 판매 시 불법 유통되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2007년부터 4개 기관과 MOU를 체결함
  - MOU 체결 기관은 4개 기관으로 이 기관의 회원사들은 주류의 반입과 저장 및 유통에 있어서 HMRC의 조사와 식별과정을 거친 브랜드 패키징이나 라벨링 등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한 이동을 보장받는 동시에 강한 법적제약이 부과됨
  - UKWA(United Kingdom Warehousing Association)과 BWA(Bonded Warehousing Association)은 2007년 7월 2일에 MOU를 체결함
  - SWA(Scotch Whisky Association), WSTA(Wine & Spirits Trade Association)은 그 다음해인 2008년에 MOU를 체결함

- 이와 같이 영국 정부가 주류안전 및 불법유통이나 밀수 관련 업무에 대해 MOU를 체결한 것은 세금의 누수를 막고 주류의 안전성을 보장하여 주류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임
  - 영국 정부는 주류의 밀수와 불법유통으로 매해 수백만파운드의 세수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함
  - 또한 이 과정에서 질 낮은 주류가 다량 유통되고 있음
  - 즉, MOU 체결을 통해서 부정행위와 관련된 세수도 확보하고 주류안전관리도 확보할 수 있어서 주류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표 Ⅲ-18〉 영국의 안전관리 및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MOU 체결 현황

주체	체결기관	체결일자	비고
HMRC	UKWA(United Kingdom Warehousing Association)	2007. 7. 2	
	BWA(Bonded Warehousing Association)	2007. 7. 2	
	SWA(Scotch Whisky Association)	2008	
	WSTA(Wine & Spirits Trade Association)	2008	

## 나. 주류의 규격에 대한 규제

### 1) 주류의 정의 및 분류

- 영국 주류의 종류는 증류주, 맥주, 과일주, 와인(만든 와인)의 4종류로 나누어짐
  - 증류주(Spirits)는 주정이 섞인 모든 주류, 혼합물, 화합물 등을 포함하여 알코올도수가 1.2%를 초과하는 주류를 말함
  - 와인 및 수입원료로 만든 와인
    - 와인은 신선한 포도의 알코올 발효를 통해서 얻어지는 주류로서 알코올도수가 1.2%를 초과하는 주류를 말함<sup>55)</sup>

55) 증류주를 넣어 발효를 시킨 것과 포도 자체의 맛을 살린 두 종류가 존재함

- 만든와인은 ‘발효작용 또는 리큐르의 혼합 및 알코올 발효제품을 주로 하여 제조된 주류’로 정의되며 와인, 맥주, 흑맥주, 증류주 및 과일주가 아닌 주류를 말함
- 맥주는 맥아 음료로서 알코올도수가 0.5%를 초과하는 주류이며 ale, porter, stout 및 맥주를 포함하여 만든 주류와 맥주 대응으로 판매되는 주류까지 포함함
- 과일주(Cider and perry)는 사과 또는 배의 발효에서 얻은 주류로서 알코올도수 1.2% 초과 8.5% 미만인 주류를 의미함

가) 증류주<sup>56)</sup>

- 생산되는 증류주의 종류는 사용원료에 따라 8가지로 구분되며, 몰트 증류주와 곡물 증류주, 그 외 맥주·와인·과실주에서 생산되는 증류주가 포함됨
  - ① 몰트 증류주(몰트 위스키)
  - ② 곡물 증류주
  - ③ 농산물 원료의 중성 증류주
  - ④ 비농산물 원료의 중성 증류주
  - ⑤ 맥주에서 생산된 증류주
  - ⑥ 와인이나 만든 와인에서 생산된 증류주
  - ⑦ 과일주(사과, 배)에서 생산된 증류주
  - ⑧ 기타

나) 과일주<sup>57)</sup>

- 과일주는 알코올도수 1.2% 초과 8.5% 미만인 사과 또는 배의 발효에서 얻은 알코올 성 주류를 의미함
  - 알코올도수 8.5%를 초과하거나 제품 포장에 8.5% 초과로 표기된 과일주는 증류주나 만든 와인으로 간주됨
    - 그 외 과일주의 허용한도 이상의 성분이 포함되거나 이외의 성분이 포함된 경

56) The Alcoholic Liquor Duties Act 1979, Notice 39 Spirit Production in the United Kingdom

57) The Alcoholic Liquor Duties Act 1979, Notice 162 Cider Production

우에도 증류주나 만든 와인으로 간주됨

- 2010년 9월 1일부터, 과실주의 정의가 확장되었는데, ‘사전발효 요건을 만족하는 혼합발효주와 최종 생산물의 주스요건을 만족하는 것’까지 포함함
  
- 2010년 9월 1일 과실주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확대<sup>58)</sup>되었는데, 기존에는 다른 알코올류 등이 혼합되지 않은 사과나 배의 발효에서 얻은 것만을 과실주로 규정<sup>59)</sup>하였으나, 발효 전과 최종생산물에서 혼합의 비율을 일정범위로 조정하는 새로운 규정이 마련됨
  - ‘사전발효 요건을 만족하는 혼합발효’란 발효의 과정 전에 주스나 다른 성분이 혼합되어 발효되는 것을 의미함
    - ‘사전발효 주스 요건’은 발효전 혼합물에 35% 이상의 사과(배) 농축 및 농축액 성분이 포함되어야 함
  - ‘최종 생산물의 주스요건을 만족하는 발효’란 최종단계에서 과일주스의 요건을 검사하는 것을 의미함
    - ‘최종제품 주스 요건’은 발효과정을 모두 거친 최종 제품에 35% 이상의 사과(배) 주스 농축 및 농축액이 포함되어야 함
  - 기존의 과실주는 천연추출물만 해당되었으나 농축 또는 농축주스 희석물도 포함 가능하도록 확장되었고, 다른 첨가물은 허용되지 않음
  - 발효 전후에 사용되는 과일주스(농축액)는 최소 1,033도 이상의 밀도를 가진 과실 주스가 최소 35% 포함되어야 하는데, 비중과 용량이 다른 두 종류의 과실주를 섞어서 나온 결과가 위의 기준을 만족해야 함
  
- 과실주는 알코올도수에 따라 4가지 분류로 나뉘는데 각각의 구간에 다른 과세율이 적용됨
  - 알코올도수 1.2%를 초과하고 7.5% 미만인 증류과실주
  - 알코올도수 7.5%를 초과하고 8.5% 미만인 증류과실주

58) Alcoholic Liquor Duties(Definition of Cider) Order 2010

59) 정의가 확장되기 전에도 위원회에서 허용하는 경우의 예외는 존재함

- 알코올도수 1.2%를 초과하고 5.5% 미만인 스파클링 과실주
- 알코올도수 5.5%를 초과하고 8.5% 미만인 스파클링 과실주

다) 와인(만든와인)<sup>60)</sup>

- 와인 및 만든와인은 포도의 발효에서 얻어진 알코올도수 1.2%를 초과하는 주류임
  - 와인은 ‘신선한 포도로부터 발효작용을 통해 얻은 주류로서 알코올도수 1.2%를 초과해야 하며, 아로마 추출물이 강화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주류로 정의됨
  - 만든와인은 ‘발효작용 또는 리큐르의 혼합 및 알코올 발효제품을 주로 하여 제조된 주류’로 정의되며 와인, 맥주, 흑맥주, 증류주 및 과실주가 아닌 주류를 말함
  
- 와인(만든와인)은 알코올도수에 따라 과세구간이 6개의 범주로 구분되며 보통 와인·증류와인·스파클링 와인으로 나뉨
  - 보통 와인(만든와인)이 알코올도수 1.2% 초과 4.0% 미만의 경우
  - 보통 와인(만든와인)이 알코올도수 4.0% 초과 5.5% 미만의 경우
  - 증류 와인이 알코올도수 5.5% 초과 15.0% 미만인 경우
  - 증류 와인이 알코올도수 15.0% 초과 22.0% 미만인 경우
  - 스파클링 와인이 알코올도수 5.5% 초과 8.5% 미만인 경우
  - 스파클링 와인이 알코올도수 8.5% 초과 15% 미만인 경우
  - 그 외 알코올도수 22%를 초과하는 와인의 경우는 증류주로 간주함

라) 맥주<sup>61)</sup>

- 맥주는 맥아 음료로서 알코올도수 0.5%를 초과하는 주류이며 ale, porter, stout 및 맥주를 포함하여 만든 주류와 맥주 대응으로 판매되는 주류까지 포함함
  - 다른 음료와 맥주를 혼합한 경우에도 맥주로 포함됨
  - 최종제품의 알코올도수가 5.5% 이하인 주류임

60) The Alcoholic Liquor Duties Act 1979, Notice 163 Wine Production

61) The Alcoholic Liquor Duties Act 1979, Notice 226 Beer Duty

- 맥주는 생산된 곳과 포장단위에 따라 등록신청을 분리하고 있으며, 첨가혼합물의 종류에 따라서도 등록신청을 분리하고 있음
  - 등록신청을 위한 분류는 어떤 곳에서 생산된 맥주이고 포장단위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분류되며, 아래 <표 Ⅲ-19>에 의거함
  - 첨가혼합물의 종류에 따라 프라임맥주(priming<sup>62</sup>), 희석맥주(dilution), 청징맥주(finings), 기타 첨가물, 탄산첨가맥주로 분류되고, 원료 및 첨가물에서 구체적으로 다름

〈표 Ⅲ-19〉 맥주의 분류 형태

분류	맥주의 형태
A	동일한 공장 또는 인접공장에서 생산된 Bulk 맥주
B	동일한 공장 또는 인접공장에서 생산되어 포장된 맥주
C	다른 곳에서 생산된 Bulk 맥주
D	다른 곳에서 생산되어 포장된 맥주

자료: Notice 226 Beer duty

## 2) 주류 제조방법 및 주류의 규격

### 가) 증류주

- 증류주의 제조방법은 곡류발효, 당밀발효, 에틸렌 가스의 분해증류(craking) 및 기타 공정과정을 통하여 증류하여 술을 제조하게 됨
- 증류주의 제조는 통상적으로 일주일에서 한 달의 기간이 소요되며, 증류주의 기간기록과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음
  - 증류주 제조 시 기록이 의무화되어 있는 구체적 내용은 ① 날짜와 시간, ② 증류조 등의 용기, ③ dip or gauge 측정기, ④ 온도와 액체비중계 측정기로서 증류주의

62) 급속주입하여 증발이 과도해지면 스팀이 미세한 물방울을 유출하게 되는 현상

생산량과 20°C의 온도에서 bulk의 규모, 강도, 알코올의 양 등을 측정함

- 증류주 제조 시 시작일과 종료일을 반드시 기록해야 하고 통상적 기간을 벗어날 때는 해당부서에 연락을 취해야 함
- 증류주의 종류별로 제조기록을 구분하여 제시해야 하며, 하나 이상의 증류주를 생산할 경우 종류별로 증류기간과 과정을 명시하여야 함

- 증류주 제조 시 wort의 양과 밀도에 대해 공인된 산업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기록하여야 하며 이는 법적 강제조항임

나) 과실주

- 과실주 제조업자는 원료의 사용내역, 제조공정, 주류의 생산량 등의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하며 이는 법적요구<sup>63)</sup>사항임
- 구체적으로는 원료(첨가제 포함) 사용 내역, 제조공정과 작업 세부 사항, 주류의 생산량 및 도수, 샘플량, 수입·수출량 등이 기록요구사항임

〈표 Ⅲ-20〉 과실주의 제조과정 기록 필요조건

기록 내역	세부내역
원료(첨가제 포함) 사용 내역	- 원료 및 첨가제의 사용내역은 〈표 Ⅲ-21〉 참조
제조공정과 작업 세부 사항	- 발효과정 - 첨가물 - 정제물 - bottling 및 포장
주류의 생산량 및 도수	- 생산량 - 접수량 - 등록된 장소에서 발송 - 등록된 장소로 반환 - 생산적 제거 - 등록된 장소에서 손실 및 제거 - 발포성 탄산의 정제
샘플, 수입, 수출 등	

자료: Notice 162 Cider production

63) Regulation 6 of the Revenue Traders (Accounts and Records) Regulations 1992

- 과실주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원료와 보조첨가물의 경우 과실주의 특성을 변경하지  
만 않는다면 사용에 특별한 제한이 없음
- 또한 보조첨가물의 소량 잔류 성분이 존재하더라도 과실주 최종제품의 색상이나  
풍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허용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함

〈표 III-21〉 과실주에 허용되는 원료 및 최대농도

원료 첨가물	최대 농도
<b>일반</b>	
Acesulfame-K(E950)	현재 식품법에 의한 기준 적용
초산	현재 식품법에 의한 기준 적용
사과(배)의 향(천연에만 해당)	향기는 사과(배)로부터 나와야 하며 사과(배)의 전형적인 특성을 유지해야 함 사과(배)향은 'NACM's Code of Practice: Restoration Aromas-Conditions for Use'의 확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음 사과(배)향은 품질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풍미를 가미하는 데만 사용함
사과(배)주스(신선 또는 농축)	과실주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25% 제한
사과(배) 와인	제한은 없으나 과실주 생산에서 허용되는 성분만을 포함함
아스코르비산과 그의 소금(E300-E302)	현재 식품법에 의한 기준 적용
Aspartame(E951)	현재 식품법에 의한 기준 적용
이산화탄소	현재 식품법에 의한 기준 적용
사과식초	산도를 조정하는 데 필요한 양으로 제한
구연산과 그의 소금(E330-E333)	현재 식품법에 의한 기준 적용
de-alcoholised 농축 사과주 (Cidrasse)	제한은 없으나 과실주 생산에서 허용되는 성분만을 포함해야 함
젖산과 소금(E270, E325, E326)	현재 식품법에 의한 기준 적용
Malic 지방산과 그 염 (E296, E350a, E351b, E352a)	현재 식품법에 의한 기준 적용
neo-hesperidine	제한 없음
질소	제한 없음
페리식초	산도를 조정하는 데 필요한 양으로 제한
사카린(Na, N, Ca salts) (E954)	현재 식품법에 의한 기준 적용

〈표 Ⅲ-21〉의 계속

원료 첨가물	최대 농도
Sorbic 신산 및 그의 소금 (E200, E202, E203)	현재 식품법에 의한 기준 적용
Sucralose(E955)	현재 식품법에 의한 기준 적용
설탕 및 설탕시럽, 과당(Fructose) hydrolysed 전분 / hydrolysed 전분 시럽, 포도당, 액화 설탕, 자당	제한 없음 (설탕 및 설탕시럽으로는 고농축 fructose 옥수수 시럽 / 고농축 fructose 시럽 등이 존재함)
이산화 유황과 그의 소금(E220-E224, E226-E228)	현재 식품법에 의한 기준 적용
소금(나트륨 염화물)	현재 식품법에 의한 기준 적용
Tartaric 신산과 그의 소금(E334-E336)	현재 식품법에 의한 기준 적용
물	제한 없음
<b>색상</b>	
산성 선명한 녹색 BS(E142), Anthocyanin(E163), 베타-카로틴(E160a), 캐러멜(E150a, E150b, E150c, E150d), Carmoisine(E122), 코치닐 염료(E120), Indigotine(E132), 개양귀비빛의 4R(E124), Quinoline 노란색 (E104), 일몰 황색(E110), Tartrazine(E102)	색상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은 과일주를 생산하는 데 밀짚색, 황금색, 황금빛 갈색의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함
<b>보조 첨가물</b>	
Decolourizers	숯
효소	Pectinase
필터 보조	셀룰로오스, Kieselguhr
정제 보조	벤토 나이트, 젤라틴, 부레폴, 탄닌
기타 방법	거품 방지제, 탄산칼슘, 은 교환 수지, Lactic acid 박테리아, urea와 그의 파생물을 제외한 미생물의 영양분, 효모 및 효모 배양

주: 일부 과일주에는 효모 및 박테리아가 상당수 존재할 수 있음  
 자료: Notice 162 Cider production

#### 다) 맥주

- 맥주는 다른 주류와 맥주를 혼합하는 것이 가능하며 혼합 시 제한이 존재함
  - 맥주의 혼합은 등록된 공장이나 저장창고에서만 가능함
  - 또한 다른 알코올도수의 맥주는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거나 소비로 공급되기 전까지는 혼합이 불가능하지만 알코올도수가 같을 경우에는 제한이 없음
  
- 첨가혼합물의 종류에 따라 프라임맥주(priming), 희석맥주(dilution), 청징맥주(finings), 기타 첨가물, 탄산첨가맥주로 분류됨
  - 프라임맥주(priming)는 설탕을 첨가하여 정화의 방식으로 제조하는 맥주로서 반드시 등록이 요구되며 등록 없이 제조가 불가능함
    - 그 외 프라임의 날짜와 시간, 프라임의 유형, 프라임에 사용한 설탕의 양 등의 상세한 기록이 요구됨
  - 희석맥주(dilution)는 물을 사용하여 희석하여 제조하는 맥주로서 승인을 얻어서 제조해야 함
    - 등록된 공장에서의 희석은 일반적인 양조업자의 경우에만 허용되고,
    - 소규모 양조업자의 경우는 포장과정에서 매우 소량의 물만을 사용할 때 허용
      - : 소규모 양조업자는 소량의 물을 첨가하여 통에서 발효시키거나 필터파우더를 첨가하여 필터링하는 방식만이 허용됨
    - 희석 전과 후의 도수와 양 및 첨가된 물의 양 등이 기록으로 요구됨
  - 청징맥주(finings)는 어느 공장에서도 수행할 수 있으며 승인 및 기록이 요구되지 않고 단지 정화의 방법만 사용하면 가능함
  - 기타 첨가물은 맥주에 특정물질을 첨가하여 풍미를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spirit, 레몬, 라임, 생강, 과일 등이 추가되며 이 과정에서 최종제품의 도수가 5.5% 이상이면 만든와인으로 분류되고, spirit이 첨가되면 증류주로 분류됨
    - spirit이 첨가되었으나 맥주로 분류되는 것은 spirit 성분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2가지의 경우에만 해당됨
      - : spirit이 생산의 이른 단계에 사용되어 생산과정에서 모두 타 버린 경우

- : spirit이 최종생산물에 포함되어 있으나 매우 소량이어서 맥주의 도수에 영향이 없는 경우
  - 그 외 첨가물에 따라 shandy(레몬성분추가), lager(라임성분 추가), ginger(생강 성분 추가), 혼합맥주(과일 등 알코올음료 추가)의 경우로 분류됨
- 탄산첨가맥주는 대표적으로 ‘alcopops’으로 불리우며, 알코올 함유 음료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대부분 spirit이나 만든 와인으로 분류되며 추가적인 승인과 등록이 요구됨

〈표 Ⅲ-22〉 첨가물에 따른 맥주의 종류

구분	프라임맥주	희석맥주	기타 첨가물	탄산첨가맥주
첨가물	설탕	물	- spirit - shandy(+레몬성분) - lager(+라임성분) - ginger(+생강성분) - 혼합맥주(+과일 등)	알코올 함유 음료
방법	정화	희석	물질 첨가	
등록 및 승인	○	○ - 대규모 양조업자 : 등록공장 희석가능 - 소규모 양조업자 : 포장과정에서 매우 소량의 물 허용 : 발효와 필터링방법	○ - 과세이전 혼합 불가 - 과세이후 승인받아 혼합 허용	○ - 추가적인 승인과 등록이 필요함 - 주로 만든 와인과 증류주로 분류됨
기록	- 프라임 날짜와 시간 - 제품의 유형 - 도수와 양 - 첨가된 설탕 양 - 최종제품 도수와 양	- 첨가전도수와 양 - 첨가된 물의 양 - 최종제품 도수와 양	- 분류를 확신할 수 없을 때는 제조 전에 Excise & Customs Helpline에 상담	- Excise & Customs Helpline에 상담

주: 청징맥주(finings): 장소제약 없고 승인 및 기록필요 없으며 단지 정화의 방법만 사용하면 가능  
 자료: Notice 226 Beer Duty, 2011,11

## 다. 제조시설기준 및 제조·판매 면허제도

### 1) 제조시설기준

- 주류 생산을 위한 공장의 건설이나 설비 등에는 접근가능하고 측정가능한 보안시스템이 적절히 갖추어져야 함
  - 모든 설비는 접근가능해야 하고 쉽게 식별가능해야 하며, 조사를 위해 필요에 따라 오픈 가능한 환경이 되어야 함
  - wash back, feints receiver, spirits receiver는 쉽게 이용 가능한 측정표에 의해 계측과 조정이 가능한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

〈표 Ⅲ-23〉 설비의 보안관련 규제

영역	보안에 필요한 내용	규제 예시
증류주 양조장 (Distillery site)	강제접근과 상시접근을 막는 공장 및 주변의 보안시스템 필요	보안 점검
주류증류실과 증류기 창고 (Stillroom and distillers warehouse)	증류조와 설비에 접근제한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보안기간이 경과한 보안의 점검을 보증하는 관리 점검
증류조와 설비 (Vessels and plant)	증류조의 개폐 시 및 절도에 대비한 보안장치를 설치하거나, 증류조와 설비가 있는 모든 영역에 접근을 조정하는 높은 수준의 기술보유	보안 점검 및 관리 점검

자료: Notice 473 Production, distribution and use of denatured alcohol

- 주류 제조업자는 제조장 시설을 포함하여 발효방법, 증류방법, 주류의 생산량 등의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하며 이는 법적요구<sup>64)</sup>사항임
  - 발효방법, 증류방법(증류의 모든 과정, 단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증류의 기간인 사작과 끝의 기간을 기록해야 함), 보관창고 내의 운반 내용은 법적으로 기록하도록 강제함

64) Regulation 6 of the Revenue Traders (Accounts and Records) Regulations 1992

- 기록문서에는 재고량, 취급량, 구매량, 판매량, 수입량 및 수출량 등을 기록해야 함
- 추가적으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내외부 감사보고서, 기타 사업목적에 위해 보유해야 하는 기록 등
- 기록 시에 특별한 포맷은 없으나, 날짜에 따라 정확히 기재해야 하고, 영구히 보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록하며, 조사나 감사 시에 접근이 용이해야 함
- 그 외 과정에 대한 기록을 없애거나 페이지나 항목을 지운 경우에는 벌칙이 부과됨

## 2) 주류의 제조면허 및 판매 면허

### 가) 주류의 제조면허

- 주류의 제조·생산·저장(주정 제외)과 관련해서는 공인된 창고업자, 등록된 주류업자, 위탁업자 등에게 권한이 부여되며, 이들은 법에 의해 승인과 면허 및 등록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음
  - HMRC는 기존 공인된 저장업자, 기존 등록된 주류사업 및 신규신청에 대한 허가 내용을 정기적으로 재조사함
  - 조사내용은 기존의 승인 및 공인에 대한 연장, 신규 제조·생산·도매업의 등록과 신청, 신규 및 추가적 제조·생산·도매 점포의 승인, 등록된 위탁업체에 대한 등록 및 승인 등임
  - 이 과정에서 HMRC는 기본적인 감사와 실질적인 검사를 병행하게 됨
- 제조·생산·저장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HMRC에 면허를 신청하여 사전등록증명서를 받은 후 합법적 과정을 통해 등록을 받아야 하며 해당 관청에서 요구하는 사업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기록해야 함
- 제조·생산·저장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면허를 신청하기 전에 HMRC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신청서를 사업개시 4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에는 사업에 책임을 가진 자의 사인이 필수적인데 개인사업주나 파트너십

의 1인 또는 법인의 대표의 서명이 필요함

- 신청서는 개인인 경우 Form EX61을 사용하고 파트너십의 경우는 EXCISE 102를 사용함
- 등록을 통한 사업개시 45일 전에 신청서를 HMRC에 접수하면 사전등록증명서가 발급됨

□ 제조·생산·저장업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자 모두에게 사전등록증명서를 발급해주는데, 이는 사업예정자의 사업활동 및 계획, 공급 및 소비, 회계시스템, 점포, 금융보증 등 제반조사를 위한 것임

- 상업적 비전을 가지고 실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신청인가를 조사하고 HMRC의 제시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함
- 신청서의 거절사유로는 사업자의 과세위반 내용이나 신청서의 부정확성 등이 주요한 사유가 되며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사업자의 과거 과세위반 내용
  - 신청서의 불완전과 부정확성
  - 실행가능하지 않거나 실행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업
  - 적절한 금융보증을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
  - 충분한 회계시스템 및 eAD(전자행정시스템)를 통한 IT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그 이외에 정보가 불충분하다거나 행정당국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되지 못하는 경우가 포함됨

#### ① 증류주

- 증류주(Spirits)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제조자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기존면허가 있더라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취소할 수 있음
  - 증류주 양조자 면허를 취득하고,
  - 사용하려는 설비 및 공정의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 기존 면허가 있더라도 최대 18hl<sup>65)</sup> 이하의 용량으로 생산하거나 증류주의 제조를 중지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 증류주의 양조업자 면허의 관리기관은 HMRC NRU에서 담당함
  - 면허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제조자의 이름이 필요하며 증류주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의 면허가 필요함
  - 만약 무면허로 생산하는 경우 벌칙이 가해지며, 면허없이 제조한 경우라 하더라도 자진신고하면 벌칙을 경감해 줌
  
- 증류주에 대한 신고는 분기별 증류주 신고서(W21 Quarterly Distillery Return)를 사용하여 명시하며 생산된 증류주의 원료 및 그 외 구체적 기록을 적시함
  - 이 신고서에는 생산된 증류주의 원료가 적시되며 분기단위의 기록을 제출함
  - 신고서는 분기말의 14일 이내까지 제출하여야 함
  - 생산되는 증류주의 사용원료가 하나 이상인 경우는 사용원료에 따라 각각 식별번호가 부여되고 따로 따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증류주 제조를 위한 설비와 공정에 대한 승인을 위해서는, 증류공장의 위치 등 상세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필요 시 국가등록부에서 추가적인 조건에 대한 설명자료를 요구하게 됨
  - 제안된 공장의 위치
  - 제조 공정의 전체 설명서
  - 모든 공장의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증류조(vessel)의 개수 및 설명서
  - 공장 설치 계획
  
- 증류주에 대한 정류업자(rectifier)와 혼합업자(compounder)도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2010년 4월 1일부터 부정확한 정보로 면허를 취득했거나 적기에 면허를 취득하지 않을 시에는 벌과금이 부과됨

65) hl은 hectoliters를 의미하며, 1hl = 100liters

- 정류업자의 경우는 증류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증류주를 재증류하는 경우에는 정류업자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함
  - 정류업자 면허는 증류주에 대한 혼합업자 면허를 포함함
- 증류주의 풍미를 살리거나 BCS(British compounded spirits)를 생산하기 위해 기타 물질을 혼합하거나 혼합된 증류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혼합업자로 분류됨
  - 알코올릭 주류에 혼합물질을 포함하여 제조하는 경우 면허 필요
  - 알코올릭 주류에 어떤 물질을 첨가하는 경우에도 면허 필요
- 공장 내 소비, 식품, 약품, 향수 등의 제품에 사용하기 위한 혼합된 증류주를 제조만 하는 경우는 면허 불필요

## ② 과실주

- 판매를 목적으로 과실주를 생산하고 연속된 12개월 동안 70hl을 초과하는 용량의 과실주를 생산하는 경우는 등록이 필요함
  - 과실주 제조자는 과실주를 생산하는 공장단위로 분리하여 등록을 받아야 함
  - 이러한 등록의 신청과 절차는 HMRC NRU에서 담당함
-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된 곳에서 과실주 생산과 보관, 과실주의 반입 등이 허용되며 적절한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제품의 반입도 허용되지만 등록을 받았어도 허용되지 않는 사항이 존재함
  - 적절한 공정은 탄산가스처리 공정(aeration), 저온살균 공정(pasteurisation), 병에 주입보관하는 공정(bottling) 등이 포함됨
  - 등록으로도 허용되지 않는 것은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생산된 과실주, 증류주, 와인, 맥주의 반입
  -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생산하거나 생산한 사람에게는 벌금이 부과되며, 자진신고 시 벌칙을 경감해 줌
- 과실주 제조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사업활동을 기록하고 유지해야 하며 HMRC의 검

사를 받아야 함

- 손익 및 거래 명세서
- 관리 계정 보고서
- 대차 대조표 및 거래 전망
- 내부 및 외부 감사 보고서
- 그 외 영업목적의 모든 기록

□ 과실주 제조자는 의무적으로 주류의 상황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하며 이는 법적 요구 사항<sup>66)</sup>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를 기록하고 보관

- 과세 보류된 잔여 과실주의 금액
- 재처리되었거나 불용파괴로 매립된 과실주의 금액
- 이전 신고기간에 과소신고금액
- 이전 신고기간에 과다신고금액
- 순 과세금액의 기간 및 날짜 지불방법

### ③ 와인(만든와인)

□ 와인을 제조하여 판매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소비세면허(Excise licence)의 특정형태인 와인생산자 면허(producer licence)를 취득해야 함

- 또한 스파클링 와인을 정제하는 경우에도 이 면허의 취득은 필수임
- 이 면허를 취득한 생산자는 와인의 재료로 들어가는 과일을 재배하거나 임대하는 것이 가능함
  - 생산자는 특정 조건에 따라 포도나무를 임대할 수 있으며, 상업적 목적의 재배나 임대를 하고 와인을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음
- 와인 제조자는 와인을 생산하는 공장 단위로 분리하여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면허는 적절한 법적 실체(개인사업자, 파트너십, 유한회사 등)의 명의로 취득 가능함
  - 단, 같은 법적 실체가 모든 면허를 소유한 경우는 하나의 신고서 제출도 가능

66) Regulation 6 of the Revenue Traders (Accounts and Records) Regulations 1992

- 생산자면허를 취득하면 허가된 공장에서 와인의 생산과 보관, 반입 등이 허용되며 그 외 주류제조 공정과 관련하여 모든 운영과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적절한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제품의 반입도 허용됨
  - 적절한 공정은 탄산가스처리 공정(aeration), 저온살균 공정(pasteuisation), 병에 주입·보관하는 공정(bottling) 등이 포함됨
  - 면허로도 허용되지 않는 것은 승인되지 않은 곳에서 생산된 와인, 와인 이외의 주류인 증류주, 맥주, 과일주 및 수입된 와인의 반입임
  - 와인(만든 와인)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해 강화된 증류주, 맥주, 과일주, 수입된 와인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시설창고를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승인신청이 필요함
  
- 면허의 취득을 위해서는 제조공장의 위치와 와인의 생산에 사용되는 시설의 항목을 표시한 세부적인 설명서를 HMRC NRU에 제출해야 함
  - 즉, 공장의 전체 주소를 포함하여 증류기 및 제조를 위한 용기와 각종 시설에 대한 식별번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표 Ⅲ-24〉 와인의 면허필요 여부와 내용

면허	내용	면허시 허용내용	면허소지자 의무	면허변경 사항
와인생산자 면허 필요 (HMRC NRU)	와인 제조·정제 포도나무 재배·임대 생산적 제거 저장 및 창고 와인 반입·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와인의 생산</li> <li>- 제조 공정과 절차수행</li> <li>- 승인된 곳에서 와인 저장</li> <li>- 승인된 곳에서 반입 및 반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와인공장 면허</li> <li>• 와인공장의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및 설명서</li> <li>- 설비 식별번호</li> <li>- 증류용기 개수 및 용량</li> <li>- 기타시설의 설명</li> <li>- 전체 주소</li> </ul> </li> <li>• 표준화된 사업기록 유지</li> <li>• 과세요건에 충족되는 신고서 제출</li> <li>• 통지 요구조건에 순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적 실체 변경</li> <li>- 사업자 변경</li> <li>- 승인된 공장주소 변경</li> <li>- 생산의 중단</li> <li>- 승인된 공장에서 다른 주류 생산</li> <li>- 재정상황 변경</li> <li>- VAT 등록</li> </ul>
별도 승인요구	거래시설 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되지 않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인되지 않은 곳에서 와인의 반입</li> <li>- 와인 이외의 주류반입</li> </ul> </li> </ul>		

자료: Notice 163 Wine production

- 거래시설 창고는 증류주를 강화하거나 맥주나 과일주, 수입된 와인을 사용하여 와인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와인생산자 면허에 추가하여 거래시설창고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승인이 요구됨
  - 이는 Customs and Excise Management Act 1979 section 92(1)에 근거함
  - 즉, 생산된 와인이나 다른 공장에서 생산된 와인을 반입하여 와인을 숙성하기 위해 거래시설창고에 저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승인이 필요함

#### ④ 맥주

- 영국에서 맥주를 생산하거나 보유 및 저장이 필요한 경우 생산자등록이 필요하고 맥주를 보유하고 포장하기 위해서는 포장업자 등록이 요구됨
  - 일반적으로 맥주의 생산과 보유 및 분류를 위해서는 등록이 요구되며, 등록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조건이 존재하고, ①과 ②는 등록증명서에 포함되며 기타 사항은 문서로 통지함
    - ① 등록된 공장의 범위에 대한 제한
    - ② 등록된 공장에 보유할 맥주의 분류에 대한 요건
    - ③ 금융보증에 대한 내용
  - 등록은 맥주제조나 포장업을 시작하기 최소 14일 전에 신청해야 하며, 등록의 효력은 생산/포장을 중단할 예정이거나 실제로 중단한 경우까지 유지됨
  - 맥주 생산과 보유 및 분류에 대한 등록은 Beer Regulations 1993에 근거함
- 맥주를 가정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연구용이나 실험용으로 제조할 경우에는 등록이 면제됨
  - 연구용이나 실험용은 등록 없이 통보를 통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함
    - 통보 시 이름과 주소, 사업, 기대 생산량(매달), 사용맥주의 처분과정, 기타 거래와 관련된 세부적 정보를 기입하여 HMRC NRU에 보냄
    - 연구 및 실험용의 경우에도 생산날짜, 생산된 맥주 도수와 양, 제거방법과 날짜

및 제거량을 기록하고 보유해야 함

〈표 Ⅲ-25〉 맥주의 등록 여부와 관련 내용

종류	대상자	등록 시 허용내용	등록관련 요건	등록변경 사항
생산자 (제조 업자) 등록	- 맥주 제조업자 - 맥주 제조공장	- 맥주의 생산 - 맥주의 보유 - 보유한 맥주의 분류	- 등록된 공장의 면적에 대한 한도 - 등록된 공장에 보유할 맥주의 분류에 대한 제한	- 법적 실체 변경 - 사업자 변경 - 승인된 공장주소 변경 - 회사명칭변경 - 은행계좌·보증자 변경
포장 업자 등록	- 저장공장 - 포장업자	- 맥주의 보유, 포장 - bulk 맥주의 보유와 포장	- 금융보증에 대한 내용 - 인접공장의 경우 5km 이내	- 생산·포장의 중단 - 승인된 공장에서 다른 주류 생산 - 재정상황 변경 - VAT 등록

자료: Notice 226 Beer duty

- 제조량이 일정한도 이하이거나 전년도에 비하여 생산량이 극감한 경우에는 소규모 양조업자로 구분되며 경감세율이 적용됨
  - 전년도 제조량이 6만hl 이하인 경우
  - 올해 생산량이 전년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경우
  - 올해의 생산량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였을 때 6만hl 이하인 경우

#### 나) 판매면허

- 영국의 판매면허<sup>67)</sup>는 면허법 2003(The Licensing Act 2003)에 알코올의 공급, 규제되는 점포의 공급, 야간간이음식점 공급 등에 적용되는, 판매시간, 점포면허, 인적제한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판매시간은 24시간, 일주일 내내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폭음문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폐점시간 등을 제한하고 있음
  - 점포면허는 주류의 소매판매, 클럽에서 판매, 야간점포, 규제되는 엔터테인먼트 등의 면허활동을 제공하는 모든 점포가 발급받아야 하며, 매년 갱신이 필요하지만

67) 이 내용은 박명호·문예영(2008), 한국조세연구원 참조

사업기간 동안 유효함

- 단일점포면허: 알코올, 공공엔터테인먼트, 영화, 극장, 야간간이점포, 야간카페의 6종류 점포면허를 통합한 것임
- 알코올 판매의 위임 및 판매를 하는 사람에게 허용해 주는 면허로서 점포면허의 권한 아래 존재함

○ 기타 일시적인 행사 기간에 주류 판매를 허용하기도 하고,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경우는 성인과 동행하거나 특별히 승인받은 경우에 허용됨

□ 영국 정부는 주류를 일정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게 하는 ‘최저가격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일부 주정부<sup>68)</sup>에서는 이미 시행되었고 스코틀랜드에서는 논의가 진행 중임

○ 이는 술 소비가 국민의료보험(NHS) 비용을 가중시키므로 주류의 최저가격을 도입하여 술값을 올려 국민건강문제 및 범죄를 완화시켜 보자는 취지임

○ 영국 스코틀랜드 정부는 2012년 5월 주류에 대해 유닛(10ml)당 50펜스(약 930원)의 최저가격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함

- 최저가격제가 시행되면 와인은 750ml 한 병에 4.69파운드로 12.5% 인상되며, 저가 위스키도 병당 14파운드로 40% 가까이 인상될 예정

□ 그러나 주류가 실제 가격보다 싸게 팔리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가격제는 소매업자<sup>69)</sup>들에게 그 부담이 모두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청소년들과 도시저소득층에게 상대적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세수의 증가도 수반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존재<sup>70)</sup>함

○ 더불어 EU의 주류 최저가격제에 대한 금지 조항은 없지만,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려면 EU의 자유경쟁 및 관세, 공중보건 등 규정에 위배된다는 취지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함

68) 영국의 머지사이드주

69) 주류업체와 소매업자(슈퍼마켓 등)는 이 제도에 반대하고 있음

70) Rand Europe, ‘Preliminary assessment of the economic impacts of alcohol pricing policy options in the UK,’ Prepared for the Home Office, 2010. 6.

## 4. 호주

### 가. 개관

- 호주의 주류와 관련하여 토대가 되는 법률은 3가지로 Excise Tariff Act, Excise Act, Excise Regulations임
- 소비관세법(Excise Tariff Act 1921)
    - 각종 주류의 정의 및 소비세 부과
    - 적용가능 제품의 세율 목록<sup>71)</sup>
    - 세율 지표
  - 소비세법(Excise Act 1901)
    - 주류제품의 제조, 저장 및 이동에 관한 규정
    - 주류제품의 과세 부담
  - 소비세 규정(Excise Regulations 1925)
    - 환급과 경감
    - 공제

〈표 Ⅲ-26〉 호주의 주류 관련 법체계 및 주류행정 분담

업무	근거법령	담당기관
제조·저장	Excise Act 1901	국세청(ATO: Australian Tax Office)
이동허가	Excise Tariff Act 1921	
소매면허	Excise Regulations 1925	
주류표시	Food Standards Code	식품표준청
행정, 관리 등 (안전업무 포함)		ACCF(Alcohol Corporate Consultative Forum) - ATO(Australian Tax Office) - ACBPS(Australia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rvice) - 각종 주류제조 협회

71) 소비세 schedule은 크게 3개의 범주로 되어 있는데 alcohol beverage & spirit, cigaret & tobacco, fuel & oil로 나뉘짐

- 호주는 주류산업 전반의 과세시스템과 관련된 행정과 관리 등의 문제에 대해서 ACCF(Alcohol Corporate Consultative Forum)를 통해서 분기별로 협의와 토론을 거침
  - 이 협의체는 국세청(ATO)과 호주세관 및 국경보호 서비스(ACBPS) 주관하에 각종 주류협회 관계자들이 분기별로 협의하는 기구로서 전반적인 행정적 절차와 위험 관리에 대해서 논의 및 승인함
  - 소비세, 관세, 세율 인상과 같은 세제시스템의 문제를 비롯하여 각종 행정 및 위험 관리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거침
  - 이 협의회의 회의록은 기록되고 연차보고서와 함께 매해 발간함
  
- 호주의 주류제조에 따른 관리 기관은 국내에서 제조하느냐 수입된 주류냐에 따라 구분되는데 국내제조 주류는 국세청이, 수입주류는 관세청이 관리함
  - 다만, 국내제조를 위해 수입된 주류제품의 경우는 관세청과 국세청이 공동으로 관리 책임이 있음

〈표 Ⅲ-27〉 주류 제조에 따른 관리기관

	관세청	국세청
호주에서 제조되는 주류제품	×	○
호주에서 제조되지 않고 수입된 주류제품	○	×
호주에서 제조하기 위해 수입된 주류제품	○	○

자료: <http://law.ato.gov.au/> 법률DB, 'Excise guidelines for the alcohol industry'

- 주류의 제조와 생산 이동과 관련하여 주류의 제조자는 제조면허, 주류의 저장을 위해서는 저장면허, 주류의 제거와 이동 시에는 이동허가가 필요함
  - 주류의 제조를 위해서는 생산전 제조면허(manufacturer licence)<sup>72)</sup>를 취득해야 함
  - 주류의 저장을 위해서는 제조면허가 아닌 저장면허(storage licence)<sup>73)</sup>를 취득해야 함

72) Excise Act 1901 section 4

73) Excise Act 1901 section 4(1)

○ 주류의 제거와 이동 시에는 이동에 대한 허가(permission)<sup>74)</sup>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제조면허나 저장면허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동에 대한 허가는 포함하지는 않으므로 별개의 허가를 득해야 함

□ 소비세 과세목적상 세율은 맥주와 10% (a/v)<sup>75)</sup> 초과외 기타 주류, 증류주로 구분되며 각 포장단위와 알코올도수에 따라 다른 과세율을 가짐

〈표 Ⅲ-28〉 호주의 주류제품에 대한 과세

항목	세부 항목	내용	과세
1		맥주	
	1.1	48리터 이하 컨테이너에 포장된 3% (a/v) 이하의 맥주	1.15% (a/v)를 초과하는 알코올도수에 대해 리터당 \$34.72
	1.2	48리터 초과 컨테이너에 포장된 3% (a/v) 이하의 맥주	1.15% (a/v)를 초과하는 알코올도수에 대해 리터당 \$6.93
	1.5	48리터 이하 컨테이너에 포장된 3% 초과 3.5% 이하(a/v)의 맥주	1.15% (a/v)를 초과하는 알코올도수에 대해 리터당 \$40.46
	1.6	48리터 초과 컨테이너에 포장된 3% 초과 3.5% 이하(a/v)의 맥주	1.15% (a/v)를 초과하는 알코올도수에 대해 리터당 \$21.76
	1.10	48리터 이하 컨테이너에 포장된 3.5% (a/v) 초과외 맥주	1.15% (a/v)를 초과하는 알코올도수에 대해 리터당 \$40.46
	1.11	48리터 초과 컨테이너에 포장된 3.5% (a/v) 이하의 맥주	1.15% (a/v)를 초과하는 알코올도수에 대해 리터당 \$28.48
	1.15	비상업용 목적으로 상업용시설에서 제조된 3% (a/v) 이하의 맥주	1.15% (a/v)를 초과하는 알코올도수에 대해 리터당 \$2.44
	1.16	비상업용 목적으로 상업용시설에서 제조된 3% (a/v) 초과외 맥주	1.15% (a/v)를 초과하는 알코올도수에 대해 리터당 \$2.82
2		10% (a/v) 초과외 기타 주류 <sup>1)</sup>	알코올 리터당 \$68.54

74) Excise Act 1901 section 61(A)

75) (a/v)는 주류에 포함된 알코올도수를 의미하며 이하에서 (a/v)로 언급함

〈표 Ⅲ-28〉의 계속

항목	세부 항목	내용	세율
3		증류주: 10% (a/v) 초과외 기타 주류	
	3.1	브랜드	알코올 리터당 \$63.99
	3.2	10% (a/v) 초과외 기타 주류	알코올 리터당 \$68.54
	3.5 <sup>2)</sup>	(a) 호주의 포도나 강화된 와인을 사용하여 증류주를 제조한 경우 (b) 기타 승인된 경우	면제
	3.6 <sup>3)</sup>	(a) 산업용, 제조용, 과학용, 의료용, 수의용, 교육용 목적의 사용이 결정된 그룹(의사, 약사, 병원, 대학)이 사용한 증류주 (b) 제한된 양 (c) 산업용, 제조용, 과학용, 의료용, 수의용, 교육용의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면제
	3.7 <sup>4)</sup>	(a) 기타 승인된 자가 산업용, 제조용, 과학용, 의료용, 수의용, 교육용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b) 기타 승인된 경우	면제
	3.8 <sup>5)</sup>	승인된 특정한 공식에 따라 제조된 변성 증류주	면제
	3.10	어떤 물질도 포함하지 않은 증류주	알코올 리터당 \$68.54

- 주: 1) 와인은 기타주류의 범주에 포함됨  
 2) section 77FD of the Excise Act 1901  
 3) section 77FE of the Excise Act 1901  
 4) section 77FF of the Excise Act 1901  
 5) section 77FG of the Excise Act 1901

자료: <http://law.atto.gov.au/> 법률DB, 'Excise guidelines for the alcohol industry'

- 면허와 관련하여 제조, 보관 및 저장, 진술, 기록 등을 위반한 경우 벌칙이 부과되며, 벌칙의 내용은 행위에 따라 다양함
  - 제조와 보관 및 저장과 관련하여 면허 없이 제조하거나 허가 없이 주류를 보관 및 저장한 경우에는 가장 큰 벌칙이 부여되는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벌칙단위 (penalty units)와 과세금액의 5배 중 큰 금액이 부과됨
  - 허위진술의 경우에는 최대 50벌칙단위(penalty units)와 과세금액 2배를 합한 금액이 부과되고 지시에 따라 기록하지 않거나 표시위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50벌칙단위를 부과함

- 그 외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는 최대 10벌칙단위가 부과됨

〈표 Ⅲ-29〉 주류산업 과정에서 과세관청의 지시에 불응 시 벌칙내용

구분	내 용
○ 제조관련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벌칙단위(penalty units <sup>1)</sup> )와 과세금액의 5배중 큰 금액이 부과됨 : 제조면허 없이 제조한 경우 : 제조면허에 기술된 조건을 위반하여 제조한 경우 : 제조면허에 기술되지 않은 공장에서 제조한 경우
○ 보관 및 저장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벌칙단위(penalty units)와 과세금액의 5배 중 큰 금액이 부과됨 : 허가 없이 소비주류를 소유하거나 보관 및 조정한 경우
○ 허위 진술	- 최대 50벌칙단위(penalty units)와 과세금액의 2배를 합한 금액이 부과됨 : 주류제품에 대한 기록 보고 시 잘못된 기술과 진술 또는 생략
○ 기록	- 최대 30벌칙단위 : 지시에 따라 기록을 보관 및 보유하지 않은 경우
○ 지시	- 최대 10벌칙단위 : 다양한 물질을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지시에 순응하지 않은 경우
○ 시설 등	- 최대 10벌칙단위 : 검사 시 적절한 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제조된 주류에 들어가는 각종 물질의 정확한 무게와 비율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표시와 포장	- 최대 50벌칙단위 : 주류에 표시된 마크나 봉인을 없애거나 바꾼 경우

주: 1) penalty units은 section 4AA of the Crimes Act 1914에 따르며 단위당 \$110임  
자료: <http://law.ato.gov.au/> 법률DB, 'Excise guidelines for the alcohol industry'

- 면허 취득 여부와 관련하여 몇 가지의 판단기준<sup>76)</sup>이 존재하며, 주류면허와 관련하여 적절한 상태인지? 기술과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주류제조공장 및 장비와 설비 등이 적절한지 등이 고려됨

- 면허취득에 적정한가?

76) Excise Act subsection 39A(2)에 근거함

- 면허취득을 위한 적절한 기술과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공장에 대한 실질적 보증규모가 적절한가?
- 공장에 사용되는 장비와 설비가 적절한가?
- 주류제품에 대한 시장을 가지고 있는가?
- 감사를 위한 적절한 기장목록과 방법을 가지고 있는가?
- 저장면허 보증에 대한 과세연체가 발생했는가?
- 세입보장을 위해 면허취소가 필요한 경우인가?

## 나. 주류의 규격에 대한 규제

### 1) 주류의 정의 및 분류

- 호주의 주류는 크게 맥주, 증류주 및 와인으로 분류되며 증류주에는 브랜디 이외에 할인증류주 및 변성증류주가 포함됨
  - 맥주는 알코올도수(a/v) 1.15%를 초과하는 주류로서 홉과 홉 추출물 및 기타 쓴 맛<sup>77)</sup>이 포함되어야 하며 물과 함께 곡류의 발효작용을 통해 생산되며 기타 물과 설탕 등이 풍미를 위해 추가될 수 있음
  - 증류주는 증류의 방법을 통해 제조하며 향료와 맛이 가미된 브랜디로 통칭되는 주류<sup>78)</sup>이며, 기타소비주류는 브랜디, 맥주, 와인을 제외한 주류<sup>79)</sup>를 의미함
    - 할인증류주<sup>80)</sup>는 특정목적으로 호주 국내시장에 유통되는 증류주로 비과세함
    - 변성 증류주는 다른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증류주로 증류주의 요구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성질이 변한 증류주를 말함
  - 와인은 WET<sup>81)</sup>와 소비세의 두 가지 방식에 의해 과세되는데, 소비세에서는 와인의 범주를 기타주류로 분류하고 WET에서는 포도와인, 포도와인 제품, 과일·야

77) 쓴 허브, 잎, 뿌리 등으로 angostura bark, cascarilla, quassia or gentian이 포함됨

78) items 3 in the Schedule to the Excise Tariff Act

79) items 2 or 3 in the Schedule to the Excise Tariff Act

80) subitems 3.5 to 3.8 in the Schedule to the Excise Tariff Act

81) <표 Ⅲ-37> 와인의 종류별 과세구분 참조

채 와인, 과실주, 벌꿀주 및 사케의 6개로 구분함

#### 가) 맥주

- 맥주는 알코올도수(a/v) 1.15%를 초과하는 주류로서 홉과 홉 추출물 및 기타 쓴맛<sup>82)</sup>이 포함되어야 하며 물과 함께 곡류의 발효작용을 통해 생산되며 기타 물과 설탕 등이 풍미를 위해 추가될 수 있음
  - 법<sup>83)</sup>상 맥주는 곡류의 추출물을 물과 함께 맥아발효한 생산물로 다른 원천의 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정의는 맥주 이외에 다른 원천으로부터 생성된 알코올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서 다른 원천으로부터 생성된 주정이 포함된 제품은 맥주로 분류하지 않음
  - 그 외 풍미를 위해 꿀, 칠리(chilli), 과일 등이 첨가물로 추가될 수 있음
  
- 맥주의 분류는 다음의 3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제조의 목적이 상업용/비상업용인지 여부, 사용시설이 상업용 시설/비상업용 시설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구간이 달라지며, ①과 ②의 경우는 비과세이고 ③과 재포장되는 맥주의 경우는 과세됨
  - ① 비상업용 목적으로 비상업용 시설에서 제조되는 홉맥주
  - ② 비상업용 목적이지만, 상업용 시설에서 제조되는 BPOS<sup>84)</sup>와 같은 맥주
  - ③ 상업용 목적으로 상업용 시설에서 제조되는 맥주로 구분

#### 나) 증류주, 할인증류주 및 변성 증류주

- 증류주는 증류의 방법을 통해 제조하며 향료와 맛이 가미된 브랜드로 통칭되는 주류<sup>85)</sup>이며, 기타소비주류는 브랜드, 맥주, 와인을 제외한 주류<sup>86)</sup>를 의미함

82) 쓴 허브, 잎, 뿌리 등으로 angostura bark, cascarilla, quassia or gentian이 포함됨

83) Schedule to the Excise Tariff Act

84) BOPS는 Brew On Premises Shops의 약자임

85) items 3 in the Schedule to the Excise Tariff Act

86) items 2 or 3 in the Schedule to the Excise Tariff Act

- 증류주는 브랜드와 할인증류주와 다른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증류주로 나뉘
  - 브랜드<sup>87)</sup>로 통칭되는 증류주의 종류는 위스키, 럼, 보드카, 진, 우조<sup>88)</sup>, 데킬라, 슈냅스<sup>89)</sup> 등이 있음
  - 할인증류주<sup>90)</sup>는 특정목적으로 호주 국내시장에 유통되는 증류주로 비과세함
  - 다른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증류주<sup>91)</sup>로는 증류주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성질이 변한 변성증류주가 포함됨
- 기타소비주류는 알코올도수가 10% 이하인가 초과하는가에 따라서 과세율이 달라짐
  - 브랜드, 맥주, 와인을 제외한 알코올도수가 10% 이하의 주류<sup>92)</sup>
  - 브랜드, 맥주, 와인을 제외한 알코올도수가 10%를 초과하는 주류<sup>93)</sup>
- 할인된 증류주는,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과세청장의 지시로 변성된 알코올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호주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주류임
  - 특정 목적에는 산업용, 제조용, 과학용, 의료용, 수의용, 교육용이 있으며 그 사용량이 제한되어 있음
  - 교육기관과 정부기관 및 의료기관의 경우는 연간사용한도가 1천리터이며 의료실험자<sup>94)</sup>와 수의실험자에게는 연간 200리터의 사용한도가 부여됨
- 다른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증류주로는 증류주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성질이 변한 변성증류주가 있으며 이의 결정 시 고려되는 요소는 4가지가 존재함

87) subitems 3.1 in the Schedule to the Excise Tariff Act

88) 아니스(anise)로 향미를 낸 그리스의 술

89) 알코올도수가 강한 독주

90) subitems 3.5 to 3.8 in the Schedule to the Excise Tariff Act

91) subitems 3.10 in the Schedule to the Excise Tariff Act

92) items 2 in the Schedule to the Excise Tariff Act

93) subitems 3.2 in the Schedule to the Excise Tariff Act

94) 의료실험자(health care practitioner)는 매우 광범위한 정의로서 의사, 수의사, 약사, 등록된 간호사, 기타 의료실험자를 포함하고 Therapeutic Goods Act 1989에 의해 허가된 침술사, 채집가, 오메오파시 의사, 자연요법 의사 등을 의미함

- 증류주 변성을 제거하기 어려운 정도(끓는점 차이나 교반 발생)
- 물이나 소프트드링크 같은 다른 음료로 희석했을 때 음료로 사용하지 못할 만큼 변성된 정도(불쾌한 향과 맛, 점성정도, 독성)
- 가격과 시장성의 요소(할인 증류주와 연료의 가격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 변성이 페트롤(petrol)과 같은 연료로 변환되었는지 유화제와 같은 전형적인 에탄올연료로 변환되었는지를 고려(주류가 다른 연료로 변환 가능한가)

〈표 Ⅲ-30〉 변성 증류주를 결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

요소	세부내용
○ 증류주 변성을 제거하기 어려운 정도	- 끓는 점 차이가 40°C 미만의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이거나 - 교반(혼합액을 섞는 방법)등이 발생
○ 물이나 소프트드링크 같은 다른 음료로 희석했을 때 음료로 사용하지 못할 만큼 변성된 정도	- 불쾌한 향과 맛 - 기름기나 점성의 정도 - 독성(독성이 표시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도)
○ 가격과 시장성의 요소	- 주정과 연료의 가격 차이가 위험 정도에 부분적으로 의존 - 운전자가 할인주정과 연료를 대체할 가능성 고려
○ 변성이 페트롤과 같은 연료로 변환되었는지 유화제와 같은 전형적인 에탄올연료로 변환되었는지 고려	- 변성증류주가 에탄올 연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변환이 가능한지 여부

자료: <http://law.ato.gov.au/> 법률DB, 'Excise guidelines for the alcohol industry'

#### 다) 와인

- 와인<sup>95)</sup>은 포도 와인, 포도 와인 제품, 과일·야채 와인, 과실주, 벌꿀주 및 사케로 구분되며, 각 와인제품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제품이 〈표 Ⅲ-31〉에 요약되어 있음
- 포도 와인은 신선한 포도의 발효를 통해 제조된 주류로서 테이블 와인(레드, 화이트, 로즈), 스파클링 와인, 강화 와인, 디저트 와인이 속함
- 포도 와인제품은 최소 70% 포도 와인을 포함하고 다른 알코올이 추가될 수 없으며,

95) 와인은 과세범주를 WET와 소비세의 두 가지 범주로 과세하며, 〈표 Ⅲ-37〉을 참조할 것

(a/v) 8% ~ 22% 사이의 주류임

- 포함되는 종류로는 버몬트(vermouth), 마르살라(marsala), 녹색 생강와인, 와인  
 칵테일이 있음

○ 과일·야채 와인은 주스나 과일·야채에서 발효된 주류로서 포도증류주나 천연  
 증류주를 제외하고 다른 알코올을 포함할 수 없고, 향과 색소를 포함할 수 없으며,  
 알코올도수(a/v) 8 ~ 22% 사이의 주류임

- 포함되는 종류는 테이블 와인, 스파클링 와인, 강화 와인(과일·야채에서 추출)

○ 과실주는 사과나 배에서 발효된 주류로서 다른 알코올을 추가할 수 없고, 향이나  
 색소를 추가할 수 없음

- 포함되는 종류는 전통적인 과실주, 생과실주, 건조과실주, 달콤 과실주가 있음

○ 꿀주는 꿀의 발효를 통해 생산된 주류로서 다른 알코올을 추가할 수 없고 향과 색  
 소를 가미할 수 없음

- 포함되는 종류는 달콤 꿀주, 강화 꿀주, 리큐르 꿀주, 스파이스 꿀주가 있음

○ 사케는 쌀의 발효로 제조된 주류로서 포함되는 종류는 발효된 사케, 쌀와인이 있음

〈표 Ⅲ-31〉 와인의 정의 및 종류

와인의 정의	종류	
	포함되는 종류	포함되지 않는 종류
포도 와인 : 신선한 포도(신선한 포도로만 만든 제품)의 발효 (부분/완전)를 통해 제조된 주류 : 알코올도수 22% 미만 : 포도 와인은 포도 증류주나 브랜디가 섞여있더라도 포도 와인으로 취급((a/v) 22% 이하)	- 테이블 와인 (레드, 화이트, 로즈) - 스파클링 와인 - 강화 와인 - 디저트 와인	-
포도 와인 제품 <sup>1)2)</sup> : 최소 70% 포도 와인을 포함하고 다른 알코올이 추 가되지 않은 주류로, 야채에서 추출된 알코올(향신 료, 허브, 풀)이나 증류주는 추가될 수 있음 : (a/v) 8% ~ 22% 사이	- 버몬트 - 마르살라 - 녹색 생강 와인 - 와인 칵테일 - 유사 증류주 (와인 기준)	- 와인 쿨러 - 와인 기반 주류(RTD) - 증류주 기반 칵테일, 크림, 기타 주류

〈표 Ⅲ-31〉의 계속

와인의 정의	종류	
	포함되는 종류	포함되지 않는 종류
과일·야채 와인 <sup>3)4)</sup> : 주스나 과일·야채에서 발효(부분/완전)된 주류로서 포도증류주나 천연증류주를 제외하고 다른 알코올을 포함할 수 없고, 향과 색소를 포함할 수 없음 : 8% ~ 22% 사이 : 15% ~ 22% 사이(포도 증류주와 천연증류주가 포함된 경우)	- 테이블 와인 - 스파클링 와인 - 강화 와인 (과일·야채에서 추출)	- 레몬·오렌지 같은 과일에서 발효된 알코올이 포함된 주류(RTD)
과실주 : 사과나 배에서 발효(부분/완전)된 주류로서 다른 알코올을 추가할 수 없고, 향이나 색소를 추가할 수 없음	- 전통적인 과실주 - 생과실주 - 건조과실주 - 달콤과실주	- 레몬, 블랙커런트, 기타과일 향이 추가된 과실주 - 콜라나 기타향이 추가된 과실주
꿀주 <sup>5)6)7)8)9)</sup> : 꿀의 발효(부분/완전)를 통해서 생산된 주류로서 다른 알코올을 추가할 수 없고 향과 색소를 가미할 수 없음	- 달콤 꿀주 - 강화 꿀주 - 리큐르 꿀주 - 스파이스 꿀주	
사케 : 쌀의 발효(부분/완전)로 제조된 주류 : 다른 알코올이 포함되지 않고, 기타 풍미나 색소가 포함되지 않음	- 발효된 사케 - 쌀와인	- 증류된 사케

- 주: 1) 포도와인 제품은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생산된 제품임  
 2) Iso-propyl alcohol or propylene glycol은 포도와인 제품에 사용될 수 있음  
 3) 증류주 추가 전 과일·야채증류주로 정의된 경우에만 포도증류주와 천연증류주 추가 가능  
 4) 설탕추가는 향추가에 해당되지 않음  
 5) 알코올 중에서 a/v 15~22%인 강화 포도증류주나 천연증류주는 추가 가능  
 6) 향과 색소 중에서 포도증류주, 천연증류주, 꿀, 허브, 스파이스는 발효과정 언제든지 추가 가능  
 7) 카라멜은 완전발효 후 추가 가능  
 8) 과일이나 과일유인제품은 발효 전이나 발효시작 전에 추가가능  
 9) 꿀주는 꿀함유량이 14% 미만이어서는 안 되고 과일함유량이 30% 이상이어서는 안 되며, 최종 제품은 a/v 8~22%가 되어야 함

자료: <http://law.ato.gov.au/> 법률DB,  
 A NEW Tax System(Wine Equalisation Tax) Act  
 A NEW Tax System(Wine Equalisation Tax) Regulations 2000

2) 주류의 제조방법 및 주류의 규격

□ 호주의 알코올 산업에서 증류는 물과 알코올의 끓는 점 또는 증발률이 다른 성질을 이용하여 물과 알코올을 혼합정화하거나 분리하는 과정을 의미함

- 즉, 물이 증발하기 전에 낮은 온도에서 알코올이 증발하는 첫 번째 과정을 증류라고 말함
  - 증류는 알코올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화하고 분리하는 과정이며, 알코올은 발효작용을 통해서 생성됨
  - 증류 전에 알코올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물질을 포함하여 증류과정을 거쳐야 함
  - 알코올릭 원료의 증류를 통해 최종적으로 증류주를 생산하게 됨
- 증류주는 essential oils, esters, sulphur dioxide와 같은 성분과 메틸(methyl), 프로필(propyl), 부틸(butyl), 아밀(amy)과 같은 기타 알코올 등 많은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최초 증류 및 재증류를 통하여 유해한 물질들을 분리하게 됨
- 증류의 과정에는 이러한 성분들 중에 유해하거나 마실 수 없는 성분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적절하게 분리하는 과정이 포함됨
- 증류주를 생산하는 증류의 과정은 head와 heart와 tail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head의 과정에서 높은 휘발성 물질을 제거하고 heart의 과정에서 증류주를 생산하며 tail의 과정에서 잔여물을 걸러내게 됨
- head는 무게가 작은 분자와 높은 휘발성의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유해한 성분인 높은 수준의 메탄올 등 독성물질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heart는 에틸알코올, 물, 소량의 head, 휘발성 물질 및 퓨젤유(fusel oil)<sup>96)</sup>의 에스테이트 에스테르와 지방산의 에틸 에스테르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
    - 이 과정에서 증류주를 직접적으로 증류기로 걸러내게 됨
  - tail은 증류주를 생산하는 마지막 과정으로 액화장치인 콘덴서를 통해 생산됨
    - 이 과정에는 에탄올보다 높은 끓는점을 가진 무게가 무거운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해한 성분이나 원하지 않는 성분을 분리해 내는 역할을 수행함

96) 퓨젤유(fusel oil)는 곡물 발효의 부산물인 알코올류의 유독 혼합유로서, 알코올이 발효할 때 생기는 여러 고급 알코올의 혼합물, 아밀알코올을 주성분으로 하며, 술을 마신 뒤 두통이나 현기증이 생겨날 수 있는 물질임

- tail은 일명 퓨젤류로 불리는 것을 만들게 됨

○ head와 tail에는 후류액(Feints)<sup>97)</sup>으로 불리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런 성분은 재 증류 과정을 통해 한번 더 걸러질 수도 있음

가) 맥주의 용량에 대한 규제

□ 맥주는 과세목적상 상업용/비상업용 분류, 컨테이너에 따른 분류와 알코올도수에 따른 분류로 구분되며, 컨테이너 용량은 48L 이하와 초과로 구분되고, 알코올도수는 3% 이하, 3 ~ 3.5% 사이, 3% 초과로 구분됨

<표 Ⅲ-32> 맥주의 알코올도수 측정관련 측정방법 및 과세내용

구분	규격	알코올도수	과세내용	알코올도수 측정 및 측정장비	허용변동치 (라벨표시 기준)			
상업용	container 48ℓ 이하	3% 이하	1.15 초과분에 대해 ℓ당 \$34.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용된 측정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as chromatography</li> <li>- 적외선 분광장치 (near infra-red spectrometry)</li> <li>- 중량측정기, 밀도측정기</li> <li>- 유사한 결과를 내는 기타 방법</li> </ul> </li> <li>측정장비는 정기적으로 검사, 인증요, 규정된 방법 사용</li> <li>연간 100,000ℓ 이상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ample test 요구</li> <li>- 측정방법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NATA<sup>1)</sup>의 실험결과와 자신의 측정결과가 동일해야 인정</li> </ul> </li> <li>연간 100,000ℓ 미만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중계와 공식을 사용하여 측정 가능하며, 측정공식은 문서로 기록 요구</li> </ul> </li> </ul>	· 알코올도수 허용변동치는 2차발효 <sup>2)</sup> 여부와 입계치 초과 여부에 따라 적용도수가 달라짐			
		3%~3.5%	1.15 초과분에 대해 ℓ당 \$40.46			2차 발효 제외	0.2% 이하	표시 도수 적용
		3.5%초과	1.15 초과분에 대해 ℓ당 \$40.46				0.2% 초과	실제 도수 적용
	container 48ℓ 초과	3% 이하	1.15 초과분에 대해 ℓ당 \$6.93				2차 발효 포함	0.3% 이하
		3%~3.5%	1.15 초과분에 대해 ℓ당 \$21.76			0.3% 초과		실제 도수 적용
		3.5% 초과	1.15 초과분에 대해 ℓ당 \$28.48					
비상업용	상업용 시설 사용	3% 이하	1.15 초과분에 대해 ℓ당 \$2.44					
		3% 초과	1.15 초과분에 대해 ℓ당 \$2.82					

주: 1) NATA(National Association of Testing Authorities)

2) 이차발효(secondary fermentation)는 병이나 통에서 서서히 발효와 숙성을 거치는 과정임

자료: <http://law.ato.gov.au/> 법률DB, 'Excise guidelines for the alcohol industry'

법률DB, EXC 2009/1-Excise(Alcoholic strength of excisable goods) Determination 2009(No.1)

97) 위스키 등을 증류할 때 나오는 불순물 섞인 알코올

- 허용된 측정장비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 적외선 분광장치 및 중량 및 밀도 측정기 등이며 연간 생산량 10만ℓ에 따라 요구기준을 달리하고 있음
- 알코올도수 허용 변동치는 2차 발효 여부와 임계치 초과 여부에 따라 적용도수가 달라짐

나) 증류주의 특별요건

- 증류주에는 특별한 조항이 부여되는 주류<sup>98)</sup>가 존재하는데, 브랜디·위스키·럼에는 다른 증류주와는 달리 원재료 요구조건, 숙성요구조건 및 구체적 특성에 따른 조건 등을 부여하고 있음
  - 브랜디는 포도와인을 사용하여 증류주로 브랜디로 기인되는 특성과 맛, 향 등을 보유해야 함
  - 위스키는 으깬 곡류에서 발효된 주류를 원재료로 사용해야 하며 위스키로 기인되는 특성과 맛, 향 등을 보유해야 함
  - 럼은 사탕수수를 원료로 하여 발효된 주류이며 경도 럼(light rum)인지 하드 럼(dark rum)인지, 럼으로 기인되는 특성과 맛, 향을 보유해야 함

〈표 Ⅲ-33〉 브랜디, 위스키, 럼에 부가되는 특별한 요구조건

구분	원재료	특성 조건	숙성요구조건
브랜디	포도와인	알코올도수 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무에서 저장<sup>1)</sup>’하여 2년이 안 된 제품은 유통 불가능</li> <li>• 증류주를 나무에 저장할 때는 정장 시기를 정확히 기록해야 함</li> <li>• 증류주를 혼합할 때는 나이가 적은 것 기준으로 통합됨</li> <li>• 숙성기간이 5년 이상일 때 ‘old’, 10년 이상일 때 ‘very old’ 표기 가능</li> </ul>
위스키	으깬 곡류에서 발효된 주류	최대 알코올도수 95%	
럼	사탕수수에서 발효된 주류	최대 알코올도수 96.5%	

주: 1) 저장용기는 나무의 특성을 지닌 vats, casks or barrels이 사용됨  
 자료: <http://law.ato.gov.au/> 법률DB

98) section 77FI of the Excise Act

## 다. 제조시설기준 및 제조·판매 면허제도

### 1) 제조시설기준

- 증류주는 still과 mobile still을 이용하여 강화증류와 역방향 삼투필터링의 과정을 통해 생산됨
  - still은 열을 가해서 액화혼합물로부터 주성분을 분리해내기 위해 증발과 농축과정을 거치는 기구를 말함
  - mobile still은 와인생산과정에서 트럭에 부착된 회전하는 콘 형태의 수송장치임
  - 강화 증류는 분리기를 가지고 회전이나 소용돌이 방식의 증발기구를 사용하여 농축된 풍미가 포함된 증류주를 얻는 과정을 의미함
  - 역삼투 필터링은 반투성 세포막(semi-permeable membranes)을 이용하여 와인의 산도와 도수를 조절하는 방법임
  
- still은 5리터를 초과하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sup>99)</sup> 제조면허가 필요하고, 증류 과정에서 품질이 낮은 증류주인 후류액(Feints)이 생성됨
  - 용량과 관계없이 반드시 제조면허가 필요하며, still을 통한 제조와 이동, 구매판매, 수출, 보관, 소유 등이 가능함
  - 또한 증류과정에서 발생한 후류액은 재증류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폐기처분해야 하며, 폐기처분 전 과세관청의 허가를 득해야 하며 이에 대한 기록은 필수요구 사항임
  
- mobile still은 와인생산과정에서 트럭에 부착된 회전하는 콘 형태의 장치로서 와인에 풍미를 더하거나 와인의 알코올도수를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주로 사용됨
  - mobile still도 제조면허가 필요하며, 와인제조공장 사업자로서 증류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저장면허도 필요하고, 증류주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동허가도 요구됨
  - mobile still은 2개의 flow meter를 영구적으로 부착해야 함

99) 재증류 시에는 5ℓ 이하도 허용됨

- 하나는 mobile still에 넣은 와인의 양을 측정하는 미터기이고
- 또 다른 하나는 mobile still에서 나온 와인의 양을 측정하는 미터기임
- 이들은 정확히 측정되고 기록으로 보유해야 함

- 강화 증류는 분리기를 가지고 회전이나 소용돌이 방식의 증발기구를 사용하여 농축된 풍미가 포함된 증류주를 얻는 과정을 의미함
  - 강화증류방법을 통해서 얻은 증류주는 다양한 알코올도수를 가지는데, 가장 일반적인 회전식 콘 형태의 장치로 생산하면 알코올도수 50%의 증류주를 얻게 됨
  - 이 과정에서 알코올도수 10%를 초과하는 주류는 기타소비주류로 취급하여 과세됨
  - 그 외 기타 생산물도 생성되는데, de-aromatised 와인과 de-alcoholised 물질임
    - de-aromatised 와인은 알코올도수 1% 이하로서 정의상 와인에 속하지만 과세되지 않음
    - de-alcoholised 물질은 알코올도수 1.15% 미만으로 역시 과세하지 않음
- 역삼투필터링은 반투성 세포막(semi-permeable membranes)을 이용하여 와인의 산도와 도수를 조절하는 방법임
  - 이 역삼투과정은 증발로 분리해 내는 증류가 아니고 산성도 및 알코올도수를 조정하는 과정임
  - 이 과정에서 투과물(permeate)과 잔류물(retentate)이 생성되는데, 투과물은 세포막을 통과할 때 증기이며, 잔류물(retentate)은 잔여물의 일부임
  - 이 과정의 생산물도 정의상 와인으로 분류되며 알코올도수 22%를 초과하는 경우는 기타소비주류로 취급하여 과세함

〈표 Ⅲ-34〉 제조시설의 정의와 요구조건 및 생성물질

단계	still	mobile still	강화 증류	역방향 삼투필터링
정의	주성분 분리를 위해 증발·농축하는 기구	회전하는 콘 형태의 수송 장치	농축된 풍미가 포함된 증류주를 얻는 과정	와인의 산도와 도수를 조절하는 방법
요구 면허	제조면허	제조면허 저장면허 이동허가	제조면허	제조면허
생성물질	후류액(Feints)		- 알코올도수 50%의 증류주 - de-aromatised 와인 - de-alcoholised 물질	투과물(permeate) 잔류물(retentate)
기타요건	5ℓ를 초과하는 용량	2개의 flow meter		

자료: <http://law.ato.gov.au/> 법률DB

## 2) 주류의 제조면허 및 판매면허

- 호주의 연방정부는 주류 제조에 대한 소비세의 부과·징수 및 면허에 대한 요건과 주류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조정하고 관여하는 반면, 주류의 판매면허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주정부에서 관할함
  - 판매면허와 관련규정은 주마다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연방정부에서 조정하고 관여하는 면허에 대해서만 언급함
  - 호주의 주류 소매판매 규제 역시 주정부마다 서로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면허를 취득해야 판매가 가능하고, 18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술을 사거나 마시거나 소유하는 경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 호주의 주류산업에 부여하는 면허에는 제조(Manufacturer) 면허 및 저장(Storage) 면허가 존재하며, 그 외 주류의 국내 및 국외 이동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동허가(movement permission)가 별도로 요구됨
  - 제조 면허(Manufacturer license)<sup>100)</sup>
  - 저장 면허(Storage license)<sup>101)</sup>

- 이동허가(movement permission)<sup>102)</sup>
- 면허는 발급일로부터 2년 후 9월 30일까지 유효하며, 갱신 시에는 이후 3년으로 연장되고 최소한 만료 6주 전에 재신청하여야 함
  
- 주류의 제조를 위해서 제조면허(Manufacturer license)를 취득해야 하며, 취득자는 제조 전반에 관련된 활동들을 수행할 수 있는 반면, 과세관청의 요구사항을 기록하고 보고해야 하는 책임도 함께 지니게 됨
  - 제조에는 발효와 증류, 풍미와 색소첨가, 희석과 혼합, 변성증류주, 증류주 숙성(나무), bulk 맥주의 재포장이 포함되며 제조 시 이러한 활동이 가능함
  - 가능한 활동으로는 양조업, BOPS 운영, 증류 및 변성증류, 기타 소비주류의 제조 활동이 가능함
  - 또한 과세부담의 의무를 지니며, 감사 시 모든 합리적 시설을 제공하고, 주류의 다양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각종 실험기구 등을 제공해야 함
  
- 저장면허(Storage license)는 주류의 저장이 필요할 때 제조면허와 별개로 필요한 면허이며, 저장을 포함한 도매와 소매의 유통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면허임
  - 저장면허는 자신이 제조한 공장의 주류저장을 포함하여 타 공장의 주류도 반입하여 저장할 수 있고, 포장주류 및 bulk 맥주를 저장할 수 있으며, 재포장(포장포함)과 제조과정에서 사용되지 않는 필터링 등을 허용함
  - 자신의 공장에서 제조하여 저장하는 경우에 제조면허는 저장면허의 권한을 포함함

---

100) Excise Act 1901 section 4

101) Excise Act 1901 section 4(1)

102) Excise Act 1901 section 61(A)

〈표 Ⅲ-35〉 면허의 종류별 허용활동 및 요구사항

면허종류	공통고려사항	허용활동	요구사항
제조면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효와 증류</li> <li>- 풍미와 색소첨가</li> <li>- 희석과 혼합</li> <li>- 변성증류주</li> <li>- 증류주 숙성(나무)</li> <li>- bulk 맥주의 재포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조업</li> <li>- BOPS 운영</li> <li>- 증류</li> <li>- 변성증류</li> <li>- 기타 주류의 제조</li> <li>- 이들의 결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증된 주류를 호주 국내시장에 운반<sup>4)</sup></li> <li>- 정확한 과세액 부담</li> <li>- 감사 시 모든 합리적 시설의 제공</li> <li>- 아래의 사항을 측정하기 위해 각종 실험 기구 등을 제공 (반입재료량, 제조 위한 소비제품량, 모든 재료의 재고량 등)</li> </ul>
저장면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류의 저장·유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제조 주류저장<sup>1)</sup></li> <li>- 타인제조 주류저장</li> <li>- 포장주류의 저장</li> <li>- bulk주류의 저장<sup>2)</sup></li> <li>- 포장 및 재포장<sup>3)</sup></li> <li>- 필터링(제조과정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증된 주류를 호주 국내시장에 운반<sup>4)</sup></li> <li>- 정확한 과세액 부담</li> </ul>
이동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입반출의 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회성허가(국내/수출)</li> <li>- 연속적허가(국내/수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출 공장과 도착지</li> <li>- 반출의 날짜, 포장 형태와 수량, 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li> <li>- 기타 도착 시 허용이 필요한 상품에 대한 정보</li> </ul>

주: 1) 자신소유 공장에서 제조한 주류를 저장하는 경우는 저장면허가 따로 필요하지 않고 제조면허로 포괄되며, 타공장의 주류를 저장 및 그 외의 경우에는 별도의 저장면허 필요함

2) 제조목적으로 숙성을 위한 나무저장은 제외

3) 맥주의 재포장은 제조에 포함되므로 제외

4) Excise Act 1901 section 58 and section 61C

자료: <http://law.ato.gov.au/> 법률DB

이동허가는 주류를 면허가 있는 곳으로 보내거나 면허가 있는 곳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한으로서 제조나 저장면허가 없더라도 이동허가를 통해 주류를 반입 및 반출하는 것이 가능함

이동허가(movement permission)에는 4가지의 형태가 존재하는데, 연속적 이동허가는 정규적이고 지속적인 허가증인 반면 특정한 상황에 주류의 반입반출을 허용하는 경우 일회성 허가증의 이용이 가능함

○ 일회성 이동허가(Single movement permission: 국내) - 특정한 곳에서 다른 정해진 곳으로 단 한번만 주류를 이동시킬 수 있는 허가증

- 연속적 이동허가(Continuing movement permission: 국내) – 특정한 곳에서 다른 정해진 곳으로 지속적으로 정해진 주류를 이동시킬 수 있는 허가증
  - 일회성 이동허가(Single movement permission: 수출) – 특정한 곳에서 다른 정해진 곳으로 단 한번만 주류를 이동시킬 수 있는 허가증
  - 연속적 이동허가(Continuing movement permission: 수출) – 특정한 곳에서 다른 정해진 곳으로 지속적으로 정해진 주류를 이동시킬 수 있는 허가증
  - 수출이동허가는 수출권한을 의미하지 않으며, 관세청과는 분리하여 운영함
- 이동허가 시 각 제조공장에서 이동하는 제품에 대한 반입반출의 위치, 날짜, 수량, 형태 등의 다음을 기록하여야 함
- 반출 공장과 도착지
  - 반출의 날짜, 포장 형태와 수량, 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
  - 기타 도착 시 허용이 필요한 상품에 대한 정보
- 관리기관의 장인 CEO(Commissioner of Taxation)<sup>103)</sup>는 주류업과 관련된 면허자격을 평가하고, 면허의 정지와 면허요건을 충족하는가를 조사하고 상품에 대한 조사도 병행함
- 상품에 대한 조사는 무게, 라벨 표시, 포장 등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조사함
    - 또한 주류제품의 제조과정을 감시하고
    -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원료의 샘플을 취해서 합리적인 조건하에서 조사를 실시함
- 주류의 생산과 유통과정의 당사자는 제조자와 허가된 공급자 및 소비자<sup>104)</sup>로 구분되며 단계별로 제조, 저장, 제조와 저장, 이동허가가 요구됨
- 모든 주류의 제조와 희석 및 색상과 화학적 첨가에는 제조면허가 요구되고 유통, 재포장, 수출 등에는 저장과 이동허가가 요구됨

103) collector, commissioner 등을 통칭하는 말로서 authorised officer를 의미함

104) 변성주류의 경우는 소비자의 승인이 필요함

- 맥주의 경우 재포장 시 제조면허와 저장면허가 필요한 반면, 증류주<sup>105)</sup>는 재포장 시 저장면허만으로도 가능함

〈표 Ⅲ-36〉 주류의 활동과 면허의 종류

활동	증류주(와인포함) 면허	맥주 면허
주류의 제조	제조	제조
주류의 희석	제조	제조
변성 과정을 포함하여 색상과 화학적 첨가	제조	제조
최종 소비자에게 주류 유통	저장, 이동허가	저장, 이동허가
주류의 재포장	저장	제조와 저장
주류의 수출	저장, 이동허가	저장, 이동허가
주류의 소비자	없음	없음

자료: <http://law.ato.gov.au/> 법률DB, 'Excise guidelines for the alcohol industry'

- 호주에서 와인은 다른 주류와 달리 와인의 종류 및 알코올도수에 따라 WET로 과세되기도 하고 소비세로 과세되기도 함
  - WET(Wine Equalisation Tax)<sup>106)</sup>는 2000년 이후에 새로 도입된 세제로서 와인의 판매과정인 도매와 소매 단계에서 적용되는 세제임
    - WET는 도매가의 29%의 세율이 적용되며, WET 세율은 일반적으로 소매업자인 소매점이나 호텔, 레스토랑이나 카페 등에 공급할 때 적용하게 됨
  - 소비세에서 와인은 기타소비주류에 포함되어 과세되고, 알코올도수 22% 이상의 주류나 과실주, 사케는 소비세 과세대상임

105) 와인은 소비세분류상 기타주류에 포함되므로 증류주와 같은 규정을 적용함

106) A New Tax System Wine Equalisation Tax Regulation 2000(WET Regulation)

〈표 Ⅲ-37〉 와인의 종류별 과세구분

제품분류	WET	소비세
포도증류와 브랜디로 강화된 포도 와인		
알코올도수 22% 미만	○	×
22% 이상	×	○
적어도 70%의 포도 와인이 포함되고 포도증류로 강화된 포도 와인 제품		
알코올도수 8% 미만	×	○
8 ~ 22% 사이	○	×
22% 이상	×	○
포도증류와 중성증류로 강화한 과일과 야채가 함유된 와인		
알코올도수 15% 미만	×	○
15 ~ 22% 사이	○	×
22% 이상	×	○
과실주	강화불가능	○
포도증류와 중성증류를 사용한 주류		
알코올도수 15% 미만	×	○
15 ~ 22% 사이	○	×
22% 이상	×	○
사케	강화불가능	○

자료: <http://law.ato.gov.au/> 법률DB, 'Excise guidelines for the alcohol industry'

##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 1. 국제비교

- 주요국의 주류관련 법체계를 살펴보면 영국과 일본의 경우는 소비세법과 별개로 주세법이 존재하는 반면, 미국은 연방내국세법상 소비세편과 연방주류행정법, 호주는 소비세법에서 해당 규정을 포괄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주세법」에 근거하여 국세청에서 대부분의 주류행정을 집행함
    - 다만, 주류 안전관리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담당하며, 전통주 등 주류산업진흥은 농림수산식품부가 담당함
  - 미국은 연방내국세법 및 연방주류행정법에 따라 주류행정을 집행하고 있으며, TTB가 주류면허 등 대부분의 주류행정을 담당함
  - 일본은 「주세법」 등 다양한 법령에 근거하여 국세청에서 대부분의 주류행정을 집행함
  - 영국은 관세·소비세청에서 면허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주류표시와 일반적인 안전업무는 식품표준청이 담당하며, 그 외 불법유통 및 안전 관련 사항은 4개의 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음
    - 식품 전반의 안전업무는 식품표준청(Food Standards Agency)이 담당하며, 농산물과 연계된 포도주는 환경식품농촌부(DEFRA)에서 관할하고 있음
    - 그 외 밀수와 주류위조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고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2007~2008년에 걸쳐서 4개 기관과 MOU를 체결하였음
  - 반면, 호주는 별도의 주세법이 없고, 소비세법 내에서 주류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고 있음
    - ATO(Australian Taxation Office)는 주류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관장함
    - 그 외 주류표시에 대한 업무는 식품표준청이 담당하며 전반적인 행정관리와 위

〈표 IV-1〉 주요국의 주류 관련 법체계 및 주류행정 분담

업무	근거법령						담당기관				
	우리나라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우리나라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주세법 존재 여부	○	×	○	×	○						
제조·저장 면허	주세법	연방내국세법 Subtitle E, 연방주류 행정법	주류규제법	소비세법, 소비관세법, 소비세 규정	주세법, 알코올 사업법	관세 및 소 비세청	국세청 (ATO)	국세청 (ATO)			
		면허법			주세법, 알코올 사업법	가등락처	주정부 단위로 규제				
판매면허											
주류표시		연방주류 행정법	EU 소비자법	식품표준법	주세보전 및 주류산업협회 등에 관한 법 률, 식품위생법	TTB		식품표준청		국세청	
안전관리	주세법, 식품위생법	연방식품의약 품법	건강안전법	-	식품위생법			ACCF에서 협의			
기타	유통규제: 주 세사무처리규 정 및 국세청 고시 등	유통규제: 연 방주류행정법 및 주법	-	-	유통규제: 주류에 관한 공정거래를 위 한 지침	TTB, 주정부	2007~ 2008에 4개 기관과 MOU 체결	-ATO -ACBPS -각종 주류 제조 협회			

협관리에 대해서 ACCF를 통해서 분기별로 협의와 토론을 통해 승인하는 과정을 거침

- 우리나라와 일본은 '주류'의 정의규정을 두고 주류의 세부 종류별로 알코올분 함유량을 정하고 있으나, 미국, 영국, 호주는 '주류'의 정의규정 없이 증류주, 맥주, 와인을 구분하여 정의규정과 알코올분 함유량을 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 주세법상 주류는 주정과 알코올도수 1% 이상의 음료를 말함
  - 미국에서 증류주는 에틸알코올, 에탄올, 주정으로 알려진 것을 의미하며, 와인은 부피 기준으로 7% 이상 25% 이하 알코올을 함유하는 비산업용 상품이고, 맥주는 부피 기준으로 0.5% 이상 알코올을 함유하면서 맥아 등을 발효한 음료로 정의함
  - 일본 주세법상 주류는 알코올도수 1% 이상의 음료를 말함
    - 맥주나 과일주의 알코올분은 20% 미만이어야 함
  - 영국은 알코올도수 1.2%(맥주는 0.5%)를 초과하는 주류에 대해 과세하고 있음
    - 특히, 첨가물의 종류에 따라 맥주를 프라임, 희석, 그 외 첨가물로 구분하여 별도의 등록 및 승인을 요구하고 있음
  - 호주는 알코올도수 1.15%를 초과하는 주류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음
- 주류의 분류에 대해서는 주요국 모두 증류주, 맥주, 와인, 과일주로 분류되며, 미국과 호주의 경우는 과일주가 와인의 한 분류에 포함되어 있음
  - 우리나라는 제조방법에 따라 주류를 주정, 발효주류, 증류주류, 기타 주류의 4가지로 구분함
  - 미국과 호주는 공통적으로 주류를 증류주, 맥주, 와인으로 구분하고, 과일주를 와인의 한 분류로 포함하고 있음
    - 특히, 호주는 와인의 경우 소비세와 별도로 WET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이 과세는 주로 소매업자에게 부과됨
  - 영국은 주류를 증류주, 맥주, 와인, 과일주의 4가지로 구분함
  - 일본은 제조법에 따라 주류를 발포성 주류, 양조 주류, 증류 주류, 혼성 주류의 4가지로 구분함

〈표 IV-2〉 주요국의 주류별 정의 및 분류

종류	우리나라	종류	일본	종류	미국	영국	호주
주류 정의	주정과 알코올도수 1% 이상의 음료	주류 정의	알코올도수 1% 이상의 음료	주류 정의	-	-	-
증류주류	정 의	정 의	본문 참조	정 의	에틸알코올, 에탄올, 주정 의 의미	주정이 포함된 알코올도수가 1.2% 초과 주류	증류방법으로 제조된 향과 맛이 가미된 주류
	분 류	증류주류	연속식 증류소주, 단식 증류소주, 위스키, 브랜디, 원료용 알코올, 스피릿	분 류	주정(spirits of wine), 위스키, 럼, 브랜디, 진, 그 밖 의 증류주	- 몰트 증류주, 곡물 증류주, 농산물(비농산물) 천연 증류주, 맥주 증류주, 와인 증류주, 과실 주 증류주 - 변성 증류주	- 브랜디, 위스키, 럼, 보드카, 진, 우즈, 데킬라, 슈냅스 - 할인 증류주 - 변성 증류주
발효주류	정 의	정 의	본문 참조	정 의	부피 0.5% 이상 알코올을 함유하고, 맥아를 원료로 양조 또는 생산된 주류	맥아 음료로서 알코올도수가 0.5%를 초과하는 주류	홉과 홉 추출물 및 기타 쓴맛 이 포함된 알코올도수 1.15% 를 초과하는 주류
	분 류	분 류	맥주, 발포주, 기타 발포성 주류	분 류	맥주(beer), 에일(ale), 흑맥 주(porter), 스타우트(stout)	프라임 맥주, 희석 맥주, 첨가 물 맥주, 탄산 첨가 맥주	- 홉 맥주 - BOPS - 상업용 맥주
주정	정 의	정 의	본문 참조	정 의	7% 이상 24% 이하 알코올 을 함유하는 주류	포도의 발효를 통해서 얻은, 알코올도수 1.2%를 초과하 는 주류	포도의 발효에서 얻은 주류
	분 류	양조주류	청주, 과실주, 기타 양조주류	분 류	스파클링·발포성 포도주, 농축포도즙 와인, 농산물 와인, imitation wine, 와인 혼합물, 베르무트, 사과주, 배주, 사케	보통 와인 증류와인 스프클링와인	포도와인, 포도와인제품, 과일·야채 와인, 과실주, 벌꿀 주 및 사케
기타주류	정 의	정 의	본문 참조	정 의	외인에 포함됨	사과 또는 배의 발효에서 얻은 알코올도수가 1.2% ~ 8.5%인 주류	외인에 포함됨
	분 류	분 류	합성청주, 미림, 감미과실주, 리큐르, 분말주, 잡주	분 류	외인에 포함됨	증류과실주 스파클링 과실주	

- 또한 알코올 함유량 이외의 주류 규격에 대한 세부 규정을 조사한 결과, 공통적으로 첨가물의 종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원료의 종류(일본), 첨가물 농도(영국), 나무통 저장기간(호주)에 대한 규정은 일부 존재함
  
- 주요국은 주류를 제조하거나 판매할 때 일정한 면허, 등록, 승인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함
  - 우리나라는 제조면허 또는 판매업면허를 규정하고 있으며, 면허요건으로 공통적으로 시설기준과 인적기준(범죄전력이 없을 것 등)을 들고 있음
  - 미국 연방법은 제조·판매에 공통적(맥주 제조만 제외)으로 basic permit을 요구하며, 그 요건으로 인적기준, 경영능력 및 해당 사업의 주법 준수를 규정함
    - 특히, 제조장에 대해 등록, 승인, 통지의무를 부과하면서 제조장 상세내역 등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함
    - 또한 시설기준은 basic permit의 요건은 아니지만, 이와 별개로 주종별로 특정 시설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함
  - 일본은 제조면허와 판매업면허를 두고 있는데, 면허요건으로 인적요건, 장소적 요건, 경영기초요건, 공급조정요건을 들고 있음
    - 특히, 일본의 경우 시설기준은 면허요건뿐만 아니라 일반적 의무로도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영국은 주류별로 면허와 등록을 구분하고 있으며, 저장창고에 대해서도 주류별로 구분을 두고 있음
    - 증류주와 와인의 경우 제조장은 생산자 면허가 요구되고, 시설공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맥주의 경우는 포장업자 등록이 필요함
    - 면허와 등록 시 주종별로 시설기준에 대해 별도의 요구조건을 두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주류제조장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음
  - 호주의 면허는 제조면허, 저장면허, 이동허가로 구분되는데, 시설조건과 제조장의 경우는 제조면허가 요구되고 저장창고의 경우는 저장면허가 필요하며, 이동이나 유통을 위해서는 이동허가가 요구됨
    - 호주는 주류 생산을 위한 제조장 및 설비에 대해서는 비교적 광범위한 조건만

〈표 IV-3〉 주요국의 주류 제조·판매면허

	우리나라	미국 <sup>1)</sup>	일본	영국	호주
종류	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증류주: basic permit, 제조장 등록</li> <li>② 와인: basic permit, 부지운영 승인</li> <li>③ 맥주: 제조장 통지서 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조면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증류주<sup>2)</sup>·와인: 생산자면허, 시설 및 공정 승인</li> <li>② 맥주·과실주: 생산자등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조면허</li> <li>저장면허</li> <li>이동허가</li> </ul>
	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주종: basic permit, 판매자 등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판매업면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매면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판매·소매면허</li> </ul>
면허 요건 또는 제출 정보	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basic permit: 인적기준, 경영능력, 해당 사업의 주범 준수</li> <li>② 증류주 제조장 등록: 제조장 상세내역, 주요 설비내역, 생산량 정보, 제조장 보안정보 등</li> <li>③ 와인 부지 운영승인: 와인부지 상세내역, 휘발성 과일향 농축액 작업 상세내역 등</li> <li>④ 맥주 제조장 통지서: 제조장 상세내역, 하루 예정영업시간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적 요건</li> <li>장소적 요건</li> <li>경영기초요건</li> <li>공급조정요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증류주: 공장, 공정의 전체 설비서 제출, 전체 증류조의 개수 등 추가요건 만족</li> <li>② 과실주: 연간 70hl 초과 용량 생산 시 허용, 공정의 적절성 요구</li> <li>③ 와인: 공장의 위치, 설비식별번호, 증류용기 개수 및 용량 및 기타시설조건 요구</li> <li>④ 맥주: 공장면적 제한, 맥주의 분류제한 등 제조장에 보안시스템 설치 및 시설에 대한 상세정보 기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와 함께 인증된 주류의 이동</li> <li>- 정확한 과세액 산정</li> <li>- 합리적 시설의 제공요구</li> <li>- 반입재료량, 소비재 품량, 기타 재고량의 측정요구</li> <li>- 기타 제조장 및 시설에 대한 세부사항 기록</li> </ul>
	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asic permit: 인적기준, 경영능력, 해당 사업의 주범 준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연한 판매시간: 폐점시간 제한</li> <li>점포면허를 통해 판매허용</li> <li>인적제한 존재</li> <li>일시적 행사 등에 허용</li> </ul>	-

주: 1) 미국은 연방법을 기준으로 작성함

2) 증류주의 정류업자(rectifier) 및 혼합업자(compounder)도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2010년 4월 1일부터 면허를 취득 시 부정확한 정보나 적기에 취득하지 못한 경우 벌칙이 부과됨

을 가지고 있는데, 합리적 시설 및 기타 제조장 및 시설에 대한 세부사항을 기록하고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2. 시사점

### 가. 주세 관련 법령상 주류행정 범위와 담당기관

-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주세 관련 법령상 주류행정 영역은 공통적으로 주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제조·판매업 면허관리 업무로 구분됨
  - 전통적으로 세원을 담당하는 기관이 면허관리 업무를 담당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주류 면허를 발급하거나 취소할 때 주세 관련 법령의 위반이 없는지 등을 고려하도록 하므로, 주세 업무와 면허관리 업무를 동일한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할 수 있음
  - 주요국도 대체적으로 국세청이나 소비세 담당 기관이 주세의 부과·징수 업무와 주류면허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반면, 미국은 국세청과 별개의 독립된 기관을 설치하여 이들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특징이 있음
  
- 일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류 판매업 면허에 대한 규제권을 갖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현행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 미국과 같이 영토가 큰 국가에서는 주정부마다 역사적·문화적 특성이 달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류 판매업 면허 등 주류 판매를 규제하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는 영토 규모나 역사적·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주류면허 관리권을 이관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주세법상 주류행정의 범위는 주세의 부과·징수 업무뿐만 아니라 제조·판매업 면허 관리업무를 포함하고, 현재와 같이 이를 국세청이 단일화하여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됨

#### 나. 주류 규격에 대한 규제

- 주류의 종류에 따라 주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주세 관련 법령에는 주류의 종류를 구분하도록 하는 주류의 규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미국은 연방주류행정법 시행령에 주류 종류별 제조방법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반면, 일본은 주세법에 주류의 규격을 규정하고 있음
  
- 주요국의 입법례를 보면 주류의 규격으로서 원료의 종류와 알코올분 함량을 공통적으로 규정하는 반면, 첨가물의 종류를 열거하는 규정은 없음
  - 이는 주세 관련 법령에서 별도의 첨가물 규정을 두지 않는 대신, 식품 관련 법령에서 안정성 차원으로 첨가물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으로 보임
  - 반면, 우리나라는 주류에 사용가능한 첨가물의 종류를 주세법에 열거하여 다양한 제품 개발을 제한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시장점유율이 높은 소주 제조사는 주종의 변경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행 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을 위해 첨가물의 사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sup>107)</sup>
  
- 세원 확보와 제품 다양성의 측면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첨가물의 종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우리나라 주세법상 주종을 단순화하거나 주종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전제에서 주세법상 첨가물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다. 주류 면허 제도

- 우리나라의 주류 제조면허 제도는 주류의 종류별로 면허 발급 시 갖추어야 할 제조시

107) 공정거래위원회, 『주류산업과 경쟁정책』, 2010, p. 76

설에 대해 최소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이 주류 제조 단계에서 가장 적절한 규제인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이러한 측면에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제조장, 설비, 제조공정 또는 제조방법에 대한 상세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지만, 이를 면허요건으로 규정하지는 않음
  - 특히, 제조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을 규제하는 방식은 찾아볼 수 없음
  - 다만, 저장조(탱크)의 측정·식별 방법이나 측정기구의 적절한 사용을 규정하는 경우는 있음
- 이는 인적 요건과 경영능력을 중심으로 면허를 부여하고 세원관리 목적상 제조장의 기초적인 정보를 확보하되, 면허 부여 후에는 제조수량의 정확성과 제조방법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조자를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제조면허 요건은 인적기준 외에 제조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에 대한 최소기준만을 설정함으로써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측면이 강하고, 제조수량의 정확성이나 제조방법의 적정성을 담보하는 장치는 상대적으로 적게 규정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형식적인 제조시설 기준 대신 면허 부여 이후에 주류 제조자를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국가의 세원확보와 규제완화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주류 판매업 면허제도에 대한 정책 방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주류 도매업 면허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강한 반면, 소매업 면허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주류 도매업 면허는 일반적인 인적 요건 외에도 자본금, 창고면적, 경영요건 등을 필요로 하며,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총 발급수량이 제한됨
  - 반면, 소매업 면허는 인적 요건을 갖추고 단지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면허요건을 충족하게 됨
- 반면, 외국의 입법례는 국민보건의 차원에서 도매업 면허보다 소매업 면허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함
  - 기본적으로 도매업과 소매업 면허 요건에 차이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소매업

- 면허를 받더라도 판매장소나 판매시간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음
- 우리나라와 유사한 면허 제도를 가진 일본도 도매업 면허 유형을 추가하여 도매업 면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소매업 면허 요건으로 인적 요건 외에도 경영능력을 함께 고려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소매업 면허보다 도매업 면허에 대한 규제를 상대적으로 강화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국민 보건 측면에서 도매업 면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소매업 면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참고문헌

공정거래위원회, 『주류산업과 경쟁정책』, 2010.

박명호·문예영,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주세 및 주류행정에 대한 고찰』, 세법연구 08-03, 한국조세연구원, 2007.

서현수, 「주세법의 이론과 실무」, 『경영과 회계』, 2007.

성명재·박상원, 『주류 제조면허제도 개선방안』, 주류 제조면허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2010.

National Alcohol Beverage Control Association, *An Annotated bibliography*, 2nd Edition, 2009.

Lindsey champlin, "Inebriated and unbalanced: TFWS, INC. V. Schaefer's misguided reconciliation of the twenty-first amendment with the sherman act," GEO. MASON L. REV, Vol. 17:4.

미국 TTB 홈페이지, <http://www.ttb.gov/>

일본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a.go.jp/index.htm>

영국 국세 및 관세청 홈페이지, <http://customs.hmrc.gov.uk/>

호주 국세청 홈페이지, <http://law.ato.gov.au/>

<http://customs.hmrc.gov.uk/>, Notice 41, Alcoholic Ingredients Relief

<http://customs.hmrc.gov.uk/>, Notice 226, Beer Duty

<http://customs.hmrc.gov.uk/>, Notice 39, Spirits production in the United Kingdom

<http://customs.hmrc.gov.uk/>, Notice 40, Spirits rectifiers and compounders and spirits drawback

<http://customs.hmrc.gov.uk/>, Notice 162, Cider Production

<http://customs.hmrc.gov.uk/>, Notice 163, Wine Production

<http://customs.hmrc.gov.uk/>, Notice 473, Production, distribution and use of  
denatured alcohol

<http://law.ato.gov.au/> 법률DB, 'Excise guidelines for the alcohol industry'



세법연구 12-03

## 주세법상 주류행정에 대한 연구

---

2012년 8월 23일 인쇄

2012년 8월 31일 발행

저 자 이은경 · 이정미 · 마정화

발행인 조원동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TEL: 2186-2114(대) [www.kipf.re.kr](http://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 판 및  
인 쇄 고려문화사

© 한국조세연구원 2012

ISBN 978-89-8191-592-6

---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